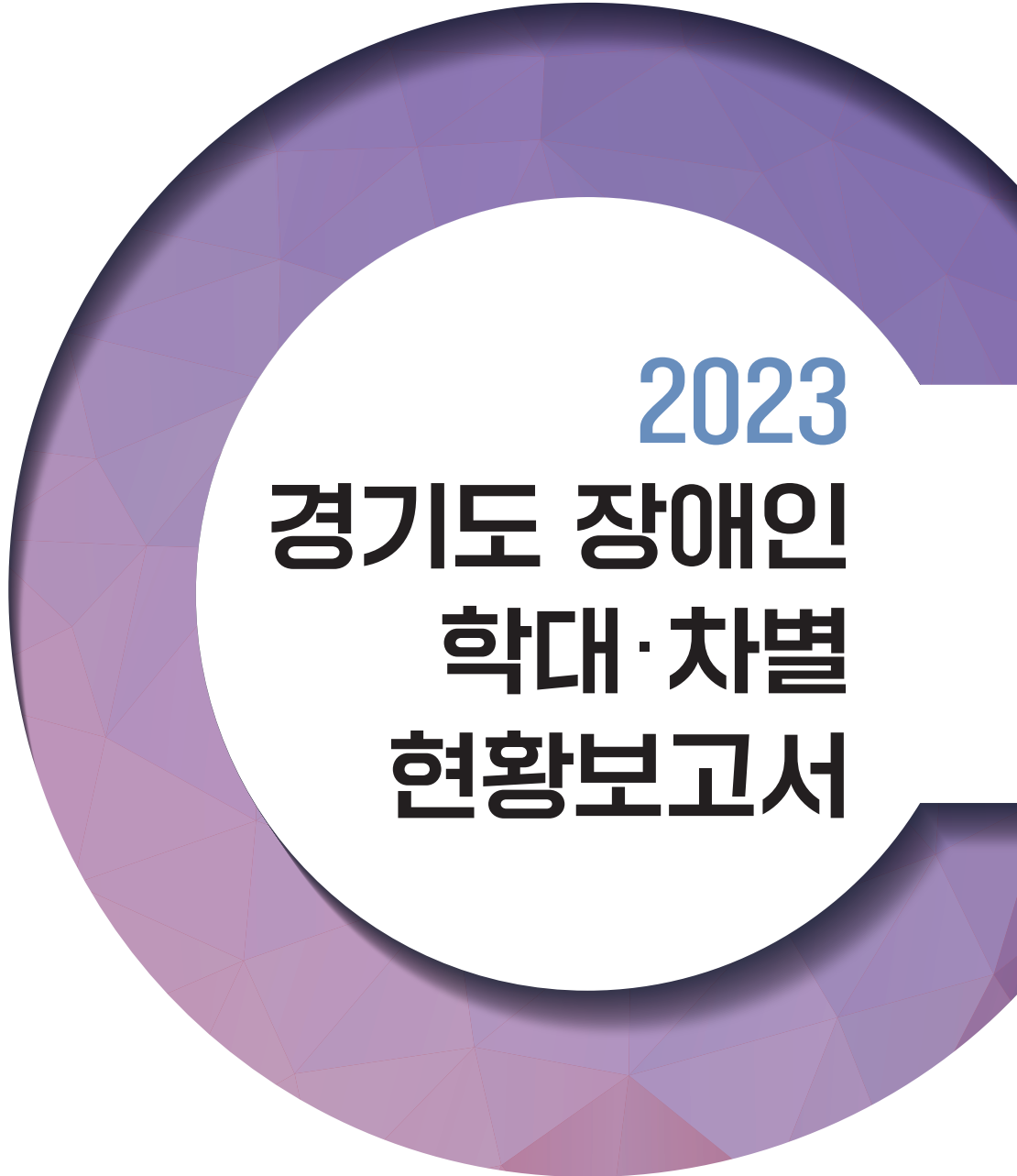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001217-01



2023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목차

용어 설명 / 3

경기도 학대·차별 피해장애인 지원사업의 개요 / 14

장애인학대 지원절차 / 2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 절차 및 지원 흐름도 / 25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 체계 / 27

장애인차별 지원절차 / 28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 30

I. 서론 / 35

- 1. 발간목적37
- 2. 자료수집과정37
- 3. 자료분석방법38
- 4. 3년간 주요 학대현황 변화(2021년 ~ 2023년)39

II. 신고접수 현황분석 / 55

- 1. 신고접수57
- 2. 신고접수 방법60
- 3. 신고접수 경로61

목차

III.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분석 / 63

1. 신고접수	65
2. 신고자 유형	65
3. 학대조사	70
4. 사례판정	71
5. 상담 및 지원	72
6. 사례종결	73
7. 모니터링	74

IV.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 분석 / 75

1. 장애인 학대 사례 현황	77
2. 재학대 사례 현황	94

V. 학대피해 장애(아동)인 심터 현황 / 109

1. 피해장애인심터	111
2. 피해장애아동심터	124

VI. 사례 분석 / 137

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139
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141
3. 장애인차별 유형	142
4.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143

Ⅶ. 피해장애인 주요 지원 사례 / 145

1. 신체적 학대	147
2. 정서적 학대	149
3. 성적 학대	151
4. 경제적 착취	153
5. 유기·방임	155
6. 차별 사례	157

Ⅷ.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 159

1.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사업	161
2.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	163
3. 정책개발사업	166
4. 협력체계 구축사업	168
5. 홍보사업	169

부록.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 173

목차

표

[표 1-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39
[표 1-2] 연도별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1
[표 1-3] 연도별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2
[표 1-4] 연도별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43
[표 1-5]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44
[표 1-6] 연도별 학대유형 현황	45
[표 1-7] 연도별 상담 및 지원 현황	46
[표 1-8]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현황	47
[표 1-9] 연도별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48
[표 1-10] 연도별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49
[표 1-11]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50
[표 1-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51
[표 1-13]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52
[표 1-14]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54
[표 2-1] 2023년 신고접수 현황	57
[표 2-2] 월별 신고접수 현황	58
[표 2-3]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	59
[표 2-4] 신고접수 방법 현황	60
[표 2-5] 신고접수 경로 현황	61
[표 3-1]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 현황	65
[표 3-2] 신고자 유형	65
[표 3-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67

[표 3-4]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69
[표 3-5]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70
[표 3-6] 사례판정 현황	71
[표 3-7] 상담 및 지원 현황	72
[표 3-8] 종결사례 현황	73
[표 3-9] 모니터링 현황	74
[표 4-1] 장애인학대 유형	77
[표 4-2]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78
[표 4-3]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79
[표 4-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80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	81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82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83
[표 4-8]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84
[표 4-9]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85
[표 4-10]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86
[표 4-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89
[표 4-1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90
[표 4-13]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	91
[표 4-14] 학대 발생 장소 현황	93
[표 4-15] 재학대 유형 분석	94
[표 4-16] 재학대 피해자 연령	95
[표 4-17] 재학대 피해자 장애 유형	96
[표 4-18] 재학대 피해자 장애 정도	97

목차

[표 4-19] 재학대 행위자 성별	98
[표 4-20] 재학대 행위자 연령	99
[표 4-21]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101
[표 4-22]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여부	102
[표 4-23]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103
[표 4-24] 재학대 발생 장소	105
[표 4-25] 시·군별 재학대 현황	106
[표 5-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111
[표 5-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성별 현황	112
[표 5-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113
[표 5-4]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114
[표 5-5]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115
[표 5-6]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현황	116
[표 5-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117
[표 5-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현황	118
[표 5-9]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건강 상태 현황	119
[표 5-1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120
[표 5-11]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후 거주 유형 현황	121
[표 5-12] 피해장애인쉼터 재입소 현황	122
[표 5-13] 피해장애인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123
[표 5-14]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현황	124
[표 5-15]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125
[표 5-16]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126
[표 5-17]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127

[표 5-18]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현황	128
[표 5-19]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129
[표 5-20]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의뢰기관 현황	130
[표 5-21]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행위자 유형 현황	131
[표 5-22]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행위자 유형 현황	132
[표 5-23] 피해장애아동 평균 이용기간 현황	133
[표 5-24]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 현황	134
[표 5-25] 피해장애아동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135
[표 6-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139
[표 6-2] 시·군별 장애인차별 현황	140
[표 6-3]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141
[표 6-4]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142
[표 6-5]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144

목차

그래프

[그래프 1-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39
[그래프 1-2] 연도별 신고자 유형	40
[그래프 1-3] 연도별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0
[그래프 1-4] 연도별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2
[그래프 1-5] 연도별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43
[그래프 1-6]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44
[그래프 1-7] 연도별 학대유형 현황	45
[그래프 1-8] 연도별 상담 및 지원 현황	46
[그래프 1-9]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현황	48
[그래프 1-10]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48
[그래프 1-11] 연도별 피해장애인 연령대 현황	49
[그래프 1-1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50
[그래프 1-13] 연도별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51
[그래프 1-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52
[그래프 1-15]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53
[그래프 2-1] 2023년 신고접수 현황	57
[그래프 2-2] 신고접수 현황 비교 : 2022, 2023년	57
[그래프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8
[그래프 2-4] 신고접수 방법 현황	60
[그래프 2-5] 신고접수 경로 현황	61
[그래프 3-1] 신고자 유형	65
[그래프 3-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66

[그래프 3-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68
[그래프 3-4]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70
[그래프 3-5] 사례판정 현황	71
[그래프 3-6] 학대의심사례 현황	72
[그래프 3-7] 상담 및 지원 횟수	72
[그래프 3-8]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72
[그래프 3-9] 종결사례 현황	73
[그래프 3-10]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현황	73
[그래프 3-11] 모니터링 실시 현황	74
[그래프 3-12] 모니터링 지원 현황	74
[그래프 4-1] 장애인학대 유형	77
[그래프 4-2]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78
[그래프 4-3]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79
[그래프 4-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80
[그래프 4-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81
[그래프 4-6]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81
[그래프 4-7] 거주 형태 현황	82
[그래프 4-8] 거주형태_남부	82
[그래프 4-9] 거주 형태_북부	82
[그래프 4-10]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83
[그래프 4-11] 수급자 여부_남부	83
[그래프 4-12] 수급자 여부_북부	83
[그래프 4-13]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84
[그래프 4-14]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85

목차

[그래프 4-15] 학대행위자 성별_남부	85
[그래프 4-16] 학대행위자 성별_북부	85
[그래프 4-17]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86
[그래프 4-18]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87
[그래프 4-1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타인	87
[그래프 4-2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신고의무자	88
[그래프 4-2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비신고의무자	88
[그래프 4-2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90
[그래프 4-23] 동거 여부_남부	90
[그래프 4-24] 동거 여부_북부	90
[그래프 4-25]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1	91
[그래프 4-26]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2	91
[그래프 4-27] 학대 발생 장소	92
[그래프 4-28] 재학대 유형 분석	94
[그래프 4-29] 재학대 피해자 연령	95
[그래프 4-30] 재학대 피해자 장애 유형	96
[그래프 4-31]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97
[그래프 4-32]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97
[그래프 4-33] 재학대 행위자 성별	98
[그래프 4-34] 재학대 행위자 성별_남부	98
[그래프 4-35] 재학대 행위자 성별_북부	98
[그래프 4-36] 재학대 행위자 연령	99
[그래프 4-37]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100
[그래프 4-38]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타인	100
[그래프 4-39]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100

[그래프 4-40]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여부	102
[그래프 4-41]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여부	102
[그래프 4-42]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103
[그래프 4-43]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103
[그래프 4-44] 재학대 발생 장소	104
[그래프 4-45] 학대 발생 장소	107
[그래프 5-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111
[그래프 5-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성별 현황	112
[그래프 5-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113
[그래프 5-4]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114
[그래프 5-5]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115
[그래프 5-6]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	116
[그래프 5-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117
[그래프 5-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현황	118
[그래프 5-9]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건강 상태 현황	119
[그래프 5-1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120
[그래프 5-11]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후 거주 유형 현황	121
[그래프 5-12] 피해장애인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122
[그래프 5-13]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현황	124
[그래프 5-14]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125
[그래프 5-15]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126
[그래프 5-16]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127
[그래프 5-17] 피해장애아동 장애 정도 현황	128
[그래프 5-18]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129

목차

[그래프 5-19]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의뢰기관 현황	130
[그래프 5-20]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현황	131
[그래프 5-21]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행위자 유형 현황	132
[그래프 5-22] 피해장애아동 평균 이용기간 현황	133
[그래프 5-23]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 현황	134
[그래프 5-24] 피해장애아동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135
[그래프 6-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139
[그래프 6-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141
[그래프 6-3]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142
[그래프 6-4]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144

그림

[그림]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할 지역	16
[그림 1]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24
[그림 2]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절차	25
[그림 3]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지원 흐름도	26
[그림 4] 도(道)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 체계도	27
[그림 5]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별 사례지원 체계도	29

용어설명

경기도 학대·차별

피해장애인 지원사업의 개요

장애인학대 및 차별 지원절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용어 설명

기본개념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15가지 유형으로 나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주요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신장애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장애정도

2019년 7월부터 1~6급의 등급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장애인학대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중복 학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
-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등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보호의무자: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

◆ 재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 집단이용시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말함.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이 이에 해당



장애인차별

◆ 장애인차별

구 분	개 념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간접차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이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차별 유형

구 분	개 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강요하는 경우 •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재화/용역 일반	<p>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p> <p>※ 재화와 용역 : 재화는 가치를 지닌 물품을 의미하고, 용역은 가치를 지닌 서비스를 의미</p>
보험/금융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시설물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사태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구 분	개 념
이동/교통수단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정보 접근/의사소통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등
문화/예술/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관광·체육 시설의 사업자·관리자가 장애인이 해당 활동을 참여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사법/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는 경우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성권, 성 등 :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누릴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등 •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에서 교육권, 재산권, 거주·이전, 외부와의 소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신체를 공개하는 경우 등 • 건강권 :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이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이 장애가 있는 여성·아동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통계방식에 따라 내용 정리함

◆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구 분	개 념
개선 요구 (행정처분 요구 포함)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한 지역기관의 직접적 개선 요구(종사자 교육, 지침 변경 등)나 소관 행정청에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 관리 감독기관에 문제가 된 기관의 감사 요구, 신고, 진정이나 민원 제기(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외) 등을 말함
고발·수사 의뢰	직접 사건을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진정 서류 작성을 지원하거나, 직접 진정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일반(차별)사례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절차 안에서의 절차지원을 하는 경우
소송구조	직접 혹은 법률구조 기관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민·형사·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경우
조정·중재	당사자 및 관련된 사람들을 조정 및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
정보제공	복지상담, 유관기관 정보 문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조사 중 해결	상담 중 기관의 개입 없이 해결된 경우
정서적 지지	사회에 대한 불만, 하소연, 고충 등을 호소하는 당사자 및 내담자에 대한 위로나 지지를 한 경우
타 기관 및 자원 연계	기관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타 기관 및 자원을 연계하는 경우
당사자 대응 포기	신고접수 후 지원과정에서 당사자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당사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하는 등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기타	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접수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포함)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 일반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차별, 개인적 분쟁, 정보 문의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요소가 없는 사례

◆ 인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신고 이외의 경로로 장애인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 연계

타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 이관

특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기관 간 협의 등으로 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사례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이관받은 기관으로 넘어감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2항)

◆ 비신고의무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학대를 신고한 경우 이들을 비신고 의무자라고 함. 본인,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함

- 가족 및 친인척: 피해장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
- 유관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종사자로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신고의무자가 아닌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이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인이 아닌 의료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아동·노인관련기관 종사자, 청소년·여성·노숙인·이주민 등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타인: 피해장애인의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 파악 안 됨: 신고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자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학대조사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과정.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면담, 증거 및 입증 서류 확인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응급조치가 동시에 실시됨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및 제2항)

◆ 사례판정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절차.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는 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잠재위험사례와 비학대사례로 판정

구분	개념
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잠재위험사례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 사례회의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논의하여 사례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회의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사례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논의하여 사례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 재학대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개입종료되었다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최초 장애인학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기간

◆ 장애인학대 발생빈도

장애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

피해자 등 지원

◆ 피해장애인 지원

학대사례로 판정한 후 피해자에 대한 학대 후유증 감소, 학대 재발 방지,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함

- 의료지원: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 또는 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말함
- 심리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함
- 거주지원: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 마련에 관한 지원으로 응급보호, 임대주택과 같은 재가에서의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와 같은 거주시설에서의 거주지원 등이 있음
- 사법지원: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함
- 복지지원: 장애인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말함
- 예방교육지원: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말함
- 학업지원: 피해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협의나 신청, 연계, 전학 신청, 등·하교 지원 등 학업을 위한 지원을 말함(2022년 신설된 지원 유형)
- 중재지원: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가 법적절차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를 이끌어내는 지원을 말함
- 진정지원: 피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직접 진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진정 과정을 돕는 지원을 말함
- 상담지원: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교육·중재·진정 외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정서적 지지, 진행 경과 안내 등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상담을 말함
- 기타지원: 어떤 유형에 포함되기 어려운 지원으로 피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지원하거나, 다수의 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통칭함

◆ 사례종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마치는 단계로 사례종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실시하지 않음

◆ 사후 모니터링

사례종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말함

◆ 개입종료

사례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함



경기도 학대·차별 피해장애인 지원사업의 개요

1. 경기도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가지며, 경기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동법 제12조의3에 따라 경기도 내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책무를 가지고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피해장애인 쉼터 보듬(경기남부),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내 장애인 인권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자립 지원)

- ① 도지사는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금의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가. 사업 근거 및 개요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 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_경기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업무편람_경기도
-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규정

□ 사업개요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지원
-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예방 등 교육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시·군 이행사항 모니터링

나. 사업 수행기관

□ 기관 현황

구분	소계	경기남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경기 남부지역 관할)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경기 북부지역 관할)
위탁기간	3년	2022. 1. 1. ~ 2024.12.31.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양주시
운영인력	25명	14명(관장 1, 팀장 3, 직원 10)	11명(관장 1, 팀장 3, 직원 7)



[그림]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할 지역

3. 피해장애인쉼터

가. 사업 근거 및 개요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 권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피해장애인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계약서_경기도
- 피해장애인쉼터 사무업무편람_경기도
-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경기남부),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규정

□ 사업개요

-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제공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사업 수행기관

□ 기관 현황

구분	소계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경기 남부지역 관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 북부지역 관할)
위탁기간	5년	2022.01.01.~2026.12.31.	2021.12.30.~2026.12.29
소재지	-	경기도 내(비공개)	
운영인력	13명	7명(원장 1, 팀장 1, 직원 5)	6명(원장1, 팀장1, 직원4)

□ 쉼터별 특성

-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의 경우 전국 쉼터 최초 ▲독립형, ▲남녀구분형, ▲내임대주택형, ▲지역사회통합형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

□ 쉼터별 지원항목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경기 남부지역 관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 북부지역 관할)			
항목	세부사업명	비고	항목	세부사업명	비고	
사회심리 재활사업	전문심리지원	정신과진료 심리체육·심리운동 언어치료 전문상담소 이용 등	사회심리 재활사업	전문심리 지원 및 여가지원	심리상담·심리재활· 사회기능회복· 문화여가 별빛체험 등	
교육 재활사업	자립교육 프로그램	범죄피해 예방 교육직업 훈련연계 등	교육 의료 재활사업	각종 교육 및 의료지원	성·인권교육소방 ·안전교육교육활동 (종이접기 등) 의료지원(건강검진 등)	
기타사업	사회참여사업	나들이솔루션회의 등	기타사업	종사자 교육	종사자교육 (인권교육 등)종사자 워크숍사업평가 등	
	지역사회 정착지원	원가정복귀 지원초기 입주지원 등		지역자원 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	
운영사업	일상생활지원	보호 및 숙식제공	운영사업	일상생활 지원	식생활지도·간식지도 신변자립훈련 등	
	입소상담 개별육구조사 및 지원계획수립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례종결 사후 모니터링					

□ 입소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 등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장애인쉼터에 입소가능



4. 피해장애아동쉼터

가. 사업 근거 및 개요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권「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피해장애아동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계약서_경기도
-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쉼터 사무업무편람_경기도
-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규정

□ 사업개요

- 피해장애아동 임시 보호 및 지원 : 피해장애아동의 긴급분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 피해장애아동에게 숙식제공
 - 쉼터 생활 및 필수품 지원
- 상담지원
 - 심리적 안정과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
- 학업 및 의료지원
 -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학업지도 및 안전교육 등 교육지원
 -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등 의료지원 연계
- 일상복귀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지원
 - 여가 및 문화체험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원가정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나. 사업 수행기관

□ 기관 현황

구분	소계	경기도피해장애아동 남아쉼터	경기도피해장애아동 여아쉼터
위탁기간	5년	2022. 11. 11.~2027. 11. 10.	
소재지	-	경기도 내(비공개)	
운영인력	12명	6명(원장 1, 팀장 1, 생활복지사 4)	6명(팀장1, 치료사 1, 생활복지사 4)

□ 입소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도, 시·군·구 등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입소도중 만 18세에 도달하는 장애아동은 최대 입소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장애아동 쉼터에서 보호가능,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경로 등에 따라 입소 가능

□ 피해장애아동 지원사업

피해장애아동의 긴급분리를 통한 이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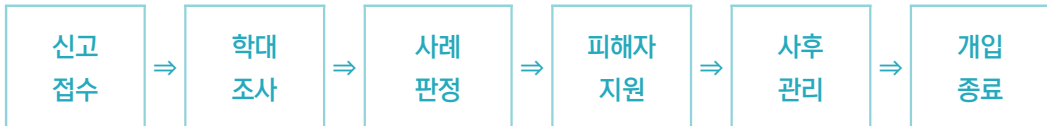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지원절차

사례지원 개요

-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및 차별사례의 신고(상담)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절차 전반을 말함.

절차

-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및 차별사례는 신고(상담)접수부터 개입종료까지의 절차로 진행.



장애인학대사례는 사례판정 이후 피해자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거쳐 사례의 개입을 종료함. 장애인학대사례 외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학대사례로 판정한 경우 피해자 지원과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접수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음.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와 가까운 위치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함. 2021년부터 전화 외에도 문자(SMS),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음. 누리집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내방 신고도 가능함.

◆ 학대조사

신고접수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대조사를 실시함.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현장조사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동행하여야 함.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조사나 질문을 실시함.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조사 시 장애인학대와 관련있는 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함. 이때 사안의 응급성, 재발가능성, 학대행위자에게 거주지가 노출된 경우, 행위자가 가족이며 행위자인 가족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 등의 경우 쉼터로 분리하여 보호함.

◆ 사례판정

학대조사 이후 장애인학대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 결정 회의인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를 판정함. 사례회의 시 판정이 어렵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쉼터 입소자의 경우 학대판정위원회의 결과가 비학대로 판정된 사례자의 경우 쉼터에서 퇴소절차가 이뤄짐(단,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함)

◆ 피해자 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되면 조사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과정 및 내용,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함.

사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예방교육지원, 학업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함.

쉼터 입소 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1. 보호 및 숙식 제공
2. 심리안정 및 회복지원 : 심리상담지원, 심리체육, 심리운동프로그램, 의료지원 등 진행
3. 일상생활회복 및 사회참여활동지원 : 개인위생, 식생활관리교육, 금전교육, 평생교육, 자기옹호교육, 직업교육(바리스타, 천연비누공예, 클레이공예, 직업탐구, 수어교실 등), 주 1회 나들이 프로그램,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이야기 프로그램 등
4. 지역사회정착지원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지원, 새로운 거주공간 연계지원

◆ 사례종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마치면 사례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함. 사례회의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정·변경하여 피해자 지원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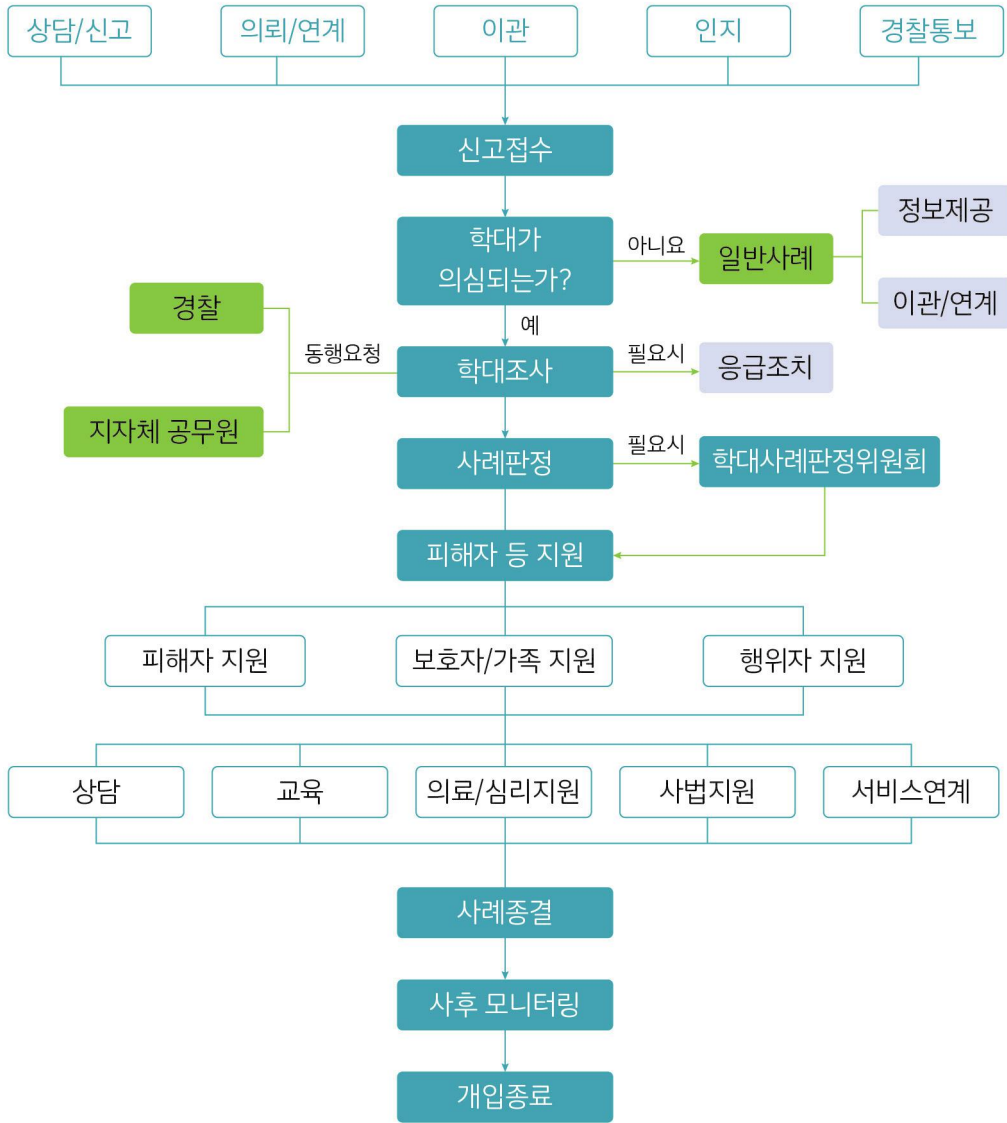
◆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지원을 마치기로 결정하면 일정 기간 피해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 및 안정적인 생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 (쉼터 : 퇴소 후 3개월)

◆ 개입종료

사후 모니터링 기간 내 재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례의 개입을 최종적으로 종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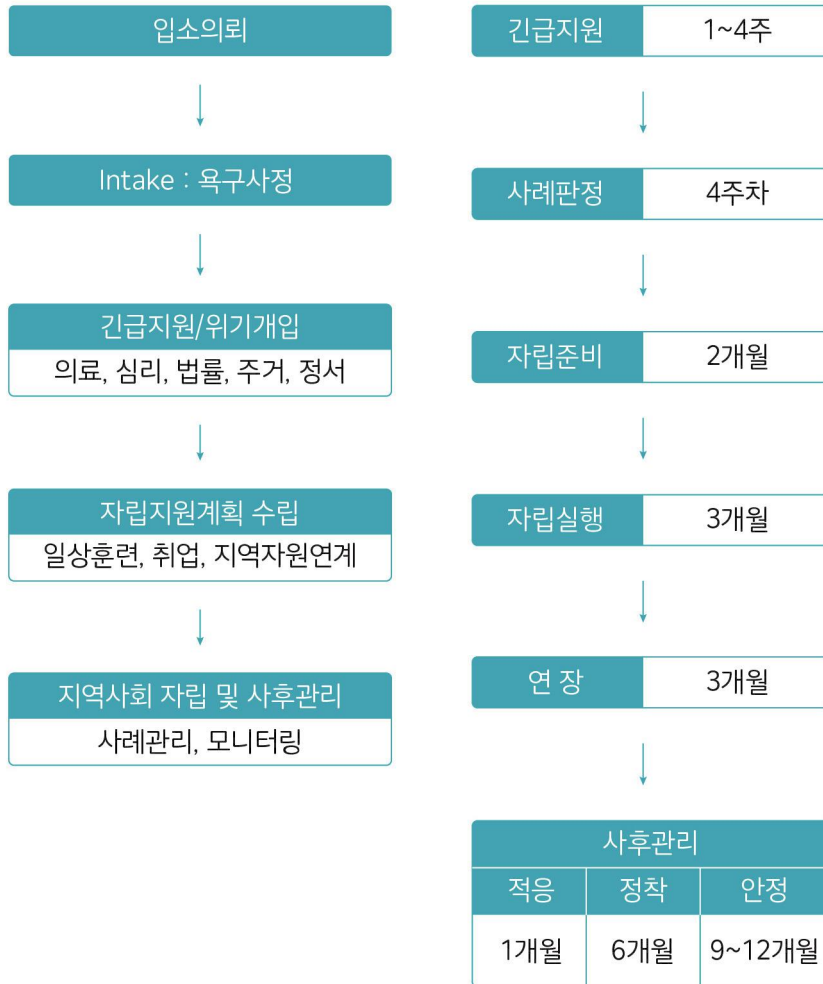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그림 1]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피해장애인쉼터 이용 절차 및 지원 흐름도

◆ 이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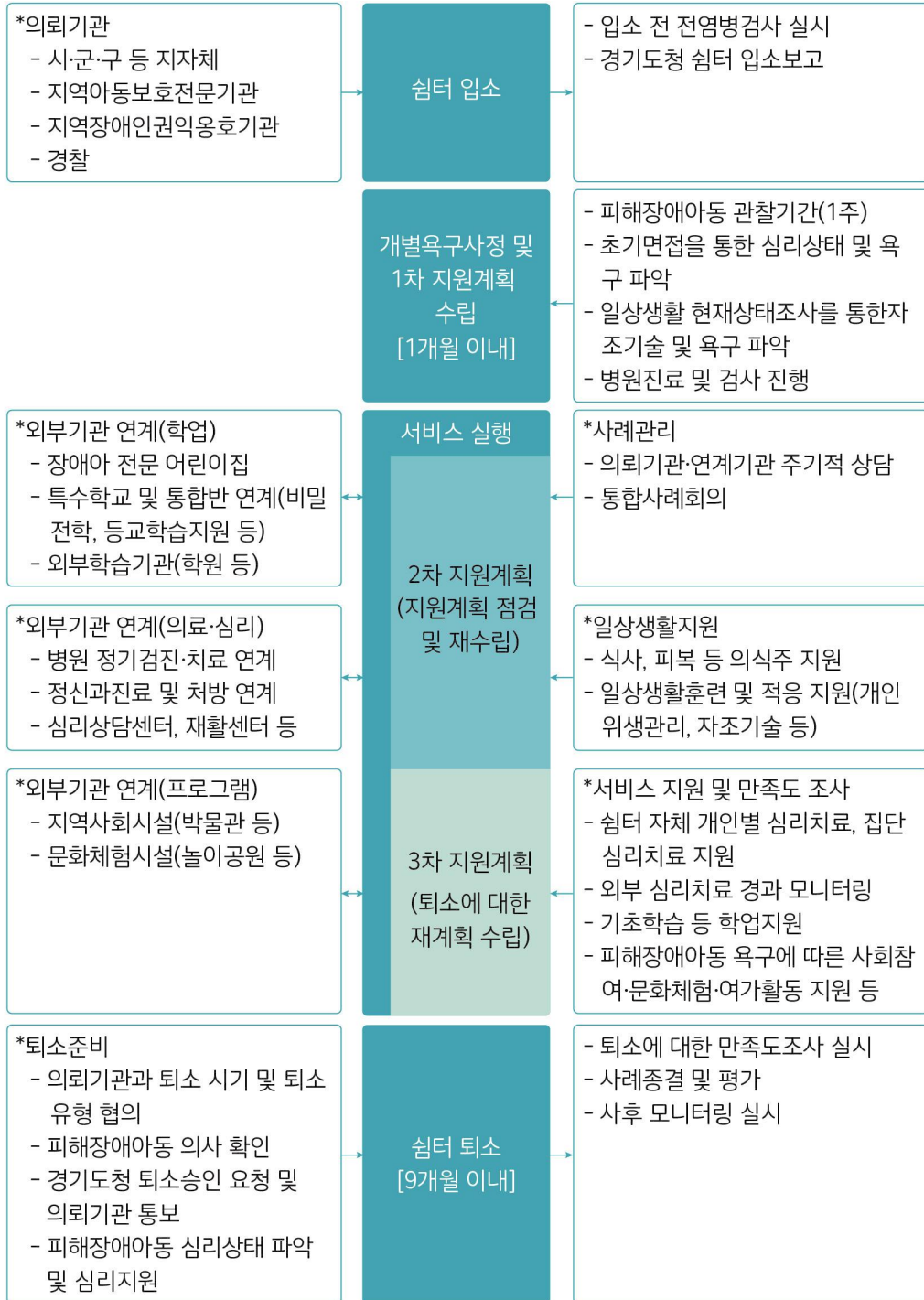
[그림 2]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절차

◆ 지원 흐름도



[그림 3] 도(道) 피해장애인쉘터 지원 흐름도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 체계



[그림 4] 도(道)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 체계도

장애인차별 지원절차

◆ 장애인차별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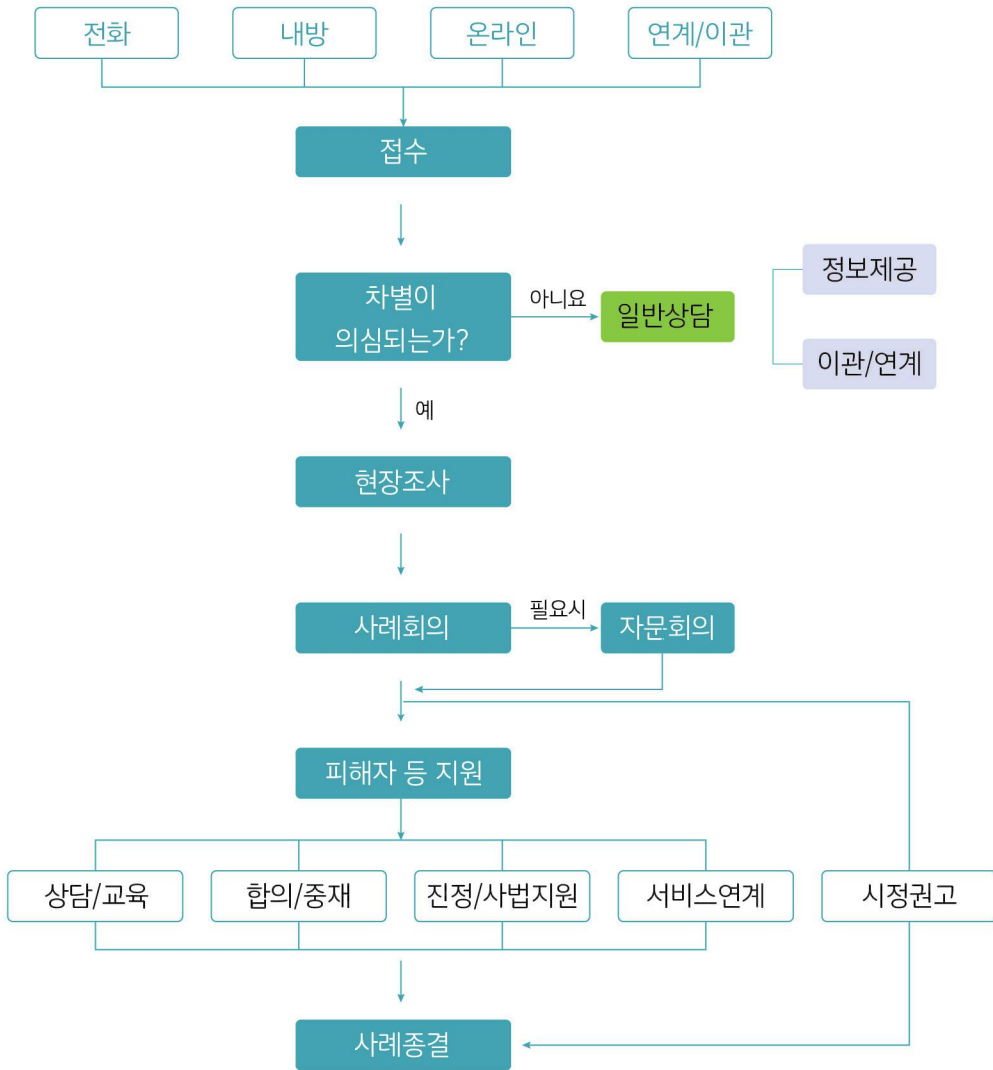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원대상 장애인차별 분류

장애인 차별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일반, 보험/금융, 시설물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 사례 지원의 절차



[그림 5]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별 사례지원 체계도

◆ 장애인차별사례 처리결과

장애인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차별로 판단된 사례에 대하여 개선요구, 고발/수사의뢰,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인권위 진정, 정보제공, 정서적지지, 조정/중재, 타 기관 및 자원 연계,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 및 지원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 기본개요

-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음. 전국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와 가까운 위치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함.

전화 외에도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 신고 등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학대를 받았을 때 문자(SMS)와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나 유튜브 채널 동영상 활용 등
 - * 수강사이트(<https://www.gseek.kr>)
 - **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 (문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1600-0999),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031-287-113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031-851-1007)

◆ 교육실시 및 교육 포함 여부 결과 제출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 (내용) 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②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 제출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동법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 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5(불이익 조치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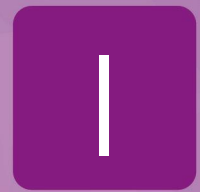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 ②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 (영상물 촬영), 제11조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3조 (신변안전조치)



서론

1. 발간목적
2. 자료수집과정
3. 자료분석방법
4. 3년간 주요 현황 변화

1. 발간목적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의 학대 및 차별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아동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를 설치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각 1개소(총 2개소)가 설치 되어 있으며, 장애인학대 및 차별의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 관리 등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접적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를 포함하여 도내에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의 설치로 장애인학대 및 차별 신고와 조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매년 경기도 내 장애인학대 및 차별에 관한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학대·차별 현황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라 경기도민들에게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과정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의 모든 지원과정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전국 공통)에 입력·관리 되고 있다. 장애인 학대 및 차별 현황 통계 분석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정보를 취합하였다.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에 입소된 사례와 모든 지원과정은 전국피해장애인쉼터(가칭-한국피해장애인쉼터협회 2024년 등록 예정)의 협의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입력·관리되고 있으며, 입소에 따른 통계 분석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 보고된 정보를 취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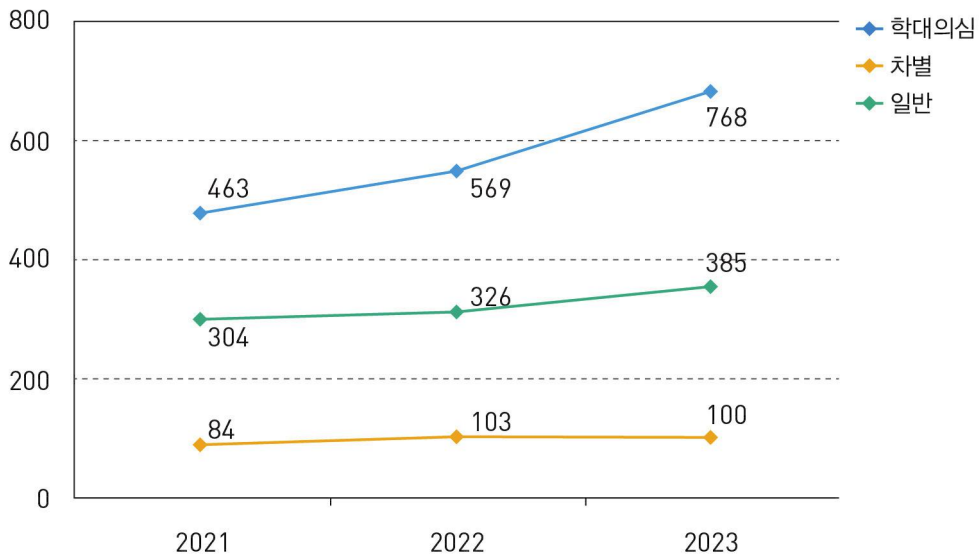
4. 3년간 주요 학대현황 변화(2021년 ~ 2023년)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표 1-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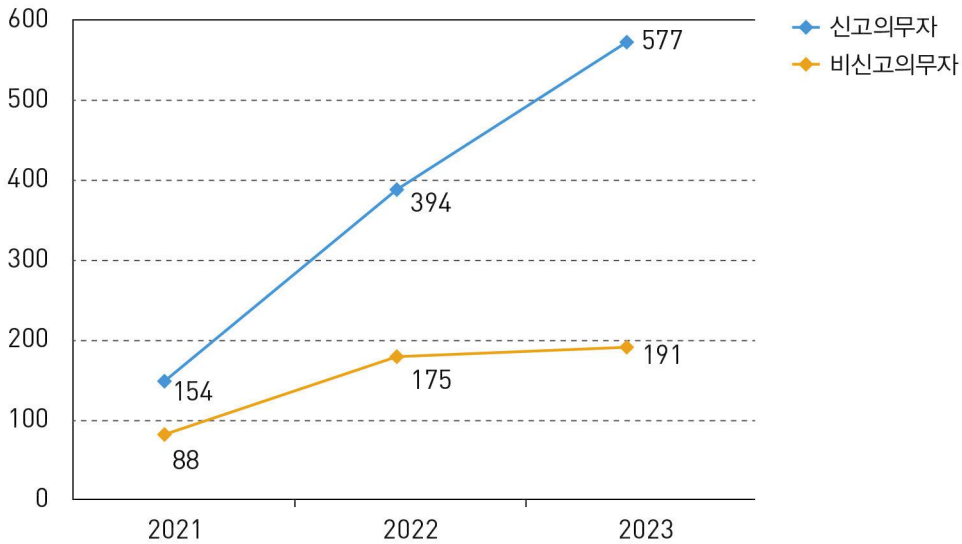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학대	463	569	768
차별	84	103	100
일반	304	326	385
계	851	998	1253

[그래프 1-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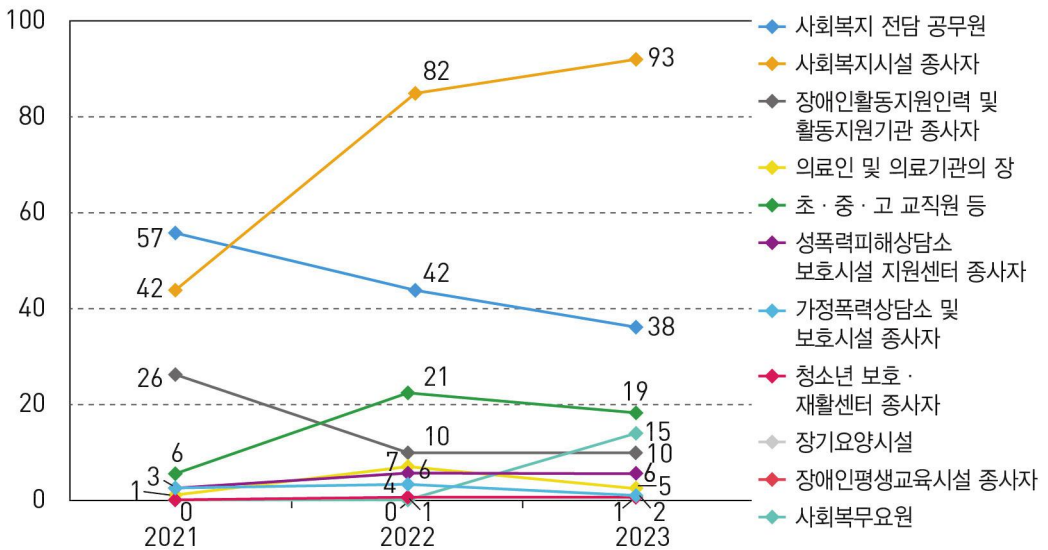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그래프 1-2] 연도별 신고자 유형



[그래프 1-3] 연도별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신고의무자)

[표 1-2] 연도별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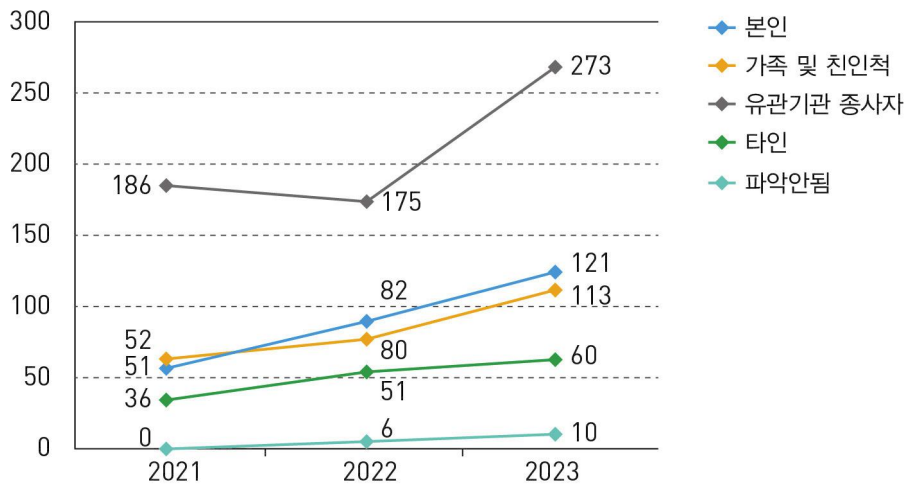
신고의무자	2021	2022	2023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7	42	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2	82	93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6	10	10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7	5
의료기사	-	-	-
응급구조사	-	-	-
구급대의 대원	-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	-	-
보육 교직원	-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	-
초·중·고 교직원 등	6	21	1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지원센터 종사자	3	6	6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3	4	2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	-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1	1
장기요양시설	-	1	1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	-	-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장기요양인정신청조사 담당자	-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1	1
사회복무요원	-	-	15
계	138	175	191

(비신고의무자)

[표 1-3] 연도별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비신고의무자		2021	2022	2023
본인		52	82	121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	1	2
	부모	14	49	43
	자녀	17	3	31
	형제자매	13	15	25
	친인척	6	12	12
	소계	51	80	113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19	17	15
	경찰공무원	76	42	57
	공공기관 종사자	3	3	3
	교육기관 종사자	-	2	4
	의료기관 종사자	-	4	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77	93	175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3	1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	3	2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9	8	13
	소계	186	175	273
타인		36	51	60
파악 안됨		-	6	10
계		325	394	577

[그래프 1-4] 연도별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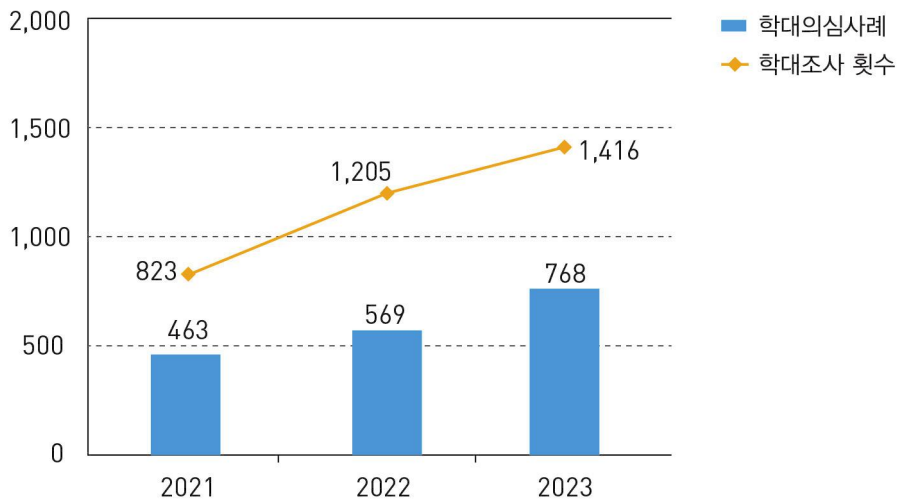


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표 1-4] 연도별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구분	학대의심 사례	학대 조사	학대 조사 실시율	학대 조사 횟수	사례별 조사 횟수
2021	463	451	97.4	823	1.8
2022	569	565	99.3	1,205	2.1
2023	768	760	99.0	1,416	1.8

[그래프 1-5] 연도별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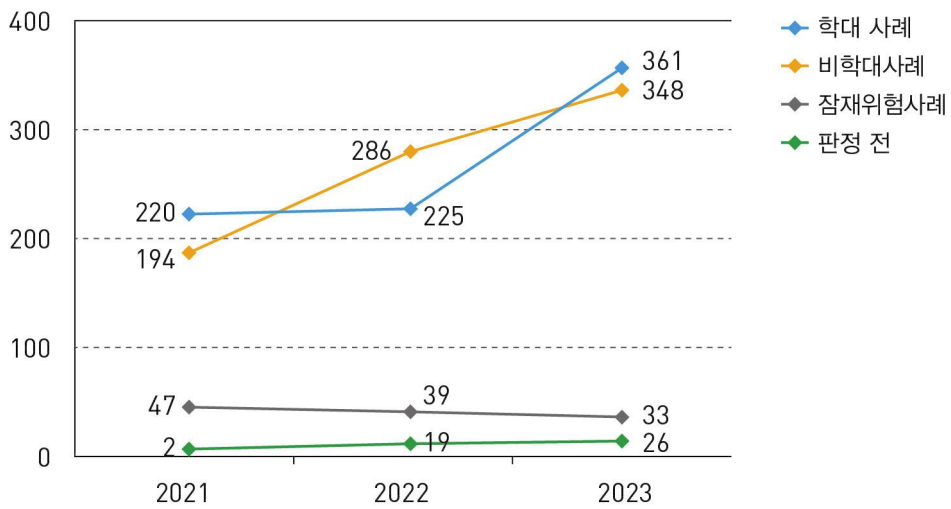


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표 1-5]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구분	학대 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판정 전	계
2021	220	194	47	2	463
2022	225	286	39	19	569
2023	361	348	33	26	768

[그래프 1-6]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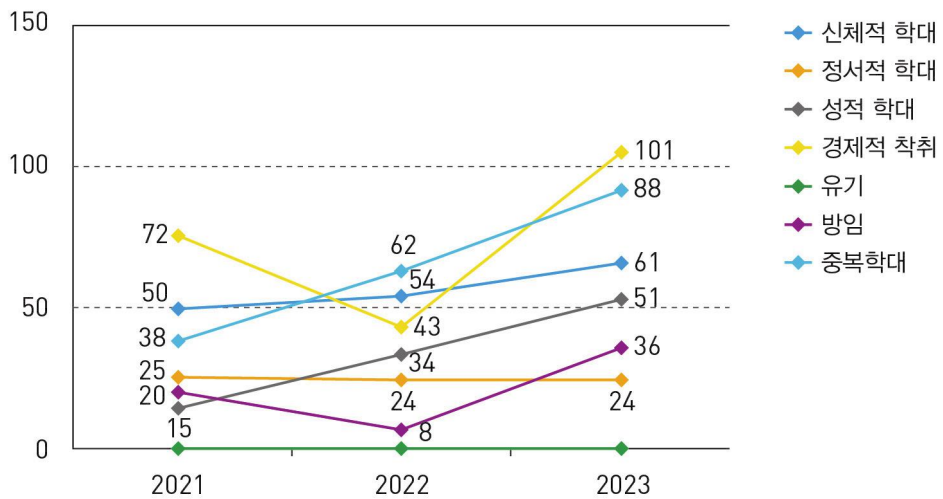


5. 연도별 학대유형 현황

[표 1-6] 연도별 학대유형 현황

유형	2021	2022	2023
신체적 학대	50	54	61
정서적 학대	25	24	24
성적 학대	15	34	51
경제적 착취	72	43	101
유기	-	-	-
방임	20	8	36
중복 학대	38	62	88
계	220	225	361

[그래프 1-7] 연도별 학대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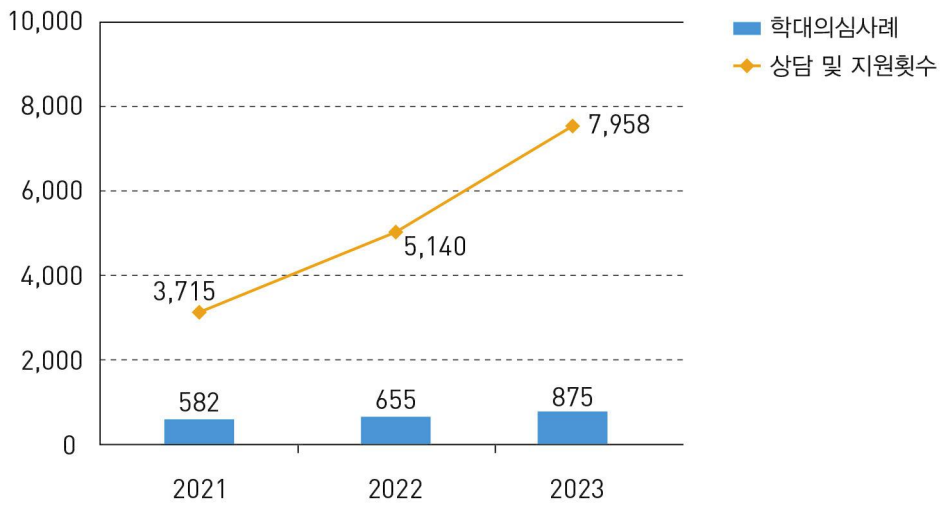


6. 연도별 상담 및 지원 횟수

[표 1-7] 연도별 상담 및 지원 현황

구분	당해연도 전		당해연도		계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횟수	
2021	119	1,014	463	2,701	582	3,715	6.4
2022	86	798	569	4,342	655	5,140	7.8
2023	107	1,560	768	6,398	875	7,958	9.1

[그래프 1-8] 연도별 상담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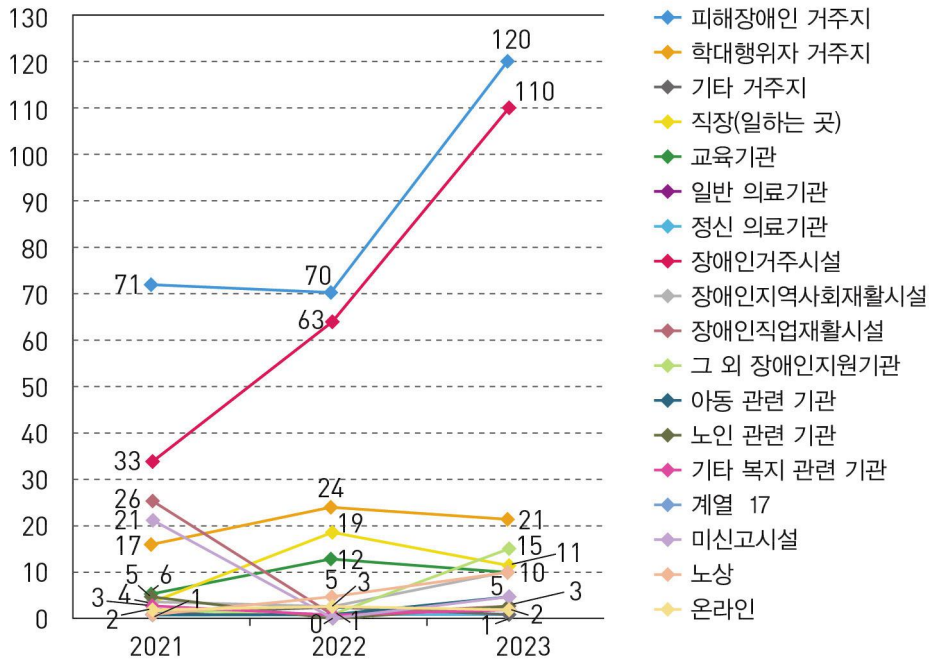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현황

[표 1-8]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현황

발생 장소		2021	2022	2023
피해장애인 거주지		71	70	120
학대행위자 거주지		17	24	21
기타 거주지		1	3	1
직장(일하는 곳)		4	19	11
교육기관		6	12	10
일반 의료기관		2	1	2
정신 의료기관		1	1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33	63	11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	3	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6	1	3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보호시설(쉼터)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	1	15
정신요양시설		-	-	-
정신재활시설		-	-	-
아동 관련 기관		1	1	5
노인 관련 기관		5	-	3
기타 복지 관련 기관		3	1	2
종교시설		-	-	4
미신고시설		21	-	5
노상		1	5	10
온라인		2	3	2
상업시설		15	10	17
기타		5	7	6
파악 안됨		-	-	3
계		220	225	361

[그래프 1-9]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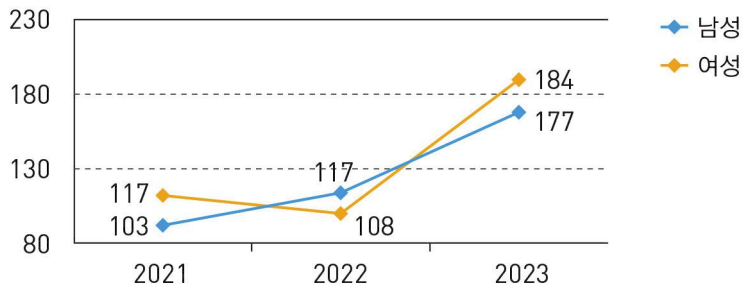


8. 연도별 피해장애인 성별

[표 1-9] 연도별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구분	남성	여성	계
2021	103	117	220
2022	117	108	225
2023	177	184	361

[그래프 1-10]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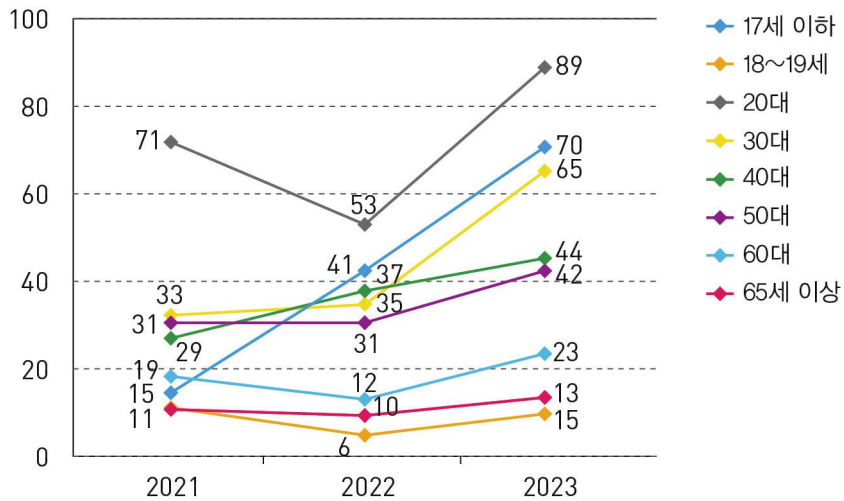


9. 연도별 피해장애인 연령대

[표 1-10] 연도별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연령	2021	2022	2023
17세 이하	15	41	70
18~19세	11	6	15
20대(20~29세)	71	53	89
30대(30~39세)	33	35	65
40대(40~49세)	29	37	44
50대(50~59세)	31	31	42
60대(60~64세)	19	12	23
65세 이상	11	10	13
계	220	225	361

[그래프 1-11] 연도별 피해장애인 연령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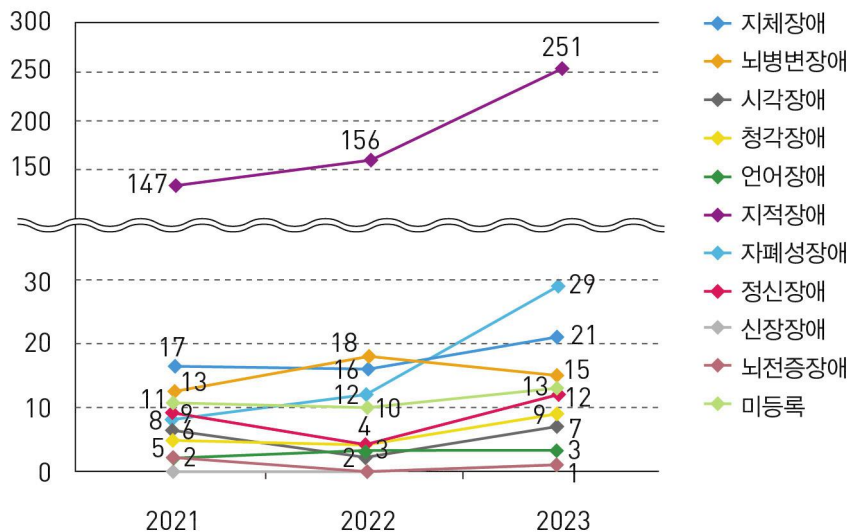


10. 연도별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표 1-11]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장애 유형	2021	2022	2023
지체 장애	17	16	21
뇌병변장애	13	18	15
시각장애	6	2	7
청각장애	5	4	9
언어장애	2	3	3
지적장애	147	156	251
자폐성 장애	8	12	29
정신장애	9	4	12
신장 장애	-	-	1
심장 장애	-	-	-
호흡기 장애	-	-	-
간 장애	-	-	-
안면장애	-	-	-
장루·요루장애	-	-	-
뇌전증 장애	2	-	-
미등록	11	10	13
계	220	225	361

[그래프 1-1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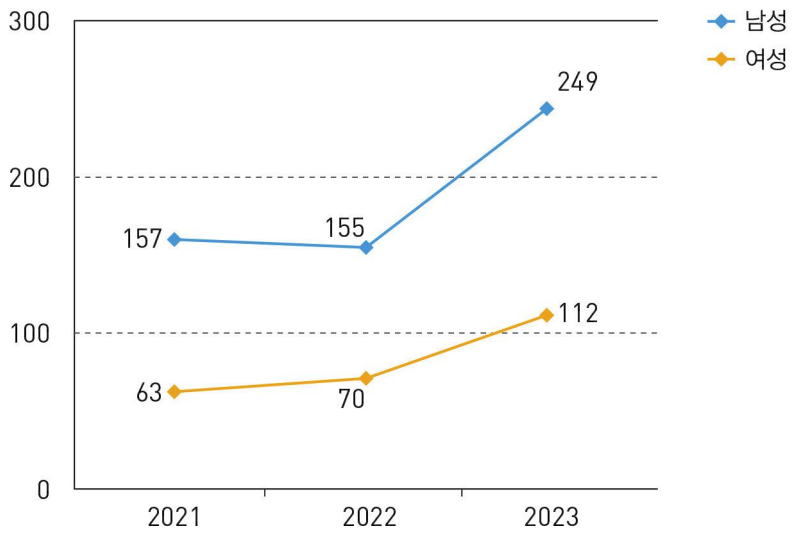


11. 연도별 학대행위자 성별

[표 1-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성 별	2021	2022	2023
남 성	157	155	249
여 성	63	70	112
계	220	225	361

[그래프 1-13] 연도별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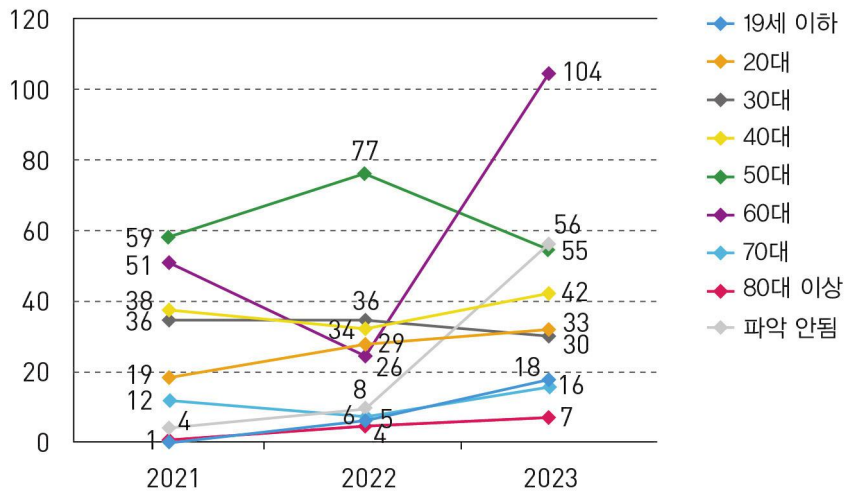


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표 1-13]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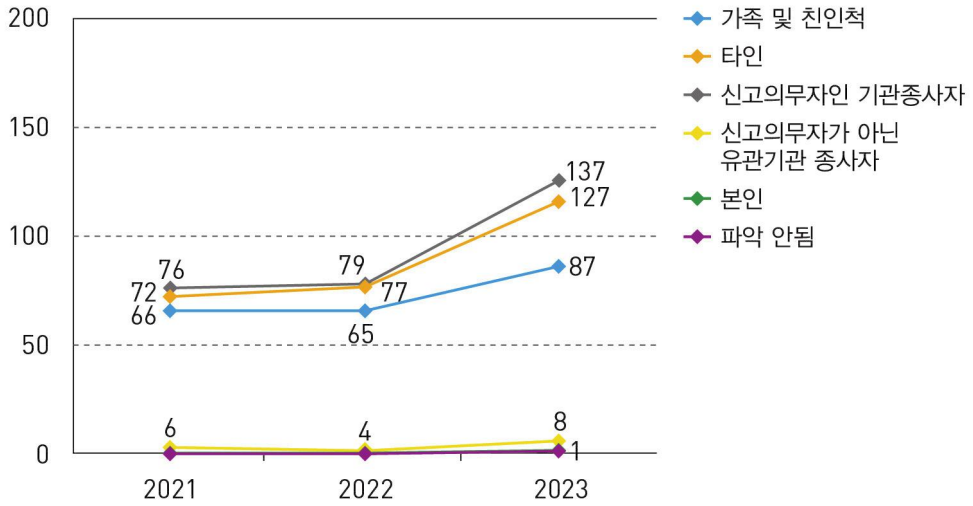
연령	2021	2022	2023
19세 이하	-	5	18
20대(20~29세)	19	29	33
30대(30~39세)	36	36	30
40대(40~49세)	38	34	42
50대(50~59세)	59	77	55
60대(60~69세)	51	26	104
70대(70~79세)	12	6	16
80대 이상	1	4	7
파악 안됨	4	8	56
계	220	225	361

[그래프 1-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13.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그래프 1-15]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표 1-14]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관계		2021	2022	2023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2	11	22
	부	24	17	25
	모	9	11	21
	조부모	3	3	-
	자녀	4	5	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	9	12
	그 외 친척	9	9	5
	소계	66	65	87
타인	동거인	22	4	12
	이웃	4	3	12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4	43	72
	고용주	3	10	4
	모르는 사람	9	19	27
	소계	72	79	127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5	63	124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3	5
	보육 교직원	-	-	1
	초·중·고 교직원 등	1	1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3	7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1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
	장기요양요원	-	-	1
	사회복무요원	4	-	1
	소계	-	2	3
소계	76	77	137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1	-	2
	의료기관 종사자	1	-	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	-	4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1	1	-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1	-	-
	기타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	3	1
	소계	-	3	1
소계	6	4	8	
본인	-	-	1	
파악 안됨	-	-	1	
계	220	225	361	



신고접수 현황분석

1. 신고접수
2. 신고접수 방법
3. 신고접수 경로

1. 신고접수

1) 2023년 신고접수(학대, 차별, 일반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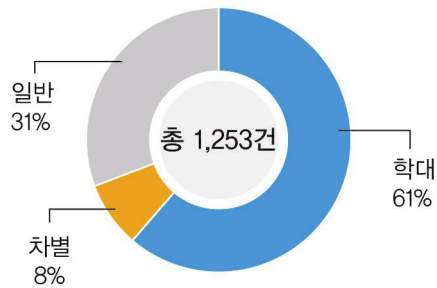
전체 신고 1,253건 중 학대의심사례 768건(61.3%), 일반사례 385건(30.7%), 차별 100건(8.0%) 순으로 전년도 신고접수 998건 대비 255건(25.6%) 증가하였다.

[표 2-1] 2023년 신고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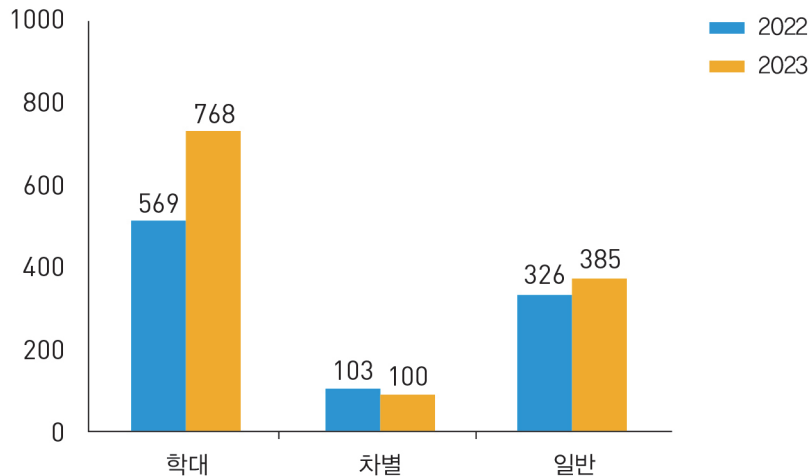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학대	차별	일반	계
계	768(61.3)	100(8.0)	385(30.7)	1,253(100)
경기 남부	450(57.6)	63(8.1)	268(34.3)	781(100)
경기 북부	318(67.4)	37(7.8)	117(24.8)	472(100)

[그래프 2-1] 2023년 신고접수 현황



[그래프 2-2] 신고접수 현황 비교 : 2022, 2023년



2) 월별 신고접수

월평균 신고접수 건은 104건이다. 학대의심사례는 월평균 64건, 일반사례는 월평균 32건, 차별사례는 월평균 8건이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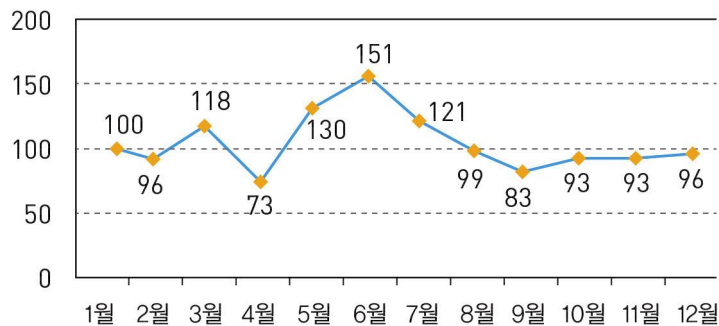
월별 신고접수현황을 보면 6월 151건(12.1%), 5월 130건(10.4%), 7월 121건(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월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 평균
학대	62	62	70	44	82	100	77	58	45	62	52	54	768	64
차별	13	5	8	8	8	4	13	10	7	6	8	10	100	8
일반	25	29	40	21	40	47	31	31	31	25	33	32	385	32
계	100	96	118	73	130	151	121	99	83	93	93	96	1,253	104

[그래프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3) 시·군별 신고접수

시·군별 전체 신고접수 현황은 수원시 105건(8.4%), 파주시 80건(6.4%), 양주시 71건(5.7%), 고양시 65건(5.2%)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전체 신고접수 중 학대신고접수만을 살펴보면, 파주시 66건(8.6%), 수원시 60건(7.8%), 양주시 59건(7.7%), 남양주시 46건(6.0%), 용인시 43건(5.6%), 고양시 37건(4.8%) 순으로 많았다.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은 신고접수 당시 피해자의 실거주 지역을 확인한 것으로, 피해자가 신고접수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다. 즉, 피해자의 실거주 지역과 피해발생 지역은 상이하다.

기타(타 지역)의 경우, 경기도 외의 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접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던 중 피해자가 거주지를 경기도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상담의 경우 내담자가 거주지역을 밝히지 않고 전화상담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내담자의 거주지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파악안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시·군	학대	비율	차별	비율	일반	비율	계	비율
수원시	60	7.8	7	7	38	9.9	105	8.4
성남시	24	3.1	5	5	15	3.9	44	3.5
안양시	34	4.4	4	4	3	0.8	41	3.3
부천시	33	4.3	5	5	6	1.6	44	3.5
광명시	3	0.4	-	-	1	0.3	4	0.3
평택시	14	1.8	3	3	16	4.2	33	2.6
안산시	25	3.3	6	6	10	2.6	41	3.3
과천시	2	0.3	2	2	1	0.3	5	0.4
오산시	13	1.7	1	1	4	1.0	18	1.4
시흥시	27	3.5	7	7	10	2.6	44	3.5
군포시	4	0.5	-	-	5	1.3	9	0.7
의왕시	6	0.8	1	1	1	0.3	8	0.6
하남시	6	0.8	-	-	4	1.0	10	0.8
용인시	43	5.6	5	5	11	2.9	59	4.7
이천시	4	0.5	-	-	3	0.8	7	0.6
안성시	28	3.6	-	-	11	2.9	39	3.1
김포시	20	2.6	1	1	9	2.3	30	2.4
화성시	29	3.8	1	1	10	2.6	40	3.2
광주시	17	2.2	2	2	10	2.6	29	2.3
여주시	22	2.9	-	-	1	0.3	23	1.8
양평군	20	2.6	2	2	4	1.0	26	2.1
고양시	37	4.8	9	9	19	4.9	65	5.2
남양주시	46	6.0	3	3	6	1.6	55	4.4
파주시	66	8.6	6	6	8	2.1	80	6.4
의정부시	36	4.7	6	6	21	5.5	63	5.0
양주시	59	7.7	2	2	10	2.6	71	5.7
구리시	13	1.7	3	3	3	0.8	19	1.5
포천시	17	2.2	1	1	4	1.0	22	1.8
동두천시	24	3.1	3	3	1	0.3	28	2.2
가평군	7	0.9	1	1	2	0.5	10	0.8
연천군	8	1.0	-	-	-	-	8	0.6
기타 (타 지역)	21	2.7	1	1	11	2.9	33	2.6
파악안됨	-	-	13	13	127	33.0	140	11.2
계	768	100	100	100	385	100	1253	100

2. 신고접수 방법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 1644-8295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번호로 신고하는 전화신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 신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 문자, 팩스, 우편의 방법과 상담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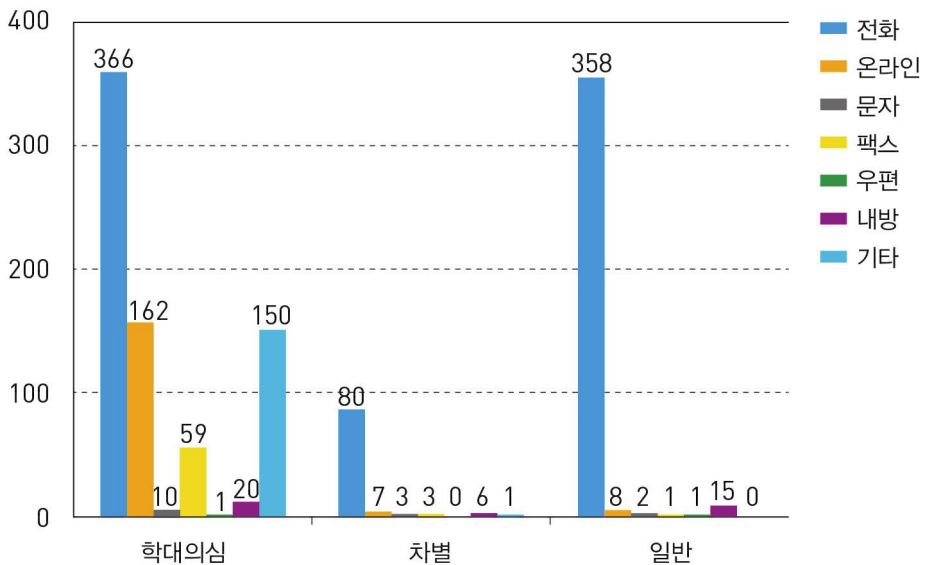
전화를 통한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지며, 이는 전체 신고의 64.2%인 804건이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신고가 177건(14.1%), 기타가 151건(12.1%), 팩스 신고가 63건(5.0%), 내방 신고가 41건(3.3%) 순으로 신고·접수되었다. 기타 접수방법은 사례지원과정에서 상담원이 추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외부회의 등에서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 언론에 보도되어 접수하는 사건 등이 해당된다.

[표 2-4] 신고접수 방법 현황

(단위: 건)

구분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기타	계
학대 의심	366	162	10	59	1	20	150	768
차별	80	7	3	3	-	6	1	100
일반	358	8	2	1	1	15	-	385
계	804 (64.2)	177 (14.1)	15 (1.2)	63 (5.0)	2 (0.2)	41 (3.3)	151 (12.1)	1,253 (100)

[그래프 2-4] 신고접수 방법 현황



3. 신고접수 경로

신고접수 경로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을 말하며,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가 있다. 인지만 언론보도 등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방법이다.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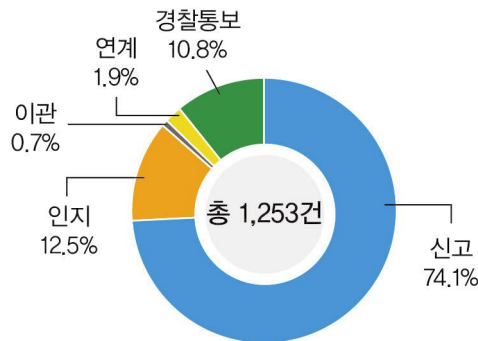
신고접수 경로를 보면 신고가 929건(74.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인지 156건(12.5%), 경찰통보 135건(10.8%), 연계 24건(1.9%), 이관 9건(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신고접수 경로 현황

(단위: 건, %)

구분	신고	인지	연계	이관	경찰통보	계
학대 의심	454	150	21	9	134	768
차별	99	1	-	-	-	100
일반	376	5	3	-	1	385
계	929(74.1)	156(12.5)	24(1.9)	9(0.7)	135(10.8)	1,253(100)

[그래프 2-5] 신고접수 경로 현황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분석

1. 신고접수
2. 신고자 유형
3. 학대조사
4. 사례판정
5. 상담 및 지원
6. 사례종결
7. 모니터링

1. 신고접수

[표 3-1]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신고 건수
계	768
경기 남부	450
경기 북부	318

2. 신고자 유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1항). 또한 특정 직종에 한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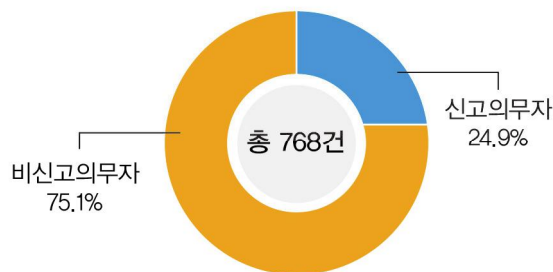
2023년 학대의심사례 768건 중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신고의무자)이 신고한 경우는 191건(24.9%),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하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577건(75.1%)이었다.

[표 3-2] 신고자 유형

(단위: 건)

구분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경기 남부	129	321	450
경기 북부	62	256	318
계	191	577	768

[그래프 3-1] 신고자 유형



1)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의무자는 직무 특성상 피해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학대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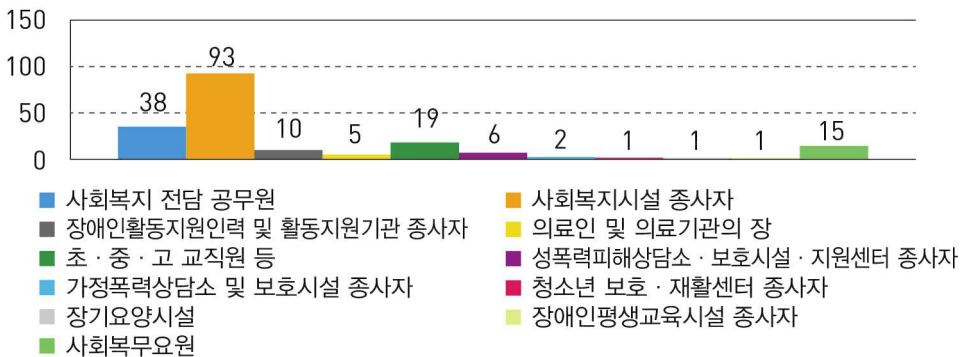
2020년부터는 기관종사자를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와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로 나누어 집계하였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한 직군으로 나누었고,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기타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로 나누었다.

신고의무자가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을 돌보는 직무 특성이 있는 만큼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행위 처벌과 이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의료인 등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 보호시설의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 활동지원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장기요양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 의료기사 ☑ 응급구조사 ☑ 구급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 학교의 교사 ☑ 유치원 ☑ 학원강사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 성매매피해 ☑ 가정폭력 ☑ 한부모 ☑ 청소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의심 신고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93건(48.7%)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8건(19.9%), 초 · 중 · 고 교직원 19건(9.9%), 사회복지무원 15건(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3-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표 3-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신고의무자	계	남부	북부	비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8	18	20	19.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3	68	25	48.7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0	3	7	5.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5	5	-	2.6
의료기사	-	-	-	-
응급구조사	-	-	-	-
구급대의 대원	-	-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	-	-	-
보육 교직원	-	-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	-	-
초·중·고 교직원 등	19	14	5	9.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지원센터 종사자	6	4	2	3.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	-	2	1.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	-	-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1	-	0.5
장기요양시설	1	1	-	0.5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	-	-	-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
장기요양인정신청조사 담당자	-	-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1	-	1	0.5
사회복무요원	15	15	-	7.9
계	191	129	6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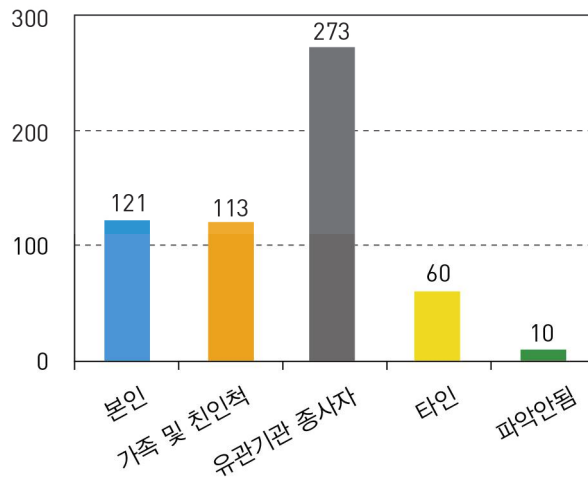
2) 비신고의무자 유형

비신고의무자는 피해장애인과 관계에 따라 본인, 가족 및 친인척, 유관기관 종사자, 타인, 파악안됨으로 분류한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의심 신고는 유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27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121건(21.0%),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신고는 113건(19.6%), 타인이 신고한 경우는 60건(10.4%), 신고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10건(1.7%)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가 175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 121건(21.0%), 타인 60건(10.4%) 등의 순이었다.

[그래프 3-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표 3-4]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비신고의무자		계	남부	북부	비율
본인		121	68	53	21.0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2	2	-	0.3
	부모	43	41	2	7.5
	자녀	31	7	24	5.4
	형제자매	25	15	10	4.3
	친인척	12	7	5	2.1
	소계	113	72	41	19.6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15	10	5	2.6
	경찰공무원	57	35	22	9.9
	공공기관 종사자	3	3	-	0.5
	교육기관 종사자	4	3	1	0.7
	의료기관 종사자	3	3	-	0.5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75	74	101	30.3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	1	-	0.2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	1	1	0.3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13	8	5	2.3
	소계	273	138	135	47.3
타인		60	37	23	10.4
파악 안됨		10	6	4	1.7
계		577	321	256	100

3. 학대조사

학대조사란 신고 접수된 사례의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말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면담,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증거와 피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 시 피해장애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는 모두 조사해야 하나 이미 경찰이나 유관 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완료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불필요한 때도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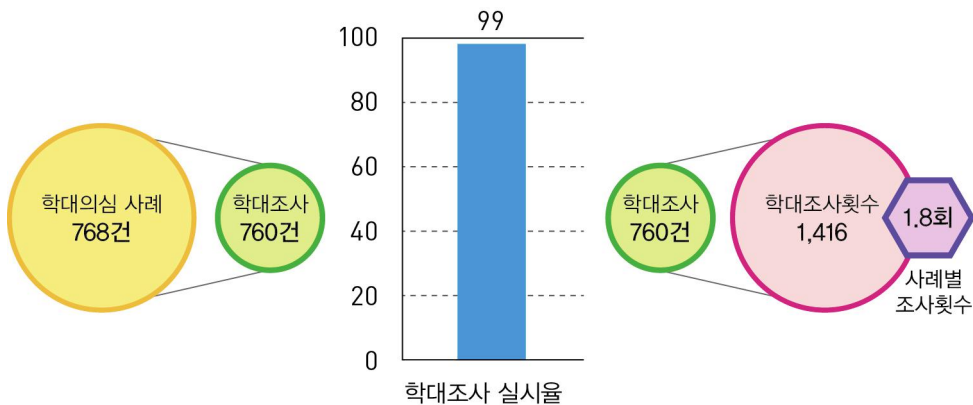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768건 중 760건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실시율은 99.0%로 전년대비(565건 99.3%) 조사건수는 34.5% 증가하였으며, 조사실시율은 0.3% 감소하였다. 학대 조사 횟수는 1,416회로 사례별 평균 1.8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남부 지역의 미실시 사례 8건 중 3건은 타기관으로 이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건은 피해자와 연락불가, 3건은 접수단계에서 경찰수사가 완료되는 등 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3-5]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단위: 건)

구분	학대의심 사례	학대 조사	학대 조사 실시율	학대 조사 횟수	사례별 조사 횟수
계	768	760	99.0	1,416	1.8
경기 남부	450	442	98.2	913	2.0
경기 북부	318	318	100	503	1.6

[그래프 3-4]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4. 사례판정

학대 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사례 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결정 회의인 사례 회의에서 장애인학대 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 회의에서 판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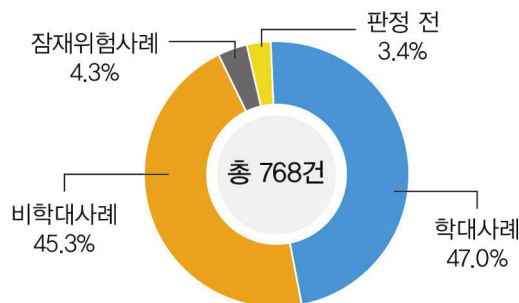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사례는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 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비학대사례는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 판정 전인 사례는 해당 연도에 신고접수 되었으나 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례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사례 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61건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으며, 비학대사례는 348건(45.3%), 잠재위험사례는 33건(4.3%), 판정 전인 사례는 26건(3.4%)이었다. 장애인학대 사례는 전년도(225건) 대비 136건(60.4%) 증가했으며, 잠재위험사례는 전년도(39건) 대비 6건(15.4%) 감소, 비학대 사례는 전년도(286건) 대비 62건(21.7%) 증가하였다.

[표 3-6]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학대 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판정 전	계
계	361(47.0)	348(45.3)	33(4.3)	26(3.4)	768(100)
경기 남부	185	222	17	26	450
경기 북부	176	126	16	-	318

[그래프 3-5] 사례판정 현황



5. 상담 및 지원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지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학대사례인 경우에도 일부 개입하여 당사자를 지원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및 지원은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례 이외에 전년도에 접수되어 종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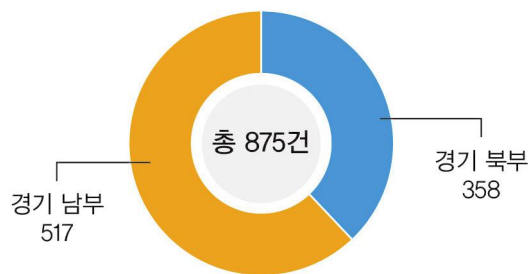
2023년 이전과 2023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에(875건) 대해 7,95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9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3-7] 상담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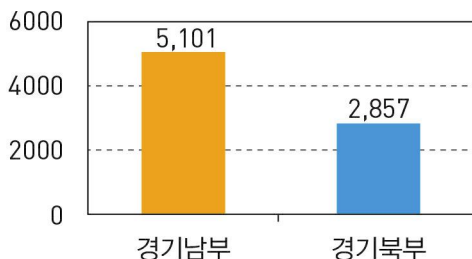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2023년 이전		2023년		계		사례별 상담 및 지원횟수
	학대 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횟수	학대 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횟수	학대 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횟수	
계	107	1,560	768	6,398	875	7,958	9.1
경기 남부	67	1,034	450	4,067	517	5,101	9.9
경기 북부	40	526	318	2,331	358	2,857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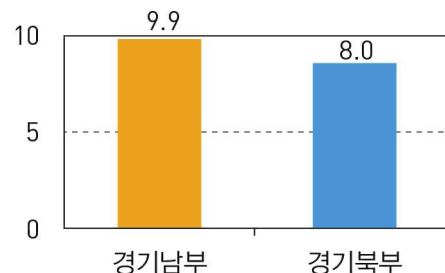
[그래프 3-6] 학대의심사례 현황



[그래프 3-7] 상담 및 지원 횟수



[그래프 3-8]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6. 사례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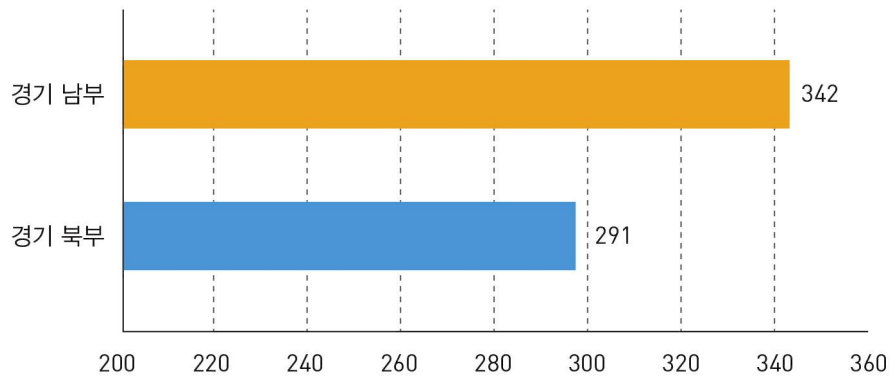
학대의심사례 768건 중 총 633건의 사례가 2023년 12월 31일로 종결되었으며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은 82.4%로 나타났다.

[표 3-8] 종결사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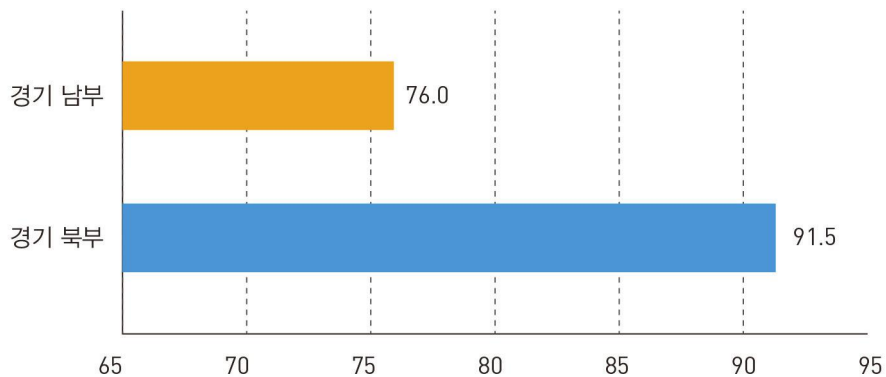
(단위: 건, %)

구 분	학대의심사례	종결사례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계	768	633	82.4
경기 남부	450	342	76.0
경기 북부	318	291	91.5

[그래프 3-9] 종결사례 현황



[그래프 3-10]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현황



7. 모니터링

사례판정을 통해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뒤 일정기간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잠재위험사례와 비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 지원은 실시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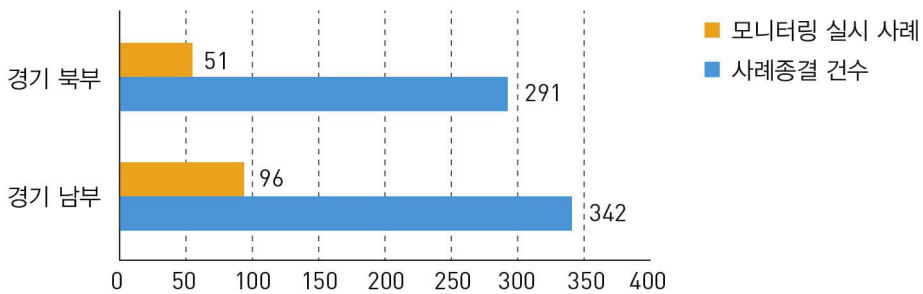
사후 모니터링 기간에는 최소 1회 이상 피해장애인과 직접 소통하여 안전과 재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사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해장애인이 명확하게 더 이상의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사망, 수감 등의 사유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종결된 학대 사례 633건 중 147건(23.2%)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모니터링은 341회 실시하였다.

[표 3-9] 모니터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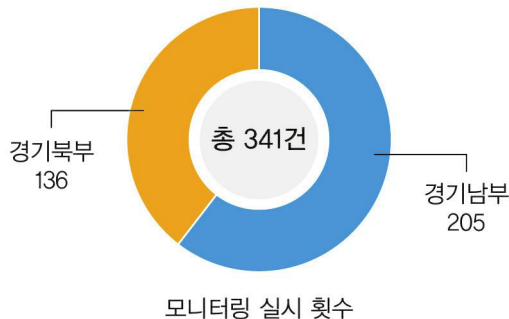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사례종결 건수	모니터링 실시 사례	비율	모니터링 실시 횟수	모니터링 지원 비율
계	633	147	23.2	341	2.3
경기 남부	342	96	28.1	205	2.1
경기 북부	291	51	17.5	136	2.7

[그래프 3-11] 모니터링 실시 현황



[그래프 3-12] 모니터링 지원 현황



IV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 분석

1. 장애인학대 사례 현황
2. 재학대 사례 현황

1. 장애인 학대 사례 현황

1)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장애인학대를 분류하고 있다. 기존 학대유형 외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 이를 '중복 학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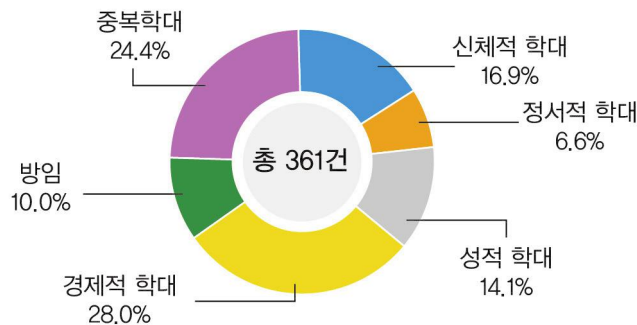
학대로 판정된 사례 건 중 경제적 착취 101건(28.0%)이 가장 많았으며, 중복 학대 88건(24.4%), 신체적 학대 61건(16.9%), 성적 학대 51건(14.1%) 순으로 판정되었다.

[표 4-1]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신체적 학대	45	16	61	16.9
정서적 학대	18	6	24	6.6
성적 학대	35	16	51	14.1
경제적 착취	21	80	101	28.0
유기	-	-	-	-
방임	12	24	36	10.0
중복 학대	54	34	88	24.4
계	185	176	361	100

[그래프 4-1] 장애인학대 유형



2) 피해장애인 성별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61건이며, 피해자 중 여성은 184명(51.0%)으로 남성 177명(49.0%)보다 2.0% 높게 나타났다.

[표 4-2]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계	177(49.0%)	184(51.0%)	361(100%)
경기 남부	89	96	185
경기 북부	88	88	176

[그래프 4-2]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3) 피해장애인 연령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89명(2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7세 이하 70명(19.4%), 30대 65명(18.0%), 40대 44명(12.2%), 50대 42명(11.6%), 60대 23명(6.4%), 18~19세 15명(4.2%), 65세 이상 13명(3.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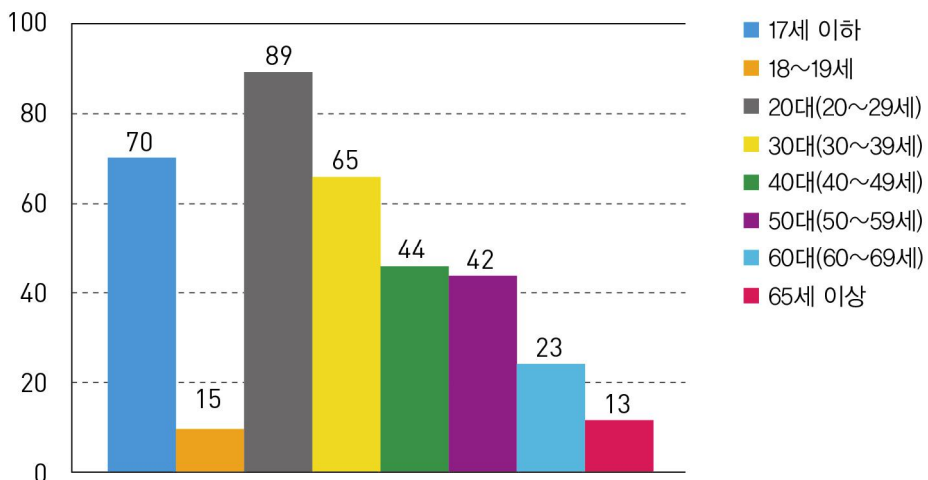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은 통상적으로 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장애인 연령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17세 이하 피해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전체 피해장애인 연령대의 7%가 17세 이하였으나, 2023년 현재 17세 이하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장애인 연령대 기준 가장 급격한 변화폭이다.

[표 4-3]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단위: 명,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17세 이하	51	19	70	19.4
18~19세	8	7	15	4.2
20대(20~29세)	51	38	89	24.7
30대(30~39세)	38	27	65	18.0
40대(40~49세)	13	31	44	12.2
50대(50~59세)	12	30	42	11.6
60대(60~64세)	6	17	23	6.4
65세 이상	6	7	13	3.6
계	185	176	361	100

[그래프 4-3]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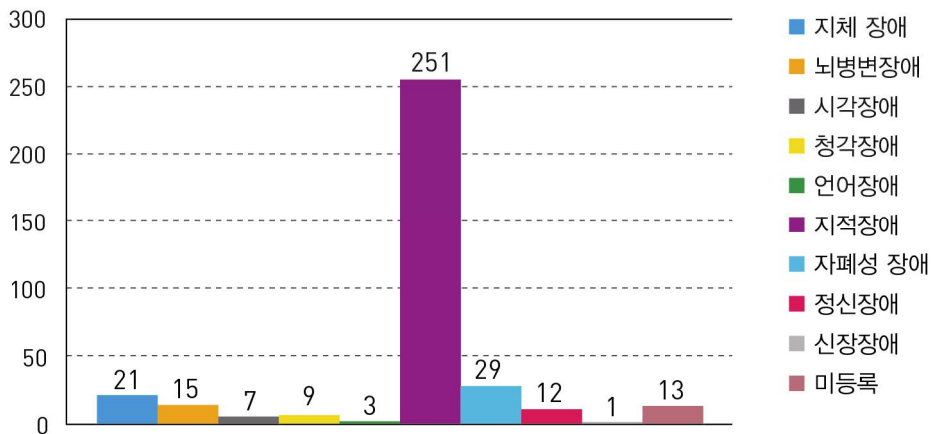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251건(6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 장애 29건(8.0%), 지체장애 21건(5.8%), 뇌병변장애 15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280건(77.5%)이었고,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는 292건(80.8%)으로 나타났다.

[표 4-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건수			비율
	계	남부	북부	
지체 장애	21	13	8	5.8
뇌병변장애	15	9	6	4.2
시각장애	7	2	5	1.9
청각장애	9	5	4	2.5
언어장애	3	2	1	0.8
지적장애	251	124	127	69.5
자폐성 장애	29	17	12	8.0
정신장애	12	2	10	3.3
신장 장애	1	1	-	0.3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장애	-	-	-	-
장루 · 요루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	-
미등록	13	10	3	3.6
계	361	185	176	100

[그래프 4-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편되었다.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4~6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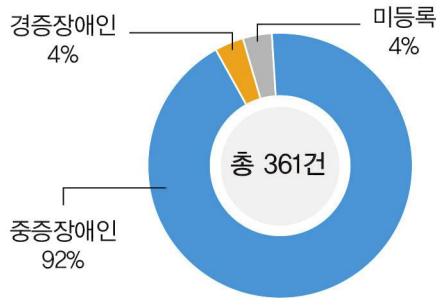
피해장애인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348건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334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14건(3.9%)이었다.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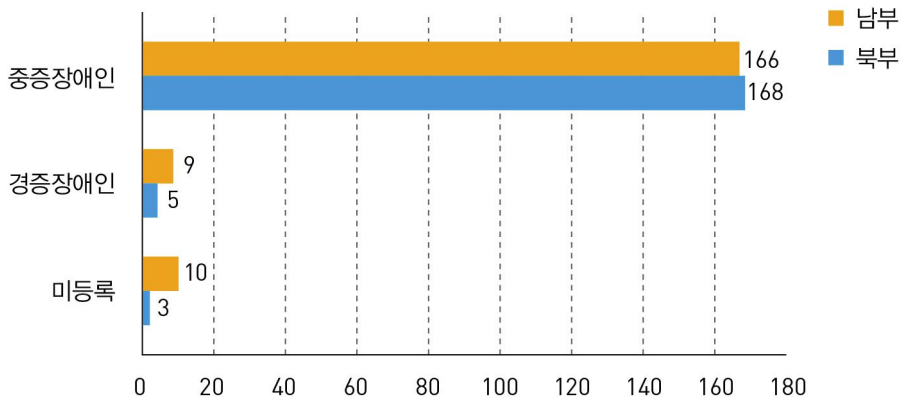
(단위: 건, %)

장애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66	168	334	92.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9	5	14	3.9
미등록	10	3	13	3.6
계	185	176	361	100

[그래프 4-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그래프 4-6]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6)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재가와 시설로 분류된다. 시설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리자가 있는 주거 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혹은 생활시설, 미신고시설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는 모두 재가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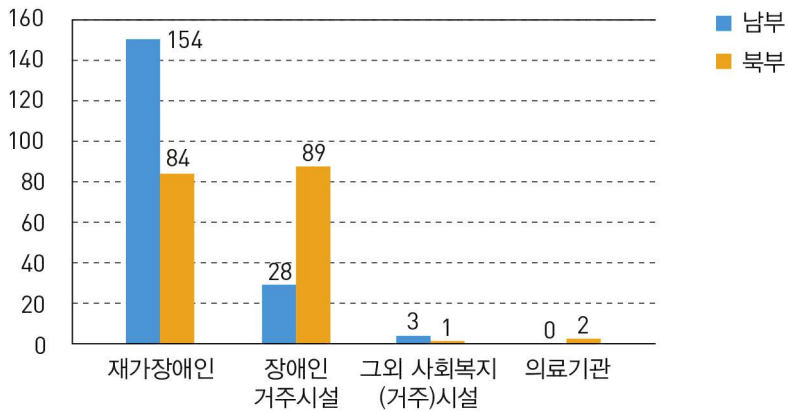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재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238건(65.9%)이었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117건(32.4%), 그 외 사회복지(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4건(1.1%), 의료기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2건(0.6%)이었다.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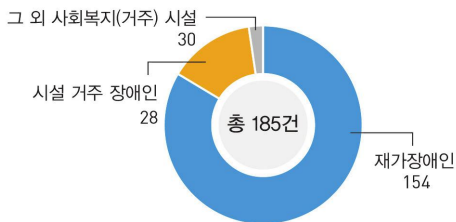
(단위: 건, %)

거주 형태	남부	북부	계	비율
재가 장애인	154	84	238	65.9
장애인거주시설	28	89	117	32.4
그 외 사회복지(거주)시설	3	1	4	1.1
의료기관	-	2	2	0.6
계	185	176	36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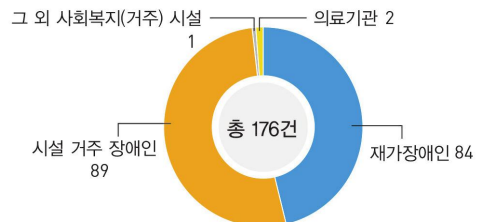
[그래프 4-7] 거주 형태 현황



[그래프 4-8] 거주형태_남부



[그래프 4-9] 거주 형태_북부



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227건(62.9%),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124건(34.3%), 차상위수급자인 경우는 10건(2.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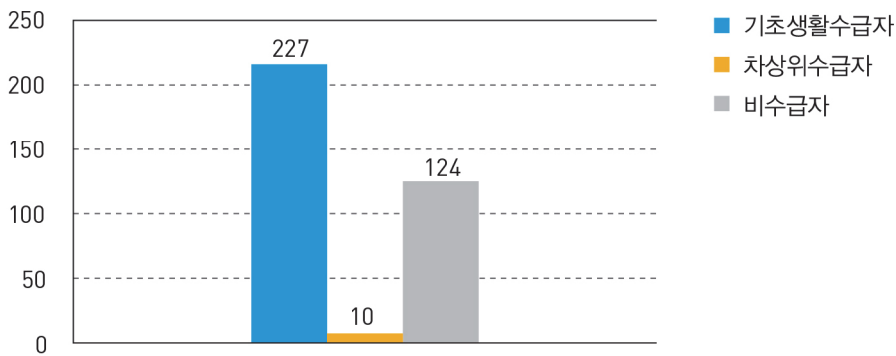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구분	계	남부	북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227	98	129	62.9
차상위계층	10	5	5	2.8
비수급자	124	82	42	34.3
계	361	185	1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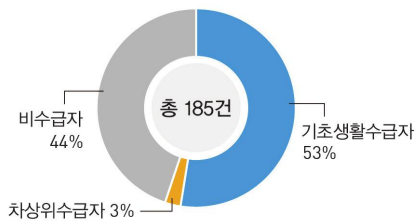
(단위: 건, %)

[그래프 4-10]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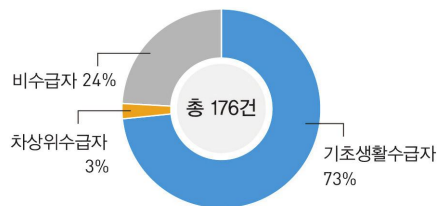
총 361건



[그래프 4-11] 수급자 여부_남부



[그래프 4-12] 수급자 여부_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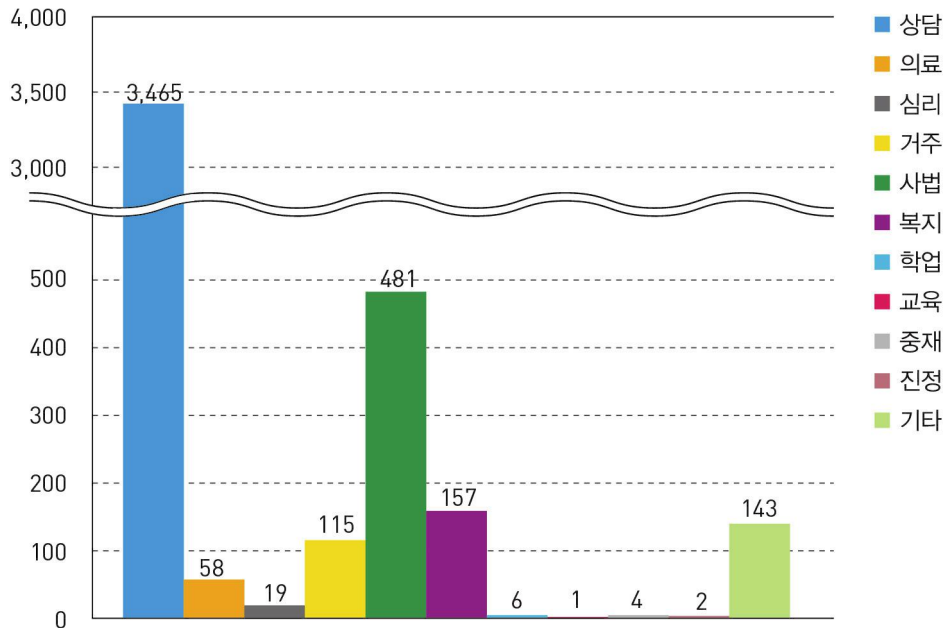
8)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2023년에 학대사례로 판정한 361건에 대해 4,451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봤을 때 상담지원이 3,465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481건(10.8%), 복지지원 157건(3.5%), 기타지원 143건(3.2%), 거주지원 115건(2.6%), 의료지원 58건(1.3%), 심리지원 19건(0.4%), 학업지원 6건(0.1%), 중재 4건(0.1%), 진정 2건(0.0%), 학업지원 6건(0.1%), 중재 4건(0.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8]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구분	상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학업	교육	중재	진정	기타	계
계	3,465 (77.8)	58 (1.3)	19 (0.4)	115 (2.6)	481 (10.8)	157 (3.5)	6 (0.1)	1 (0.0)	4 (0.1)	2 (0.0)	143 (3.2)	4,451 (100)
경기 남부	2,269	32	17	25	182	32	-	-	-	-	98	2,655
경기 북부	1,196	26	2	90	299	125	6	1	4	2	45	1,796

[그래프 4-13]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9) 학대행위자 성별

하나의 사례에 장애인학대의 행위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하나의 사례에 주 행위자 1명에 대한 정보만 통계로 집계하고 있어 본 보고서의 피해장애인 수와 학대행위자 수는 361명으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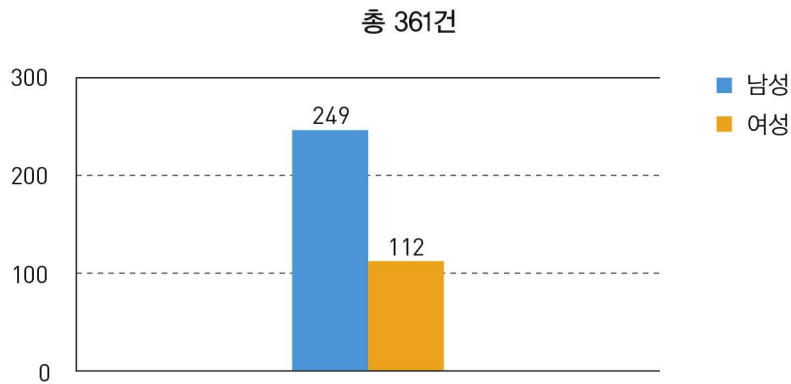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사례 361건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보면 남성이 249명(69.0%), 여성이 112명(31.0%)으로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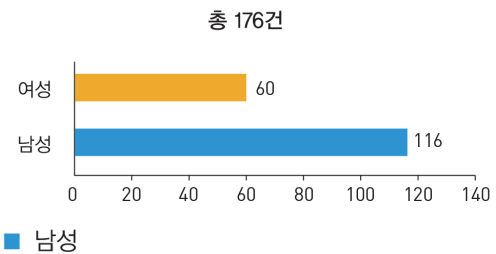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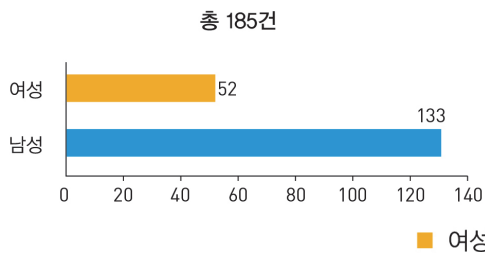
성 별	건 수			비율
	계	남부	북부	
남 성	249	133	116	69.0
여 성	112	52	60	31.0
계	361	185	176	100

[그래프 4-14]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그래프 4-15] 학대행위자 성별_남부

[그래프 4-16] 학대행위자 성별_북부



10) 학대행위자 연령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60대 104명(28.8%), 50대 55명(15.2%), 40대 42명(11.6%)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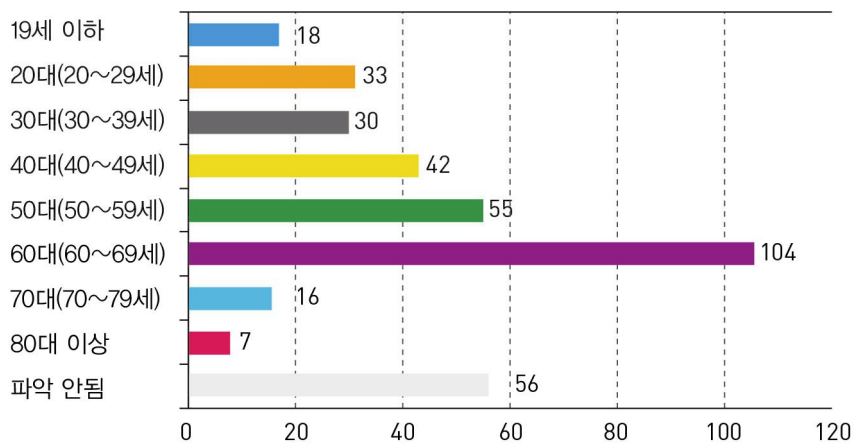
[표 4-10]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단위: 건,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19세 이하	17	1	18	5.0
20대(20~29세)	20	13	33	9.1
30대(30~39세)	14	16	30	8.3
40대(40~49세)	25	17	42	11.6
50대(50~59세)	37	18	55	15.2
60대(60~69세)	12	92	104	28.8
70대(70~79세)	7	9	16	4.4
80대 이상	-	7	7	1.9
파악 안됨	53	3	56	15.5
계	185	176	361	100

학대행위자의 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56건(15.5%)로 피해장애인이 학대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프 4-17]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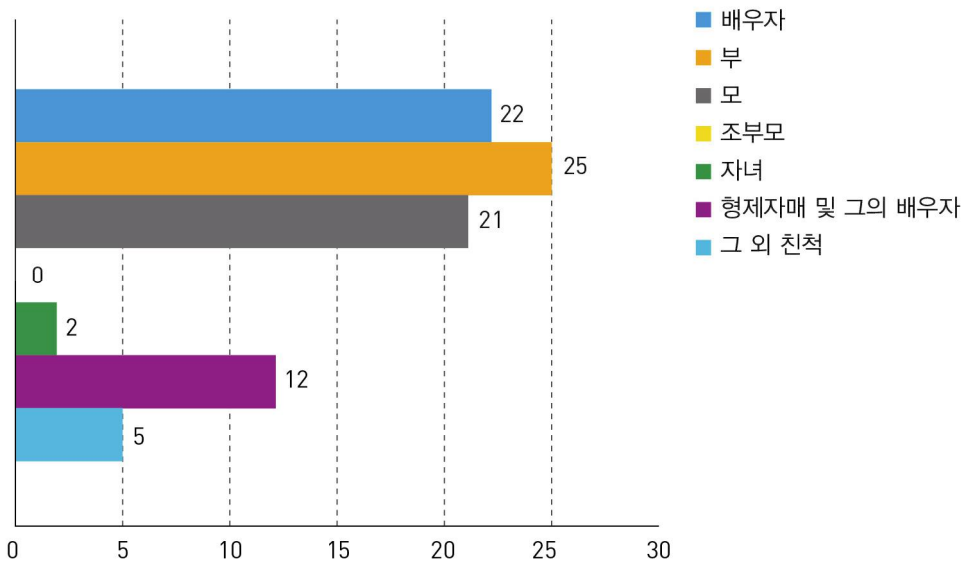


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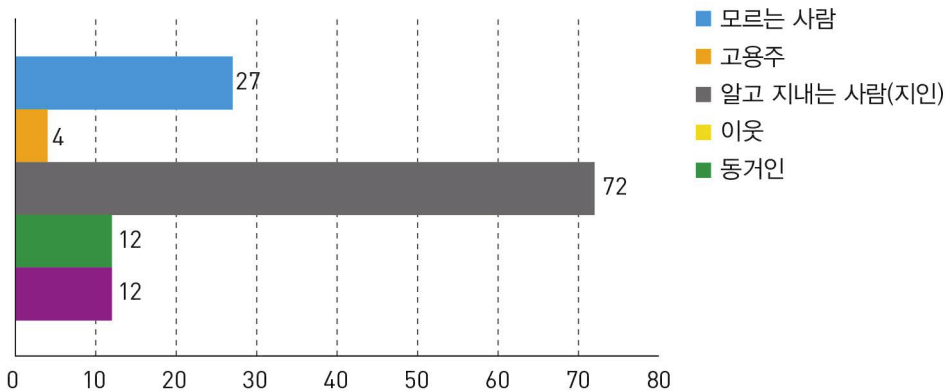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 안됨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 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으로 나뉜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다.

장애인학대사례 361건 중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137건(38.0%)으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가 타인인 경우는 127건(35.2%), 가족 및 친인척은 87건(24.1%),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8건(2.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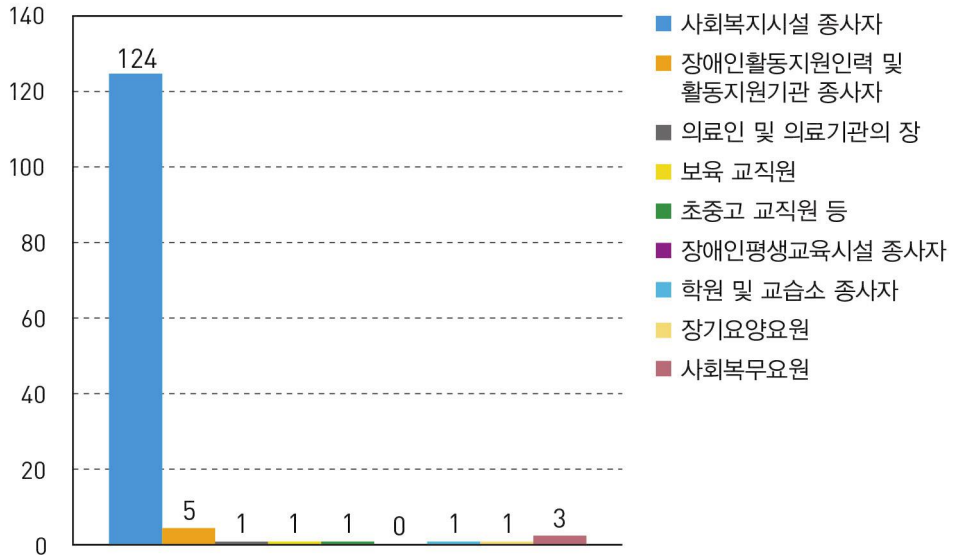
[그래프 4-18]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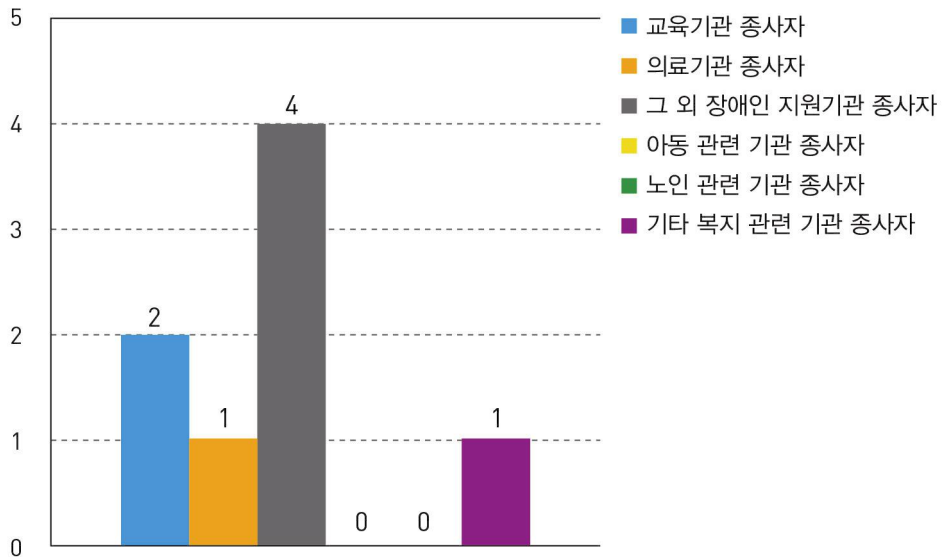
[그래프 4-1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타인



[그래프 4-2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신고의무자



[그래프 4-2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비신고의무자



[표 4-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단위: 건, %)

관계		남부	북부	계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6	6	22	6.1
	부	21	4	25	6.9
	모	16	5	21	5.8
	조부모	-	-	-	-
	자녀	1	1	2	0.6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6	6	12	3.3
	그 외 친척	4	1	5	1.4
	소계	64	23	87	24.1
타인	동거인	11	1	12	3.3
	이웃	9	3	12	3.3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5	27	72	19.9
	고용주	2	2	4	1.1
	모르는 사람	14	13	27	7.5
	소계	81	46	127	35.2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4	100	124	34.3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4	1	5	1.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1	1	0.3
	보육 교직원	1	-	1	0.3
	초·중·고 교직원 등	1	-	1	0.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	1	0.3
	장기요양요원	1	-	1	0.3
	사회복무요원	3	-	3	0.8
소계	35	102	137	38.0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	-	2	0.6
	의료기관 종사자	-	1	1	0.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4	4	1.1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	-	-	-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	-	-	-
	기타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1	-	1	0.3
	소계	3	5	8	2.2
본인	1	-	1	0.3	
파악 안됨	1	-	1	0.3	
계	185	176	361	100	

1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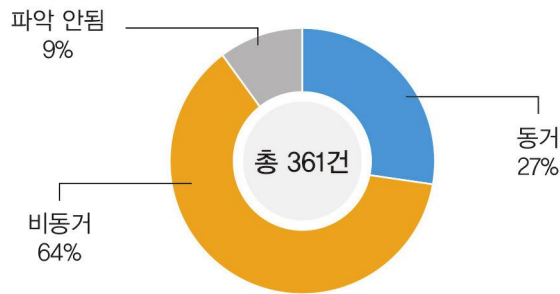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를 보면 장애인학대사례 361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231건(64.0%)이었으며, 동거하는 경우가 96건(26.6%),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34건(9.4%)으로 확인되었다.

[표 4-1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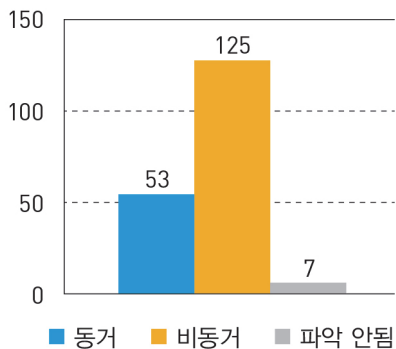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동거	53	43	96	26.6
비동거	125	106	231	64.0
파악 안됨	7	27	34	9.4
계	185	176	361	100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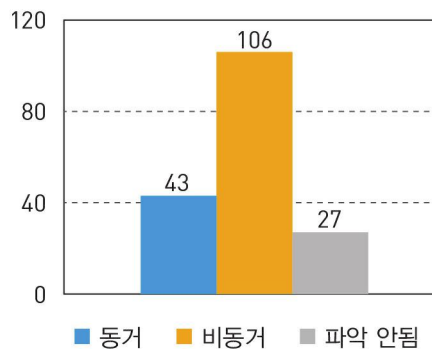
[그래프 4-2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그래프 4-23] 동거 여부_남부



[그래프 4-24] 동거 여부_북부



13)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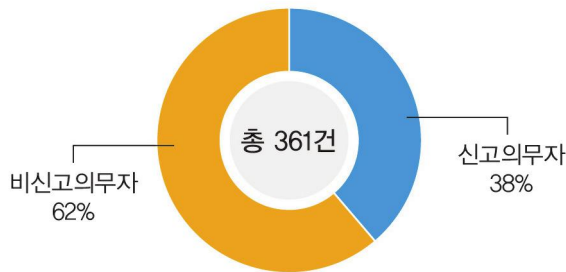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신고의무자 여부에서는 전체 361건 중 137건(38.0%)이 신고의무자이고, 비신고의무자는 224건(62.0%)으로 비신고의무자의 학대 행위 비중이 약 1.6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3]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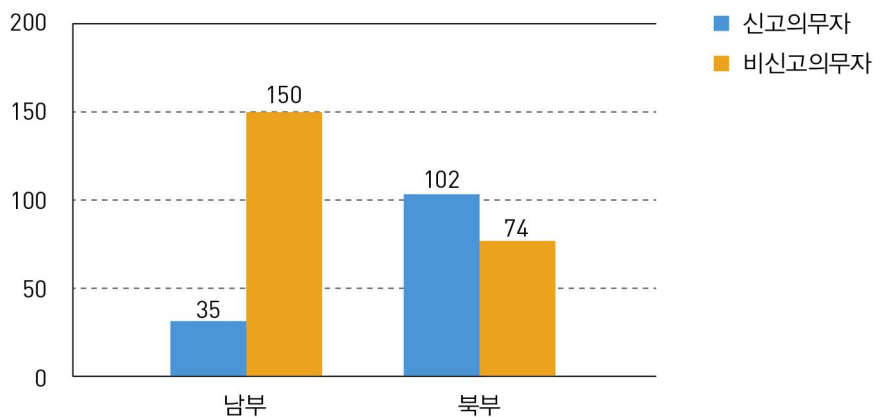
(단위: 건,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신고의무자	35	102	137	38.0
비신고의무자	150	74	224	62.0
계	185	176	361	100

[그래프 4-25]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1



[그래프 4-26]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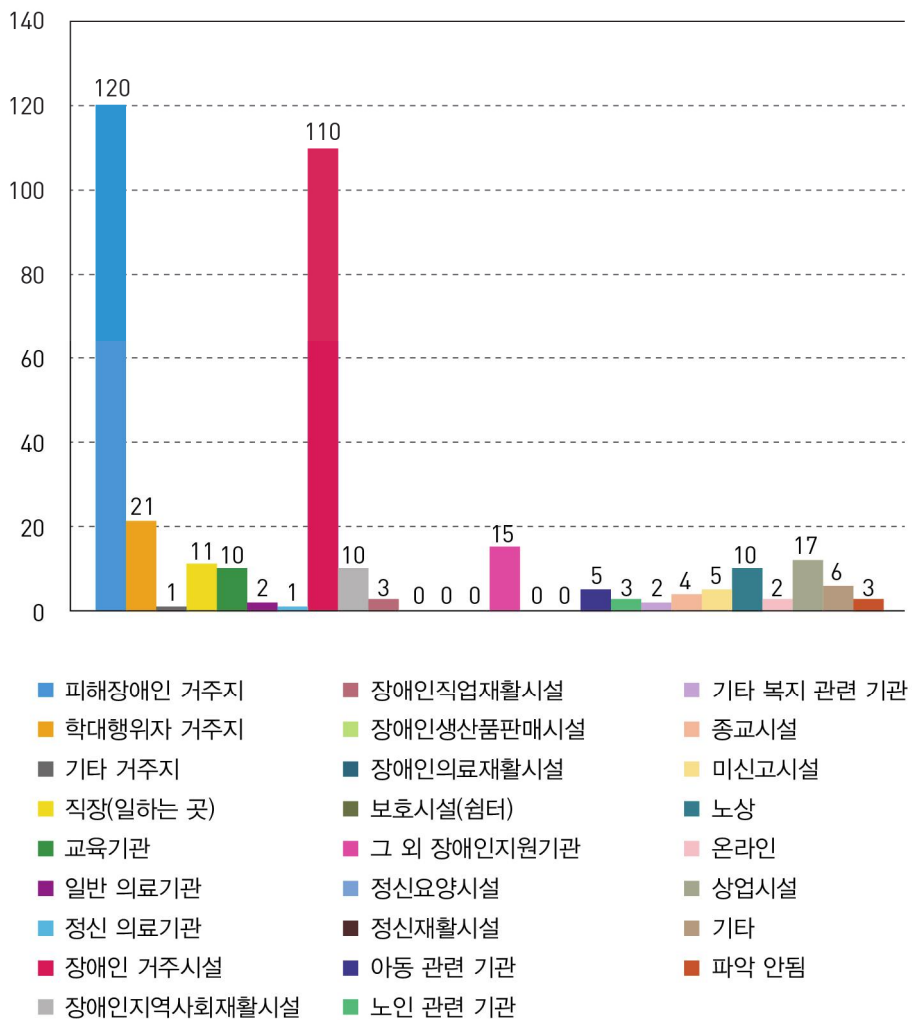


14) 학대 발생 장소

장애인학대 발생 장소는 학대유형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 관련 시설, 종교시설, 미신고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거주지가 12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 110건(30.5%),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21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4-27] 학대 발생 장소



[표 4-14] 학대 발생 장소 현황

(단위: 건, %)

발생 장소		남부	북부	계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78	42	120	33.2
학대행위자 거주지		17	4	21	5.8
기타 거주지		1	-	1	0.3
직장(일하는 곳)		4	7	11	3.0
교육기관		9	1	10	2.8
일반 의료기관		1	1	2	0.6
정신 의료기관		-	1	1	0.3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17	93	110	30.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	4	10	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	-	3	0.8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
보호시설(쉼터)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13	2	15	4.2
정신요양시설		-	-	-	-
정신재활시설		-	-	-	-
아동 관련 기관		5	-	5	1.4
노인 관련 기관		1	2	3	0.8
기타 복지 관련 기관		1	1	2	0.6
종교시설		4	-	4	1.1
미신고시설		-	5	5	1.4
노상		4	6	10	2.8
온라인		1	1	2	0.6
상업시설		11	6	17	4.7
기타		6	-	6	1.7
파악 안됨		3	-	3	0.8
계		185	176	361	100

2. 재학대 사례 현황

1) 재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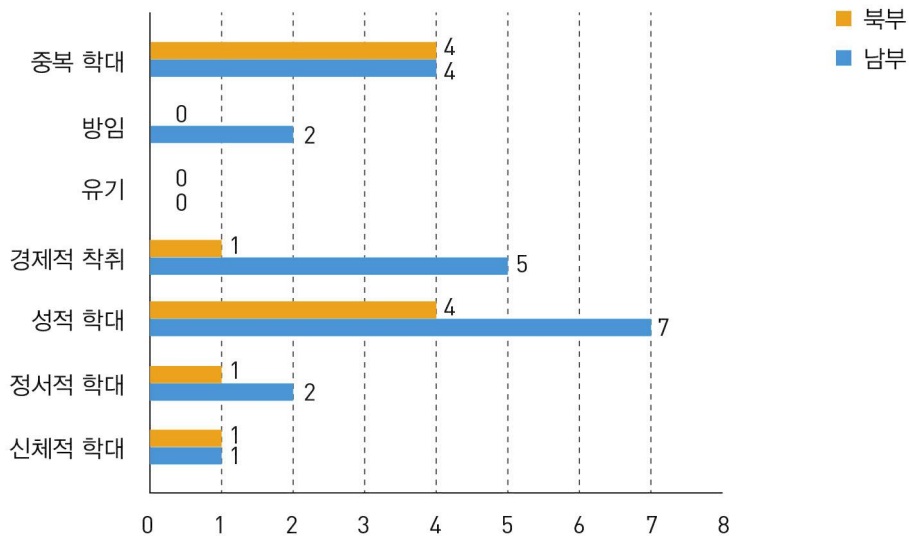
재학대의 학대 유형은 성적 학대 11건(34.4%), 중복 학대 8건(25.0%), 경제적 착취 6건(18.8%), 정서적 학대 3건(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재학대 유형 분석

(단위: 건, %)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신체적 학대	1	1	2	6.3
정서적 학대	2	1	3	9.4
성적 학대	7	4	11	34.4
경제적 착취	5	1	6	18.8
유기	-	-	-	-
방임	2	-	2	6.3
중복 학대	4	4	8	25.0
계	21	11	32	100

[그래프 4-28] 재학대 유형 분석



2) 재학대의 피해자 현황

① 재학대 피해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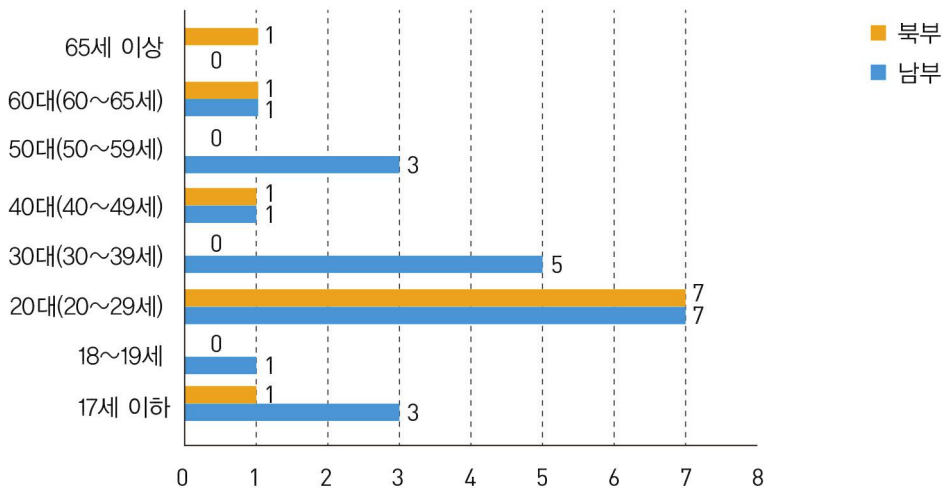
재학대 피해자 연령은 20대 14건(43.8%), 30대 5건(15.6%), 17세 이하 4건(12.5%), 50대 3건(9.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16] 재학대 피해자 연령

(단위: 명,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17세 이하	3	1	4	12.5
18~19세	1	-	1	3.1
20대(20~29세)	7	7	14	43.8
30대(30~39세)	5	-	5	15.6
40대(40~49세)	1	1	2	6.3
50대(50~59세)	3	-	3	9.4
60대(60~65세)	1	1	2	6.3
65세 이상	-	1	1	3.1
계	21	11	32	100

[그래프 4-29] 재학대 피해자 연령



② 재학대 피해자 장애 유형

재학대 피해자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25건(78.1%), 뇌병변장애 3건(9.4%), 지체 장애 2건(6.3%), 자폐성 장애 1건(3.1%), 청각장애 1건(3.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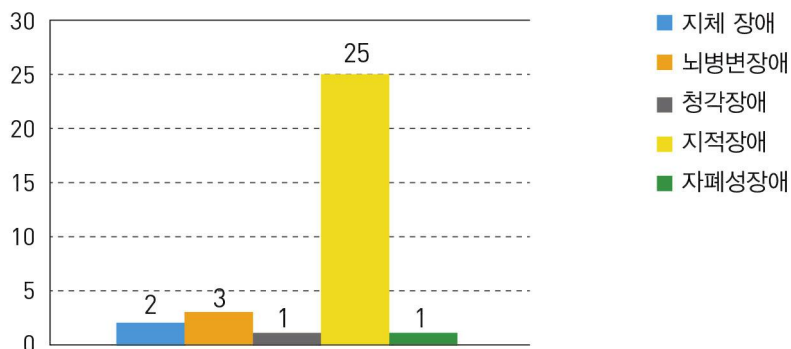
특히, 피해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26건(81.2%)이었다.

[표 4-17] 재학대 피해자 장애 유형

(단위: 건, %)

장애 유형	건수			비율
	계	남부	북부	
지체 장애	2	1	1	6.3
뇌병변장애	3	3	-	9.4
시각장애	-	-	-	-
청각장애	1	-	1	3.1
언어장애	-	-	-	-
지적장애	25	17	8	78.1
자폐성 장애	1	-	1	3.1
정신장애	-	-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장애	-	-	-	-
장루 · 요루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	-
미등록	-	-	-	-
계	32	21	11	100

[그래프 4-30] 재학대 피해자 장애 유형



③ 재학대 피해자 장애 정도

재학대 피해자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1건(96.9%),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건(3.1%)로 나타났다.

[표 4-18] 재학대 피해자 장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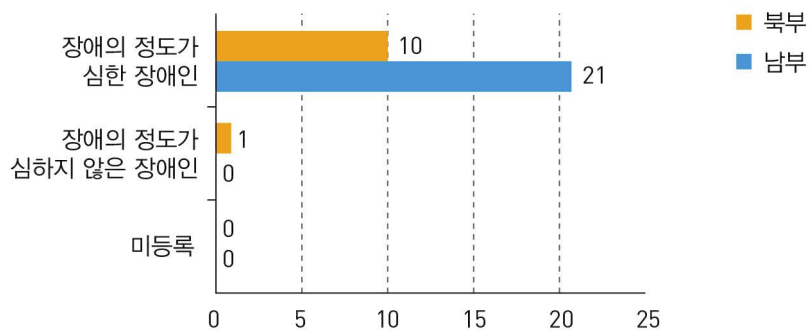
(단위: 건, %)

장애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1	10	31	96.9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1	3.1
미등록	-	-	-	-
계	21	11	32	100

[그래프 4-31]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그래프 4-32]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3) 재학대 행위자 현황

① 재학대 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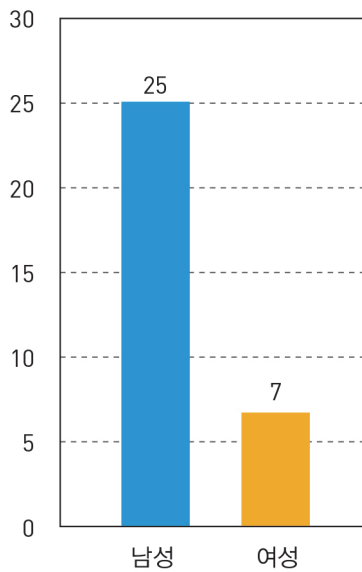
재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성 25건(78.1%), 여성 7건(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재학대 행위자 성별

(단위: 건, %)

성 별	건 수			비율
	계	남부	북부	
남 성	25	15	10	78.1
여 성	7	6	1	21.9
계	32	21	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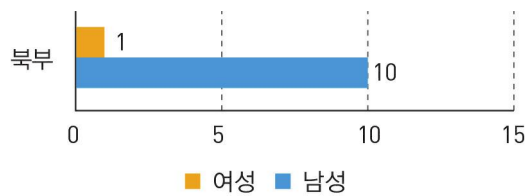
[그래프 4-33] 재학대 행위자 성별



[그래프 4-34] 재학대 행위자 성별_남부



[그래프 4-35] 재학대 행위자 성별_북부



② 재학대 행위자 연령

재학대 행위자 연령은 50대 7건(21.9%)가 가장 많았고, 40대 6건(18.8%), 20대 4건(12.5%), 60대 3건(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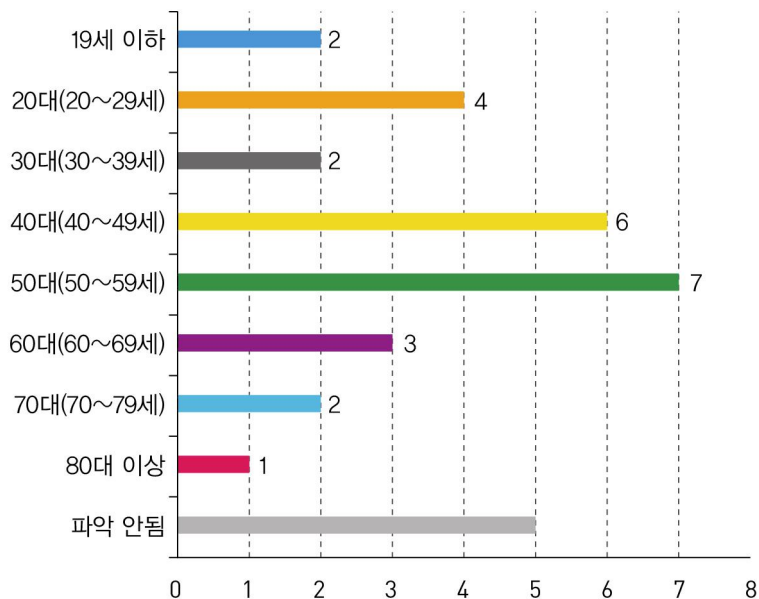
[표 4-20] 재학대 행위자 연령

(단위: 건,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19세 이하	2	-	2	6.3
20대(20~29세)	2	2	4	12.5
30대(30~39세)	1	1	2	6.3
40대(40~49세)	5	1	6	18.8
50대(50~59세)	4	3	7	21.9
60대(60~69세)	2	1	3	9.4
70대(70~79세)	-	2	2	6.3
80대 이상	-	1	1	3.1
파악 안됨	5	-	5	15.6
계	21	11	32	100

학대행위자의 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5건(15.6%)로 피해장애인이 학대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프 4-36] 재학대 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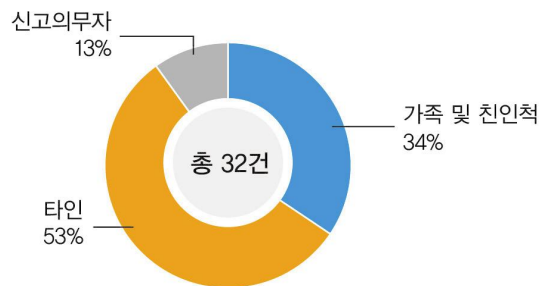


③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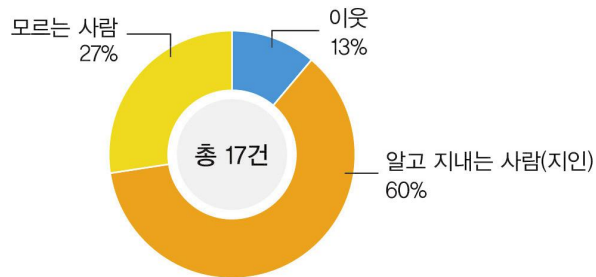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안됨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은 배우자, 부, 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으로 나뉜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다. 재학대는 피해장애인이 학대 피해를 다시 겪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했던 장애인학대의 행위자와 재학대 행위자는 동일인물이 아닐 수 있다.

장애인 재학대사례 32건 중 타인에 의한 재학대가 17건(5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는 11건(34.4%),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인 경우는 4건(12.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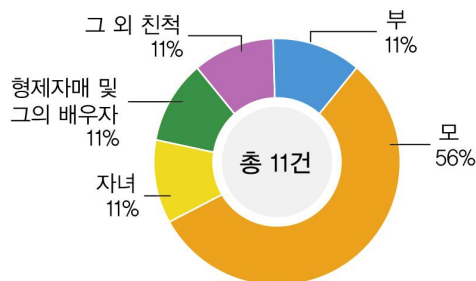
[그래프 4-37]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그래프 4-38]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타인



[그래프 4-39]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표 4-21]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관계		남부	복부	계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2	-	2	6.3
	부	1	-	1	3.1
	모	4	1	5	15.6
	조부모	-	-	-	-
	자녀	1	-	1	3.1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1	3.1
	그 외 친척	1	-	1	3.1
	소계	10	1	11	34.3
타인	동거인	2	-	2	6.3
	이웃	1	1	2	6.3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5	4	9	28.1
	고용주	-	-	-	-
	모르는 사람	1	3	4	12.5
	소계	9	8	17	53.2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	2	4	12.5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보육 교직원	-	-	-	-
	초·중·고 교직원 등	-	-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
	장기요양요원	-	-	-	-
	사회복무요원	-	-	-	-
소계	2	2	4	12.5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	-	-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	-	-	-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	-	-	-
	기타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	-	-	-
소계	-	-	-	-	
본인	-	-	-	-	
파악 안됨	-	-	-	-	
계	21	11	32	100	

④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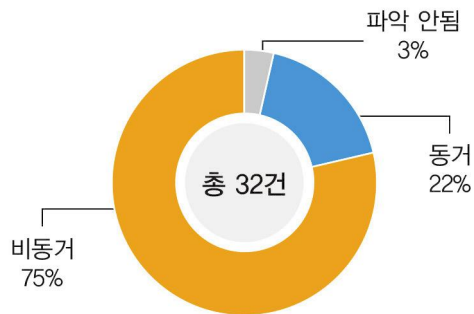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를 보면 장애인 재학대사례 32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24건(75.0%)이었으며, 동거하는 경우가 7건(21.9%),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1건(3.1%)으로 확인되었다.

[표 4-22]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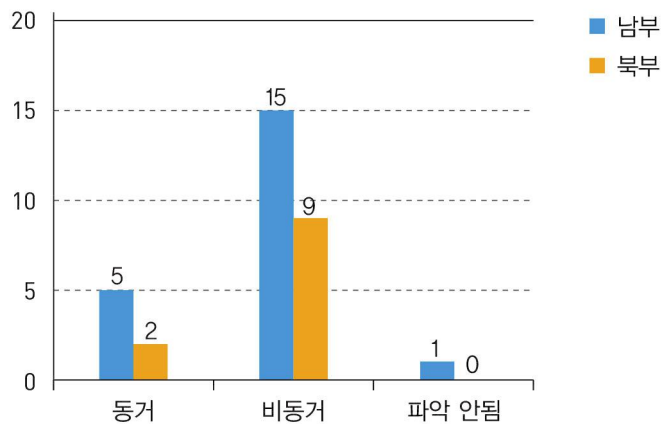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동거	5	2	7	21.9
비동거	15	9	24	75.0
파악 안됨	1	-	1	3.1
계	21	11	32	100

[그래프 4-40]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여부



[그래프 4-41]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여부



⑤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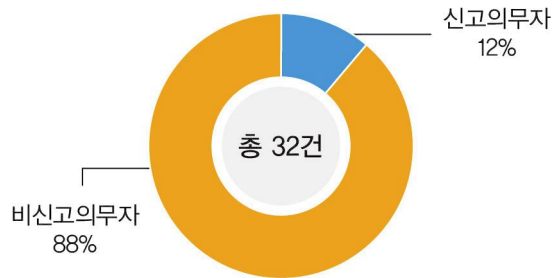
재학대 행위자의 신고의무자 여부에서는 전체 32건 중 신고의무자는 4건(12.5%)이고, 비신고의무자가 28건(87.5%)으로 비신고의무자의 학대 행위 비중이 7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3]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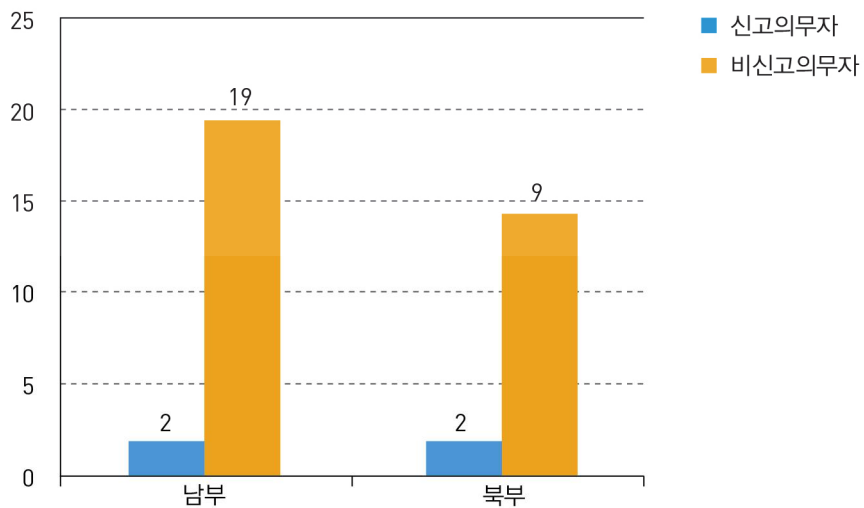
(단위: 건,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신고의무자	2	2	4	12.5
비신고의무자	19	9	28	87.5
계	21	11	32	100

[그래프 4-42]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그래프 4-43]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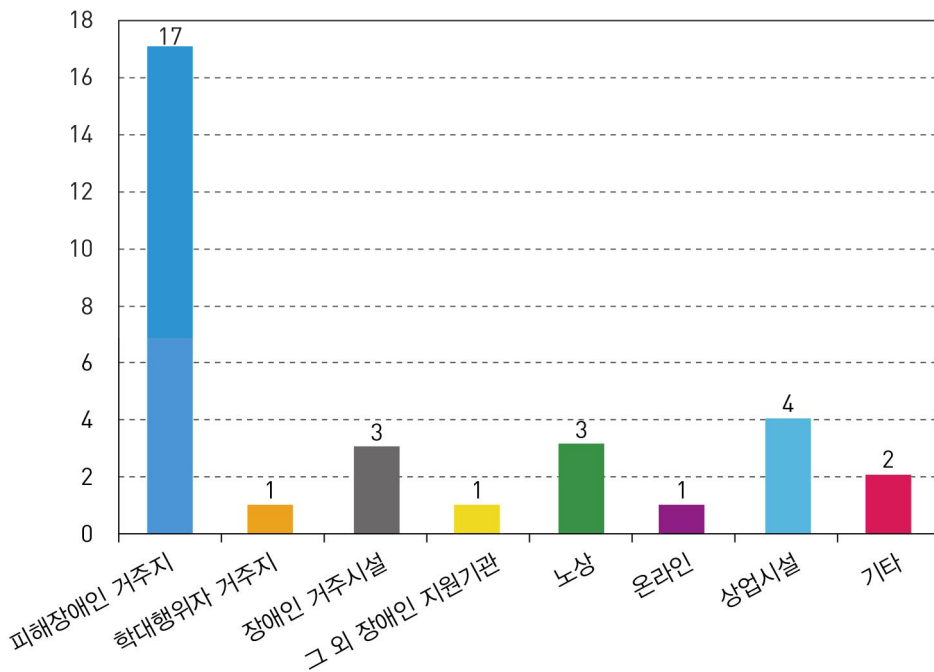


4) 재학대 발생 장소

장애인 재학대 발생 장소는 학대유형과 재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 관련 시설, 종교시설, 미신고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17건(53.1%)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시설 4건(12.5%), 장애인 거주시설 3건(9.4%), 노상 3건(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4-44] 재학대 발생 장소



[표 4-24] 재학대 발생 장소

(단위: 건, %)

발생 장소		남부	북부	계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12	5	17	53.1
학대행위자 거주지		1	-	1	3.1
기타 거주지		-	-	-	-
직장(일하는 곳)		-	-	-	-
교육기관		-	-	-	-
일반 의료기관		-	-	-	-
정신 의료기관		-	-	-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1	2	3	9.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
보호시설(쉼터)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1	-	1	3.1
정신요양시설		-	-	-	-
정신재활시설		-	-	-	-
아동 관련 기관		-	-	-	-
노인 관련 기관		-	-	-	-
기타 복지 관련 기관		-	-	-	-
종교시설		-	-	-	-
미신고시설		-	-	-	-
노상		1	2	3	9.4
온라인		1	-	1	3.1
상업시설		2	2	4	12.5
기타		2	-	2	6.3
파악 안됨		-	-	-	-
계		21	11	32	100

5) 시·군별 재학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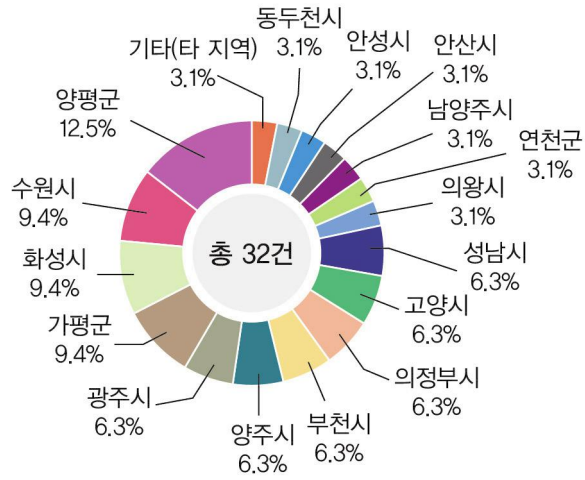
시·군별 재학대 현황은 양평군 4건(12.5%)이 가장 많았고 수원시, 화성시, 가평군이 각 3건(9.4%)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표 4-25] 시·군별 재학대 현황

(단위: 건, %)

시·군	학대	비율
수원시	3	9.4
성남시	2	6.3
안양시	-	-
부천시	2	6.3
광명시	-	-
평택시	-	-
안산시	1	3.1
과천시	-	-
오산시	-	-
시흥시	-	-
군포시	-	-
의왕시	1	3.1
하남시	-	-
용인시	-	-
이천시	-	-
안성시	1	3.1
김포시	-	-
화성시	3	9.4
광주시	2	6.3
여주시	-	-
양평군	4	12.5
고양시	2	6.3
남양주시	1	3.1
파주시	-	-
의정부시	2	6.3
양주시	2	6.3
구리시	-	-
포천시	-	-
동두천시	1	3.1
가평군	3	9.4
연천군	1	3.1
기타(타 지역)	1	3.1
계	32	100

[그래프 4-45] 학대 발생 장소





학대피해 장애(아동)인 쉼터 현황

1. 피해장애인쉼터
2. 피해장애아동쉼터

1. 피해장애인쉼터

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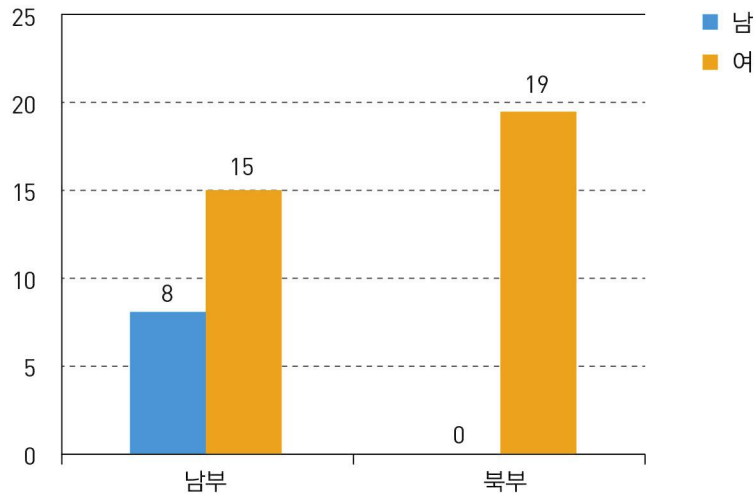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인원은 총 42명이었으며, 그 중 23명(54.8%)이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이하 '남부쉼터')을, 19명(45.2%)이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이하 '북부쉼터')를 이용하였다.

[표 5-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입소인원		합계
	남	여	남	여	
남부	4	4	8	15	23
북부	4	4	—	19	19
계	8	8	8	34	42

[그래프 5-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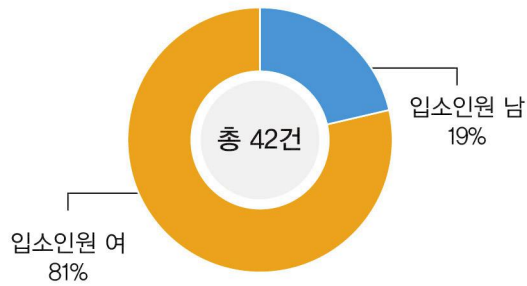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42명 중 남성은 8명(19.0%), 여성은 34명(81.0%)이었다.

[표 5-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성별 현황

(단위: 건, %)

성 별	건 수			비율
	계	남부	북부	
남 성	8	8	-	19.0
여 성	34	15	19	81.0
계	42	23	19	100

[그래프 5-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성별 현황



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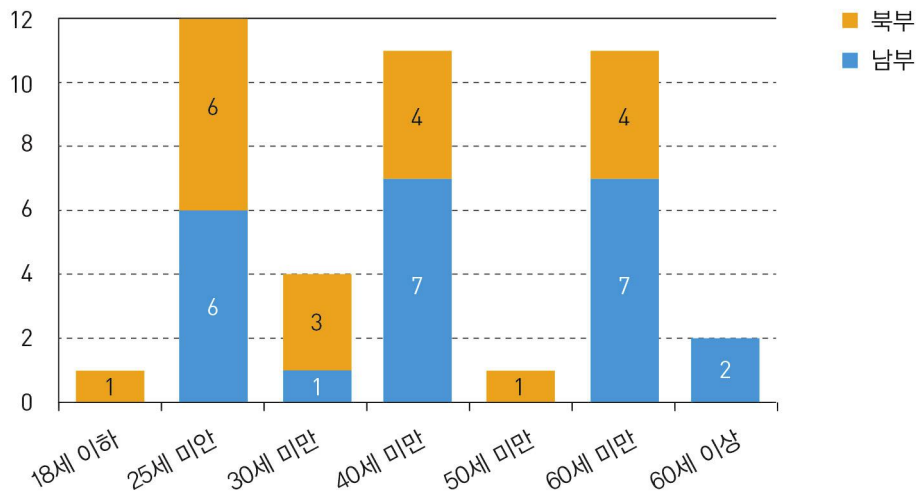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42명 중 18세 초과 25세 미만인 12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1명(26.2%),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11명(26.2%),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4명(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18세 이하	25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합계
남부	-	6	1	7	-	7	2	23
북부	1	6	3	4	1	4	-	19
계	1	12	4	11	1	11	2	42

[그래프 5-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4)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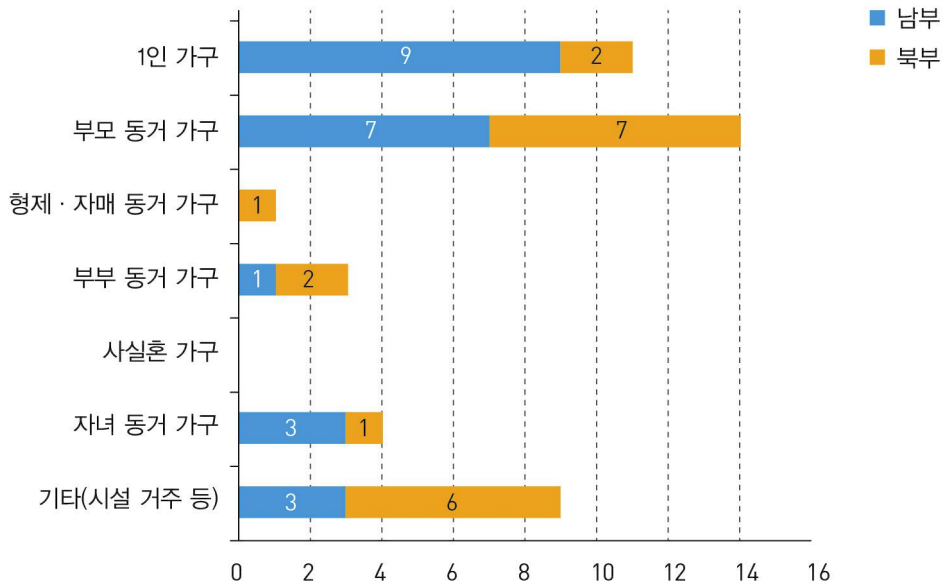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의 가족구성은 1인 가구, 부모 동거 가구, 형제·자매 동거 가구, 부부 동거 가구, 사실혼 가구, 자녀 동거 가구, 기타(시설 거주 등)로 분류하였다.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42명 중 부모 동거 가구가 14건(33.3%)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 11건(26.2%), 기타 9건(21.4%), 자녀 동거 가구 4건(9.5%), 부부 동거 가구 3건(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남부	북부	계	비율
1인 가구	9	2	11	26.2
부모 동거 가구	7	7	14	33.3
형제·자매 동거 가구	0	1	1	2.4
부부 동거 가구	1	2	3	7.1
사실혼 가구	-	-	-	-
자녀 동거 가구	3	1	4	9.5
기타(시설 거주 등)	3	6	9	21.4
계	23	19	42	100

[그래프 5-4]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5)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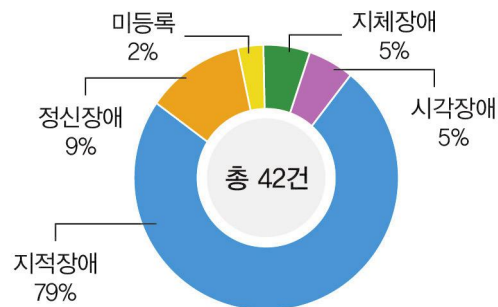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42명 중 지적장애가 전체 장애유형 중 33명(7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 4명(9.5%), 지체장애 2명(4.8%), 시각장애 2명(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미등록 장애인은 쉼터 입소 후 장애진단 및 장애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표 5-5]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건수			비율
	계	남부	북부	
지체 장애	2	2	-	4.8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2	1	1	4.8
청각장애	-	-	-	-
언어장애	-	-	-	-
지적장애	33	17	16	78.6
자폐성 장애	-	-	-	-
정신장애	4	3	1	9.5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장애	-	-	-	-
장루·요루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	-
미등록	1	-	1	2.3
계	42	23	19	100

[그래프 5-5]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6)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편되었다.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4~6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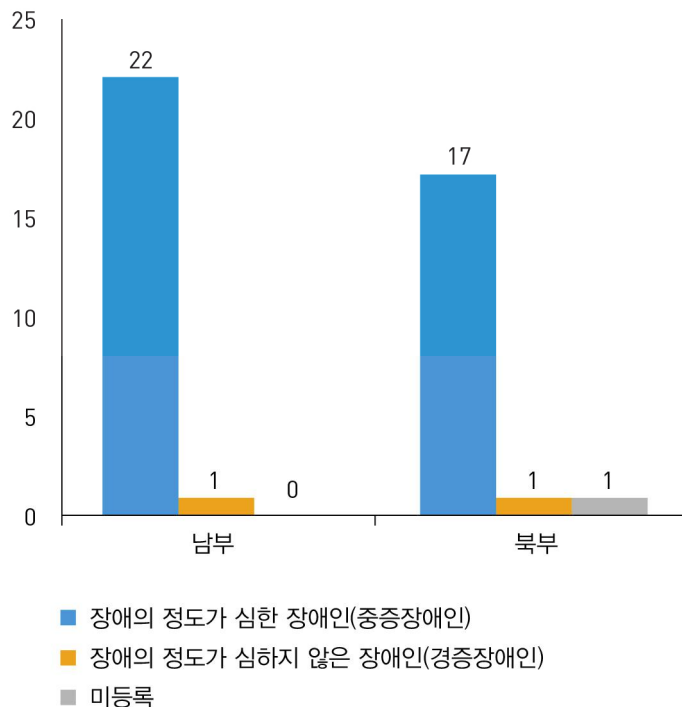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42명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39명(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이 2명(4.8%), 미등록 장애인이 1명(2.3%)이었다.

[표 5-6]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2	17	39	92.9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1	2	4.8
미등록	-	1	1	2.3
계	23	19	42	100

[그래프 5-6]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



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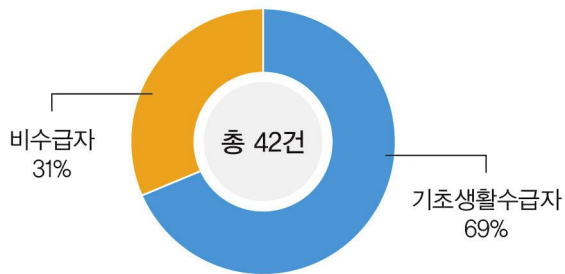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42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29건(69.0%), 비수급자인 경우는 13건 (31.0%)였고 차상위수급자인 경우는 없었다.

[표 5-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남부	북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29	14	15	69.0
차상위수급자	-	-	-	-
비수급자	13	9	4	31.0
계	42	23	19	100

[그래프 5-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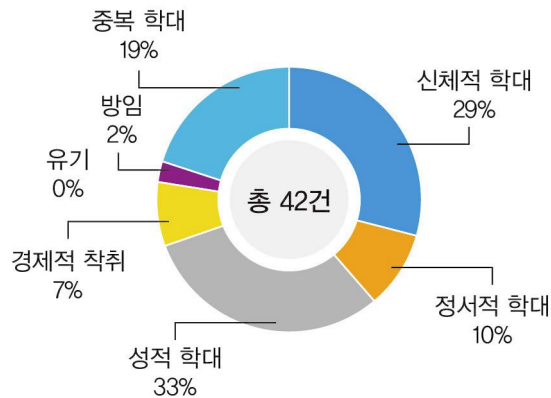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이용자 학대유형을 분류하였다. 두 가지 이상 학대피해가 나타나는 유형을 중복학대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42건 중 성적 학대가 14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12건(28.6%), 중복 학대 8건(19.0%), 정서적 학대 4건(9.5%), 경제적 착취 3건(7.1%), 방임 1건(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신체적 학대	8	4	12	28.6
정서적 학대	-	4	4	9.5
성적 학대	7	7	14	33.3
경제적 착취	3	-	3	7.1
유기	-	-	-	-
방임	1	-	1	2.4
중복 학대	4	4	8	19.0
계	23	19	42	100

[그래프 5-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현황



9)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건강 상태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의 건강 상태는 학대 피해 및 장애로 인해 중복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학대로 인한 상해와 만성질환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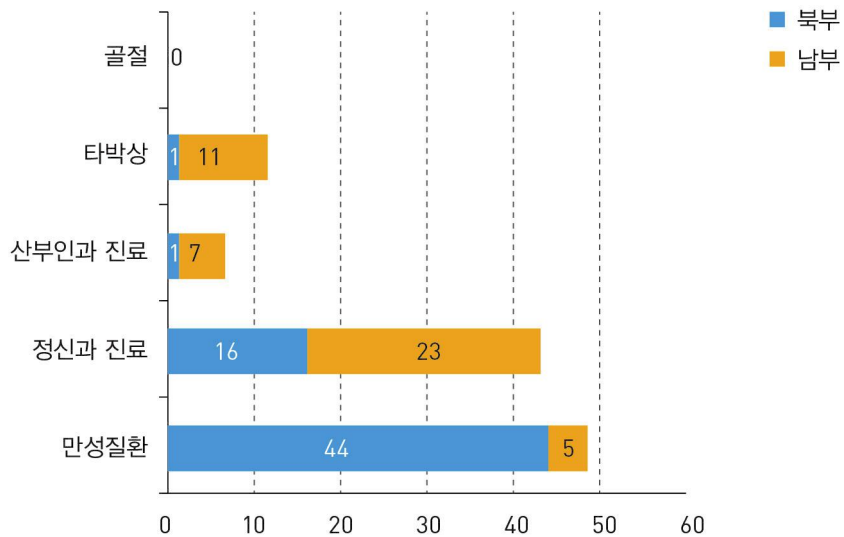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42명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총 108건 중 만성질환이 49건(45.4%), 정신과 진료가 39건(36.1%), 타박상이 12건(11.1%), 산부인과 진료가 8건(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건강 상태 현황

		남부	북부	계	비율
학대로 인한 상해	골절	-	-	-	-
	타박상	11	1	12	11.1
	산부인과 진료	7	1	8	7.4
	정신과 진료	23	16	39	36.1
만성질환		5	44	49	45.4
계		46	62	108	100

※ 남부 쉼터의 경우 모든 이용자의 심리·정서 회복 및 안정 지원을 위해 입소 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심리상담 연계 여부를 위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프 5-9]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건강 상태 현황



1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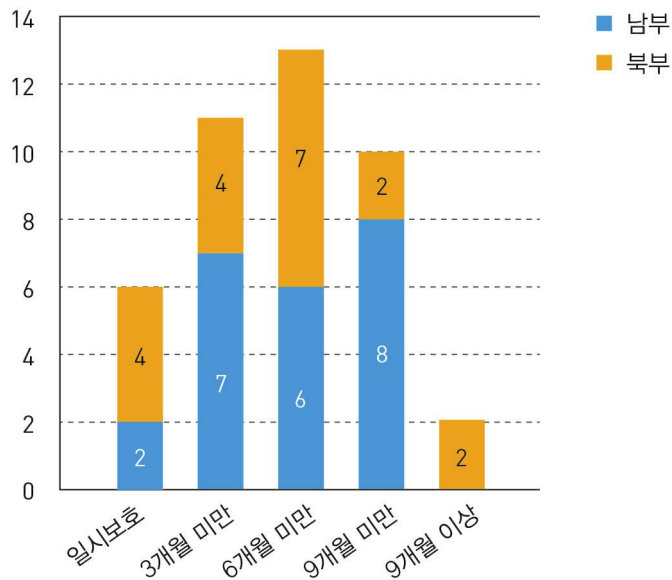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42명의 평균 이용기간은 3.5개월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13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미만 11명(26.2%),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명(23.8%), 일시보호 6명(14.3%), 9개월 이상 2명(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단위 : 명)

구분	평균 이용기간(개월)	2022년도 이용기간 별 현황					합계
	산출내역	일시 보호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남부	3.1개월 (2,164일/실인원23명/30일)	2	7	6	8	-	23
북부	3.9개월 (2,202일/실인원19명/30일)	4	4	7	2	2	19
계	3.5	6 (14.3)	11 (26.2)	13 (31.0)	10 (23.8)	2 (4.8)	42 (100)

[그래프 5-1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11)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후 거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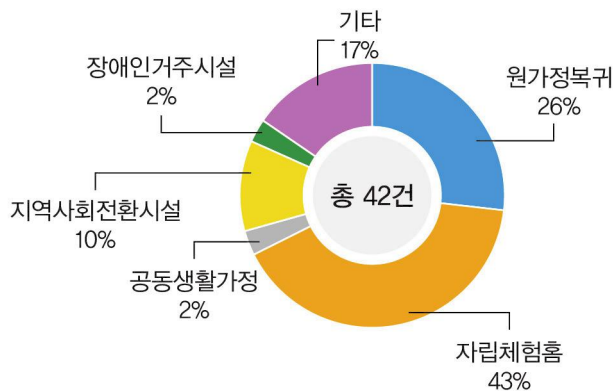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입소인원 42명의 퇴소 후 거주 유형을 살펴보면 자립체험홈 18명(24.9%)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원가정복귀가 11명(26.2%), 지역사회전환시설 4명(9.5%), 공동생활가정 1명(2.4%), 장애인거주시설 1명(2.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당해연도에 퇴소하지 않고 이월된 경우와 숙박업소 등으로 퇴소한 경우를 말한다.

[표 5-11]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후 거주 유형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원가정복귀	9	7	11	26.2
자립체험홈	4	9	18	42.9
공동생활가정	1	-	1	2.4
지역사회전환시설	1	3	4	9.5
장애인거주시설	1	-	1	2.4
기타(숙박업소, 이월인원포함 등)	7	-	7	16.7
계	23	19	42	100

[그래프 5-11]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후 거주 유형 현황



12) 피해장애인쉼터 재입소 현황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장애인 중 2023년도에 재입소한 경우는 총 2건이었다.

[표 5-12] 피해장애인쉼터 재입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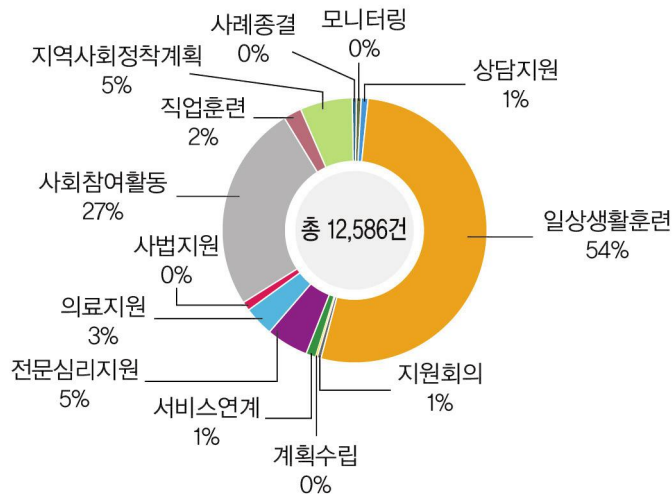
	장애유형	성별	이전학대유형 (최초 입소년도)	재학대유형	계	비율
남부	지적장애	여성	신체, 경제 (2021년도)	신체	1	50.0
북부	지적장애	여성	정서 (2022년도)	정서	1	50.0
계					2	100.0

13) 피해장애인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피해장애인 쉼터 이용자에 대한 일상생활훈련 6,866회(54.5%), 사회참여활동 3,417회(27.1%), 지역사회정착계획 599회(4.8%), 전문심리지원 593회(4.7%), 의료지원 376회(3.0%), 직업훈련 225회(1.8%), 서비스연계 165회(1.3%), 상담지원 153회(1.2%) 등의 순으로 제공하였다.

[그래프 5-12] 피해장애인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표 5-13] 피해장애인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상담지원	59	94	153	1.2
일상생활훈련	2,164	4,702	6,866	54.5
지원회의	57	27	84	0.7
계획수립	9	13	22	0.2
서비스연계	107	58	165	1.3
전문심리지원	492	101	593	4.7
의료지원	228	148	376	3.0
사법지원	11	4	15	0.1
사회참여활동	1,017	2,400	3,417	27.1
직업훈련	194	31	225	1.8
지역사회정착계획	32	567	599	4.8
사례종결	17	15	32	0.3
모니터링	36	11	47	0.4
계	4,423	8,171	12,586	100

※ 쉼터 별 산정 기준이 상이하어 서비스 제공 실적에 차이가 있음.

2. 피해장애아동쉼터

1)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피해장애아동쉼터를 이용한 인원은 총 8명이었으며, 그 중 4명은 남아, 4명은 여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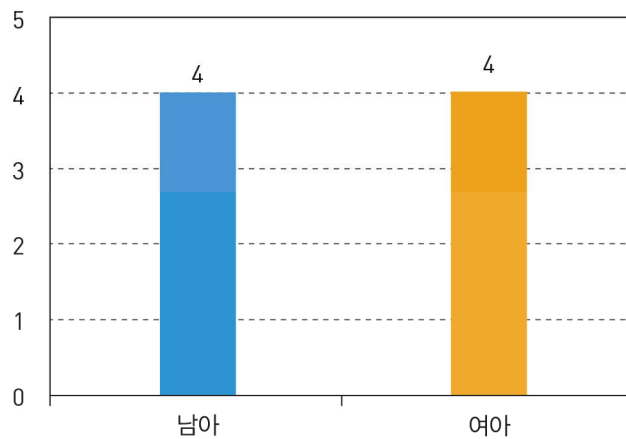
[표 5-14]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입소인원
남아	4	4
여아	4	4
계	8	8

[그래프 5-13]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현황

총 8명



2)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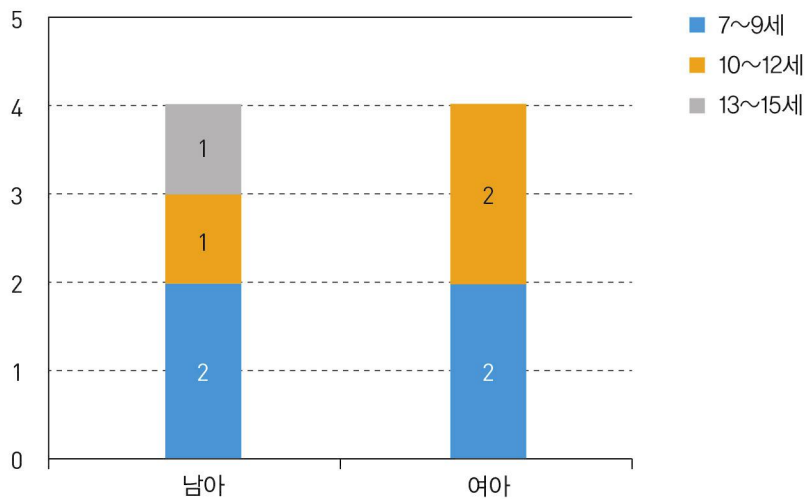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의 피해아동 연령 분류 기준에 따라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의 연령을 구분하였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인 7~9세가 4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인 10~12세가 3명(37.5%), 중학생인 13~15세가 1명(12.5%)으로 나타났다.

[표 5-15]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합계
남아	-	-	2	1	1	-	4
여아	-	-	2	2	-	-	4
계	0	0	4	3	1	0	8

[그래프 5-14]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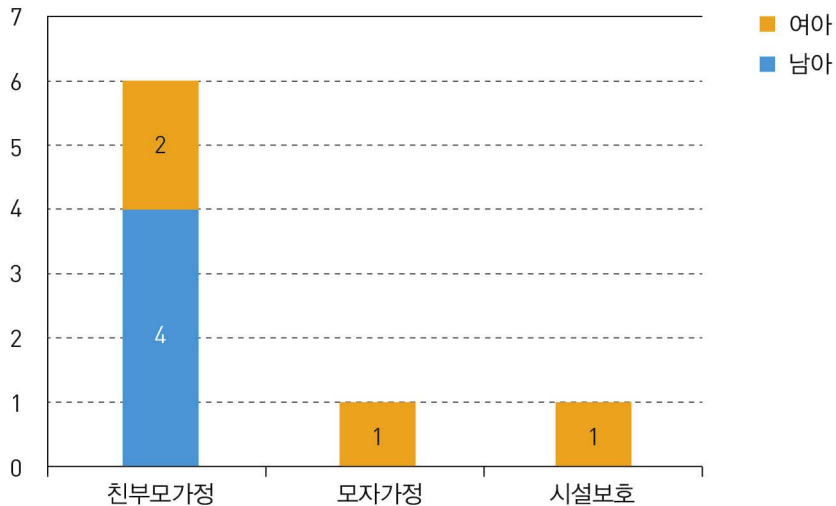
3)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의 가족구성을 살펴봤을 때 친부모가정이 6명(7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자가정 1명(12.5%), 시설보호 1명(12.5%)으로 나타났다.

[표 5-16]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남아	여아	계	비율
친부모가정	4	2	6	75.0
부자가정	-	-	-	-
모자가정	-	1	1	12.5
미혼 부·모 가정	-	-	-	-
재혼가정	-	-	-	-
친인척보호	-	-	-	-
동거(사실혼 포함)	-	-	-	-
가정위탁	-	-	-	-
입양가정	-	-	-	-
시설보호	-	1	1	12.5
기타	-	-	-	-
계	4	4	8	100

[그래프 5-15]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4)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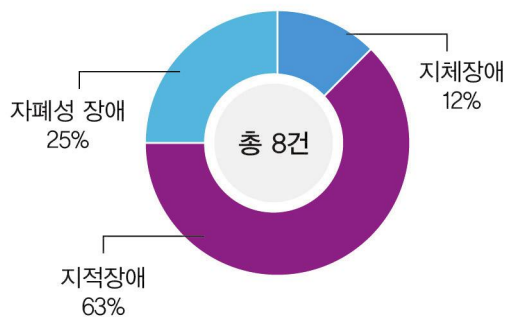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5명(62.5%), 자폐성 장애가 2명(25.0%), 지체장애가 1명(12.5%)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7명(87.5%)으로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5-17]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건수			비율
	계	남아	여아	
지체 장애	1	-	1	12.5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장애	-	-	-	-
언어장애	-	-	-	-
지적장애	5	3	2	62.5
자폐성 장애	2	1	1	25.0
정신장애	-	-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장애	-	-	-	-
장루 · 요루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	-
미등록	-	-	-	-
계	8	4	4	100

[그래프 5-16]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5)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편되었다.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4~6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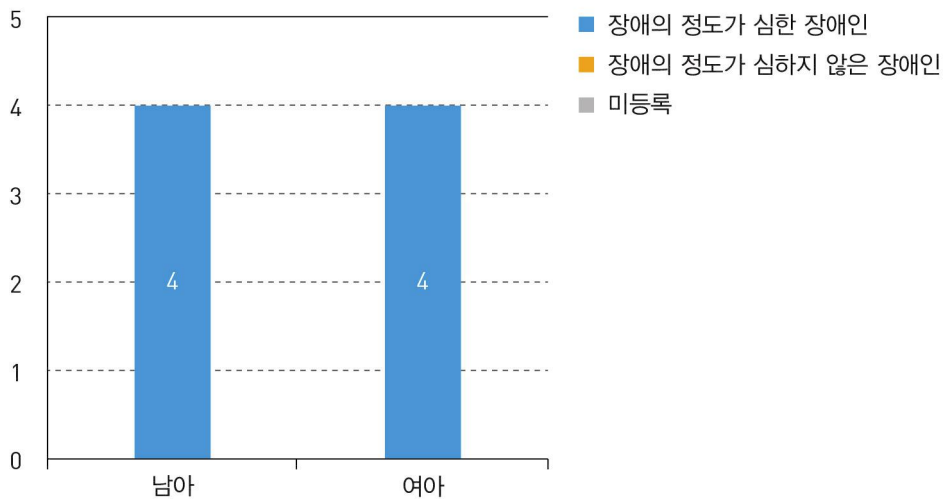
2023년 12월 31일 기준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이용자 8명은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였다.

[표 5-18]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4	8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미등록	-	-	-	-
계	4	4	8	100

[그래프 5-17] 피해장애아동 장애 정도 현황



6)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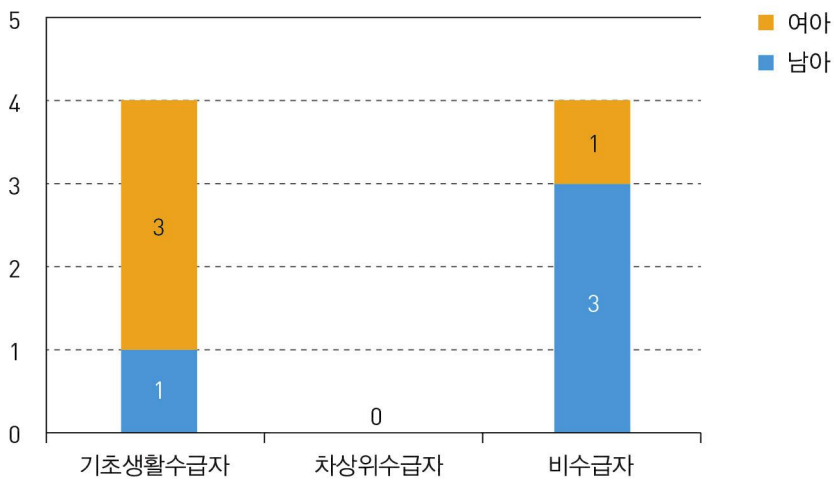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확인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4명(50.0%)과 비수급자 4명(50.0%)으로 나타났다.

[표 5-19]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남아	여아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4	1	3	50.0
차상위수급자	-	-	-	-
비수급자	4	3	1	50.0
계	8	4	4	100

[그래프 5-18]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7)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의뢰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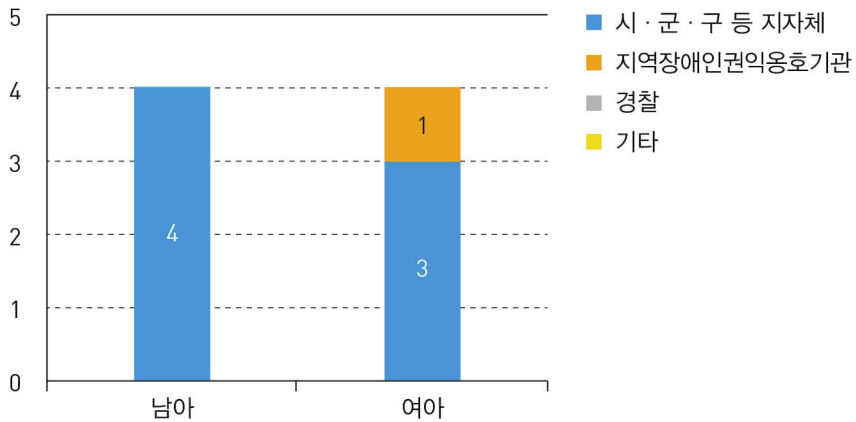
피해장애아동쉼터에 입소를 의뢰한 기관은 시·군·구 등 지자체 7건(87.5%)이 가장 많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건(12.5%)으로 나타났다.

[표 5-20]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의뢰기관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시·군·구 등 지자체	4	3	7	87.5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	1	12.5
경찰	-	-	-	-
기타	-	-	-	-
계	4	4	8	100

[그래프 5-19]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의뢰기관 현황



8)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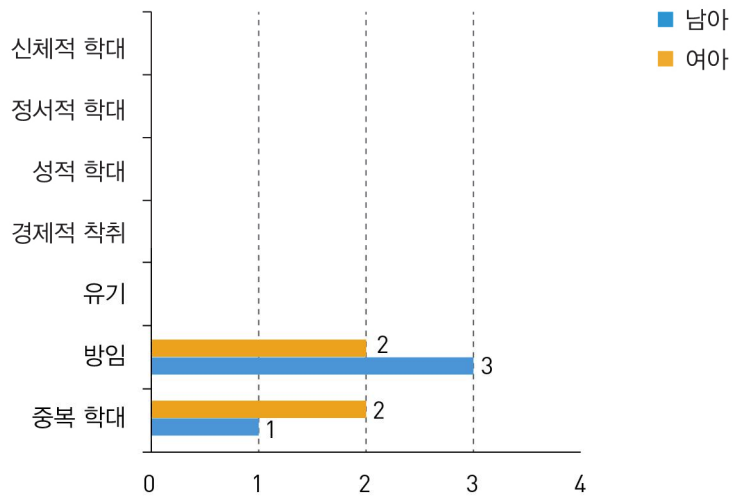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은 방임이 5건(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복학대 3건(37.5%)으로 나타났다.

[표 5-21]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행위자 유형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신체적 학대	-	-	-	-
정서적 학대	-	-	-	-
성적 학대	-	-	-	-
경제적 착취	-	-	-	-
유기	-	-	-	-
방임	2	3	5	62.5
중복 학대	2	1	3	37.5
계	4	4	8	100

[그래프 5-20]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현황



9)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행위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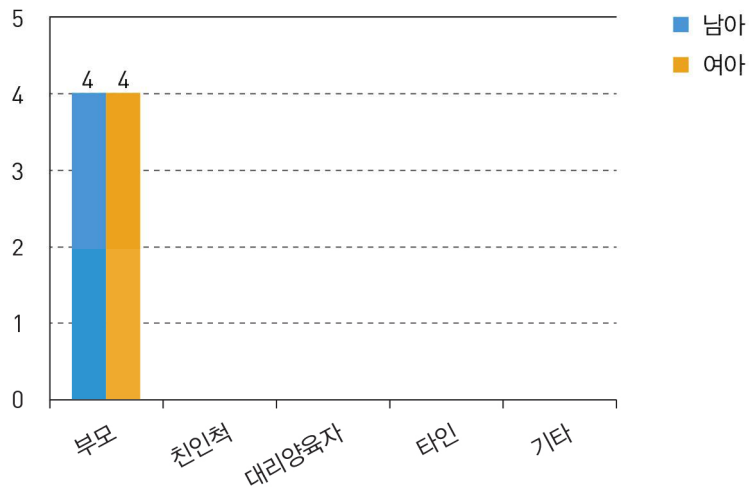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행위자 유형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모두 부모(8건, 10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22]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행위자 유형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부모	4	4	8	100
친인척	-	-	-	-
대리양육자	-	-	-	-
타인	-	-	-	-
기타	-	-	-	-
계	4	4	8	100

[그래프 5-21]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 학대행위자 유형 현황



10) 피해장애아동쉼터 평균 이용기간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일로부터 최대 9개월을 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의 평균 이용기간은 9개월 이상이 4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미만 3명(37.5%), 9개월 미만 1명(12.5%)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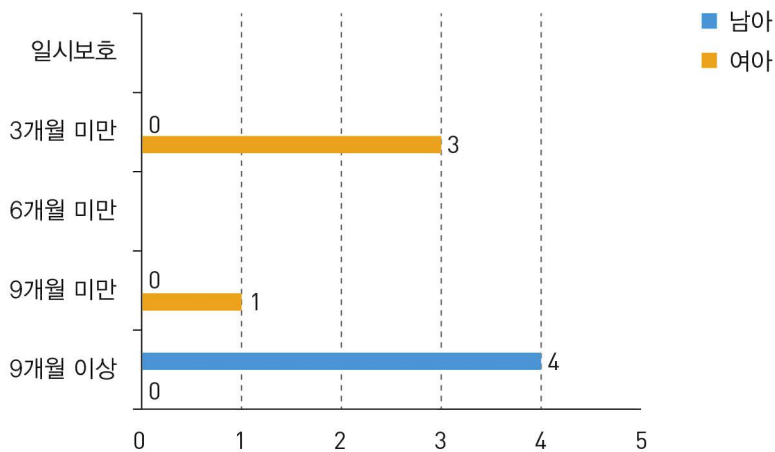
일시보호는 이용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로, 2023년에는 모든 이용자가 최소 1개월 이상 이용하여 일시보호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5-23] 피해장애아동 평균 이용기간 현황

(단위 : 명)

구분	평균 이용기간(개월)	2023년도 이용기간 별 현황					합계
	산출내역	일시 보호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남아	9.1개월 1,089일/30일/실인원 4명	-	-	-	-	4	4
여아	2.8개월 339일/30일/실인원 4명	-	3	-	1	-	4
계		-	3	-	1	4	8

[그래프 5-22] 피해장애아동 평균 이용기간 현황



11)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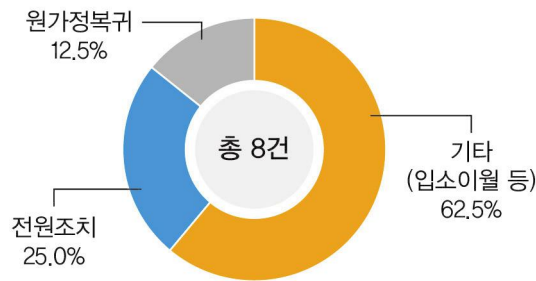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은 전원조치가 2명(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원가정복귀 1명(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입소한 피해장애아동 3명이 당해연도 퇴소하였으며 5명은 조치 결정되지 않아 2024년 입소인원으로 이월되었다.

[표 5-24]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원가정복귀	1	-	1	12.5
전원조치	-	2	2	25.0
기타(입소이월 등)	3	2	5	62.5
계	4	4	8	100

[그래프 5-23]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 현황



12) 피해장애아동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피해장애아동쉼터 제공 서비스는 입소상담(외부기관 상담), 보호·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 및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서비스 제공이 4,612회(9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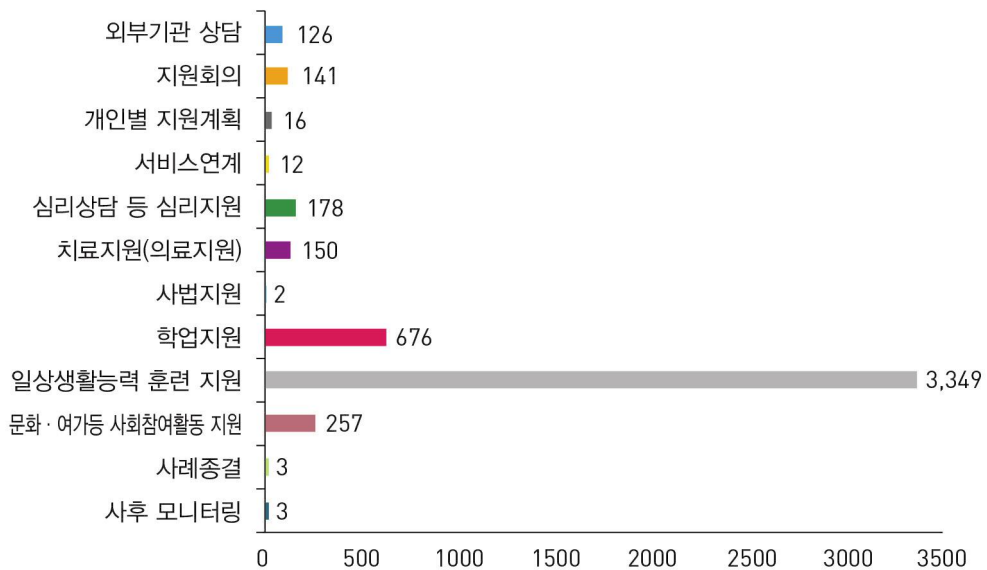
서비스 제공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일상생활능력 훈련 지원 3,349회(72.1%), 학업지원 676회(14.6%), 문화·여가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257회(5.5%),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178회(3.8%), 치료지원 150회(3.2%)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 현황의 차이는 각 쉼터의 월 평균 입소인원(남아쉼터 4명, 여아쉼터 1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표 5-25] 피해장애아동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입소상담	외부기관 상담	73	53	126	2.6
보호·지원 계획 수립	지원회의	93	48	141	2.9
	개인별지원계획	9	7	16	0.3
	서비스연계	9	3	12	0.2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158	20	178	3.6
	치료지원(의료지원)	94	56	150	3.1
	사법지원	2	-	2	0.0
	학업지원	535	141	676	13.8
	일상생활능력 훈련 지원	2,449	900	3,349	68.2
	문화·여가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90	167	257	5.2
사례종결 및 모니터링	사례종결	1	2	3	0.1
	사후 모니터링	1	2	3	0.1
계		3,514	1,399	4,913	100.0

[그래프 5-24] 피해장애아동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사례 분석

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3. 장애인차별 유형
4.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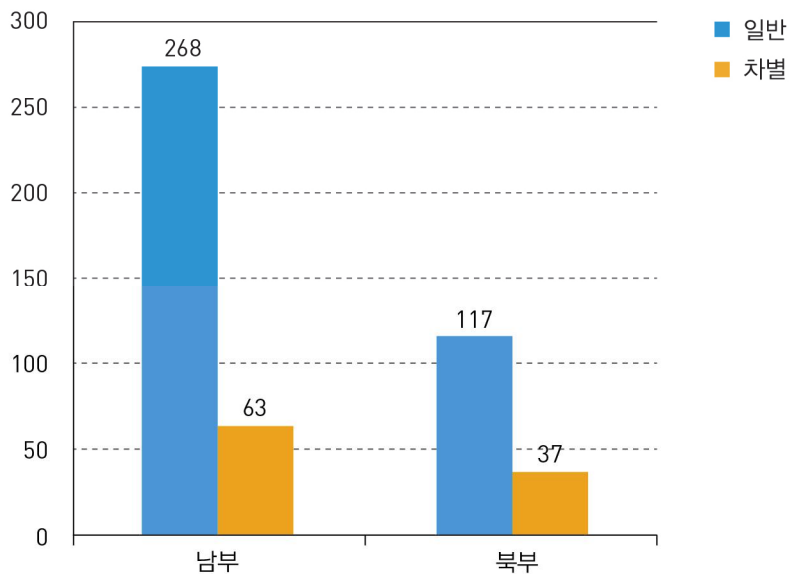
신고 접수된 장애인차별 사례는 100건(20.6%)이며, 장애인차별을 제외한 일반사례는 385건(79.4%)이었다.

[표 6-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일반	268	117	385	79.4
차별	63	37	100	20.6
계	331	154	485	100

[그래프 6-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1-1. 시·군별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시·군별 전체 장애인차별 신고접수는 고양시 9건(9.0%), 수원시 7건(7.0%), 시흥시 7건(7.0%), 안산시 6건(6.0%), 파주시 6건(6.0%), 의정부시 6건(6.0%), 성남시 5건(5.0%), 부천시 5건(5.0%), 용인시 5건(5.0%) 등의 순으로 많았다.

[표 6-2] 시·군별 장애인차별 현황

(단위: 건, %)

시·군	차별	비율	일반	비율	계	비율
수원시	7	7.0	38	9.9	45	9.3
성남시	5	5.0	15	3.9	20	4.1
안양시	4	4.0	3	0.8	7	1.4
부천시	5	5.0	6	1.6	11	2.3
광명시	-	-	1	0.3	1	0.2
평택시	3	3.0	16	4.2	19	3.9
안산시	6	6.0	11	2.9	17	3.5
과천시	2	2.0	-	-	2	0.4
오산시	1	1.0	4	1.0	5	1.0
시흥시	7	7.0	10	2.6	17	3.5
군포시	-	-	5	1.3	5	1.0
의왕시	1	1.0	1	0.3	2	0.4
하남시	-	-	4	1.0	4	0.8
용인시	5	5.0	11	2.9	16	3.3
이천시	-	-	3	0.8	3	0.6
안성시	-	-	11	2.9	11	2.3
김포시	1	1.0	9	2.3	10	2.1
화성시	1	1.0	10	2.6	11	2.3
광주시	2	2.0	10	2.6	12	2.5
여주시	-	-	1	0.3	1	0.2
양평군	2	2.0	4	1.0	6	1.2
고양시	9	9.0	19	4.9	28	5.8
남양주시	3	3.0	6	1.6	9	1.9
파주시	6	6.0	8	2.1	14	2.9
의정부시	6	6.0	21	5.5	27	5.6
양주시	2	2.0	10	2.6	12	2.5
구리시	3	3.0	3	0.8	6	1.2
포천시	1	1.0	4	1.0	5	1.0
동두천시	3	3.0	1	0.3	4	0.8
가평군	1	1.0	2	0.5	3	0.6
연천군	-	-	-	-	-	-
기타(타 지역)	4	4.0	50	13.0	54	11.1
미확인	10	10.0	88	22.9	98	20.2
계	100	100	385	100	485	100

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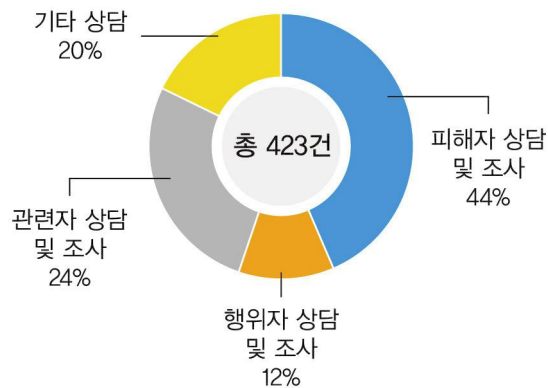
접수된 100건에 대해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 현황이다. 전체 상담 및 조사는 423건 이뤄졌으며, 이 중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는 187건(44.2%), 관련자 101건(20.1%), 행위자 50건(11.8%)이 이뤄졌다.

[표 6-3]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피해자 상담 및 조사	142	45	187	44.2
행위자 상담 및 조사	35	15	50	11.8
관련자 상담 및 조사	56	45	101	23.9
기타 상담	58	27	85	20.1
계	291	132	423	100

[그래프 6-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3. 장애인차별 유형

접수된 100건 중 고용차별과 기타가 19건(1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화/용역 일반과 사법/행정이 각 15건(15.0%)으로 많았으며 이용/교통수단과 교육이 각 9건(9.0%), 시설물 접근 6건(6.0%), 문화/예술/체육과 보험/금융이 3건(3.0%), 정보 접근/의사소통 2건(2.0%)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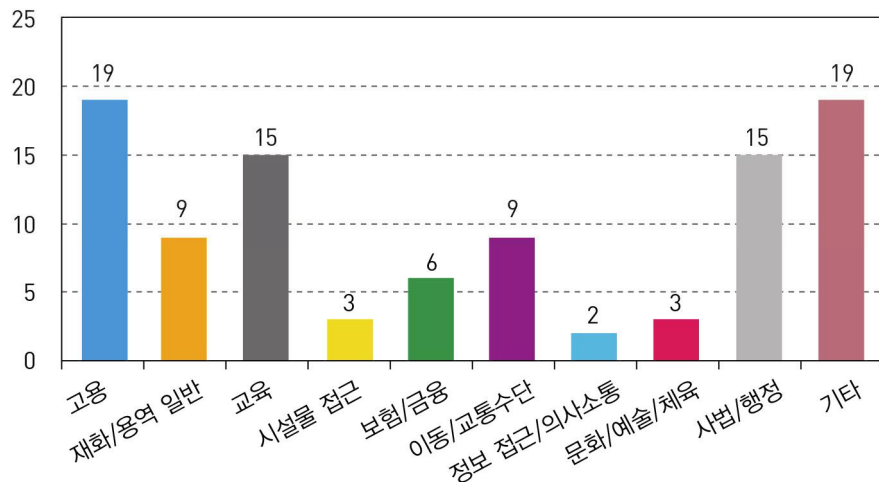
기타 영역은 다른 장애인차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은 차별로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 여성, 장애아동 등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표 6-4]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고용	14	5	19	19.0
교육	7	2	9	9.0
재화/용역 일반	9	6	15	15.0
보험/금융	3	-	3	3.0
시설물 접근	5	1	6	6.0
이동/교통수단	4	5	9	9.0
정보 접근/의사소통	-	2	2	2.0
문화/예술/체육	3	-	3	3.0
사법/행정	3	12	15	15.0
기타	15	4	19	19.0
계	63	37	100	100

[그래프 6-3]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4.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접수된 100건에 대한 지원 및 처리는 당사자 대응포기 23건(19.0%),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13건(10.7%), 정서적지지 13건(10.7%), 정보제공 12건(9.9%), 조정·중재 12건(9.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총 지원 횟수는 접수된 건수와 상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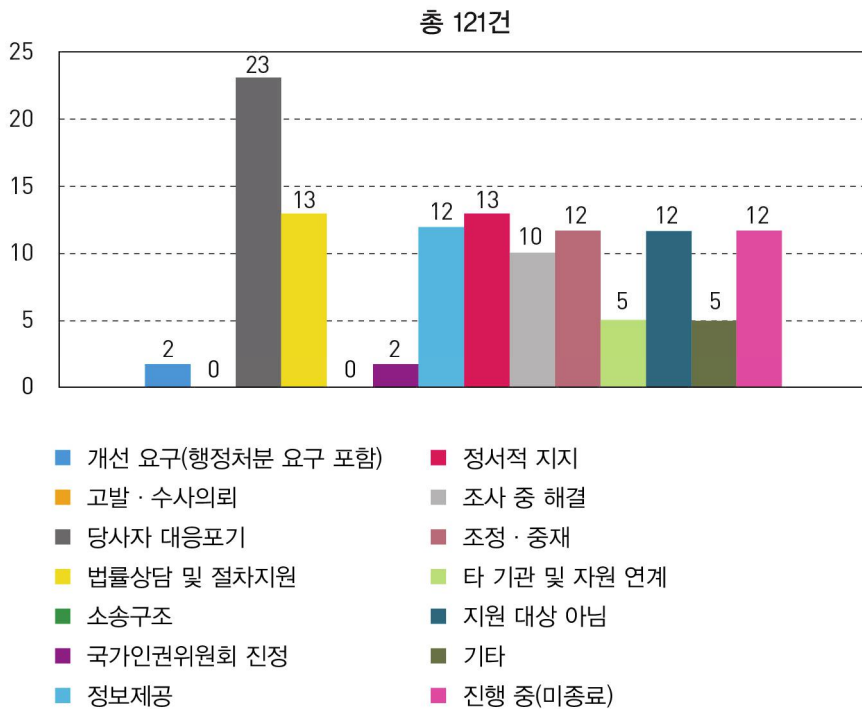


[표 6-5]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단위: 건, %)

처리결과	남부	북부	계	비율
개선 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2	-	2	1.7
고발·수사 의뢰	-	-	-	-
당사자 대응포기	18	5	23	19.0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1	12	13	10.7
소송구조	-	-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1	2	1.7
정보제공	4	8	12	9.9
정서적 지지	5	8	13	10.7
조사 중 해결	5	5	10	8.3
조정·중재	7	5	12	9.9
타 기관 및 자원 연계	4	1	5	4.1
지원 대상 아님	11	1	12	9.9
기타	5	-	5	4.1
진행 중(미종료)	12	-	12	9.9
계	75	46	121	100

[그래프 6-4]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VII

피해장애인 주요 지원 사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착취
5. 유기·방임
6. 차별 사례







1. 신체적 학대

신고내용	여성 시각장애인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p>행위자가 목을 조르고 폭행하여 경찰 신고하였고 자녀의 집으로 피신하였음.</p> <p>행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녀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려 접근금지 조치됨.</p> <p>피해자는 결혼생활 중 잦은 가정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함.</p> <p>오른쪽 눈의 실명과 시각장애 또한 행위자에 의한 폭행 피해로 확인됨.</p>
 지원내용	<p>피해자 응급조치: 피해장애인쉼터 분리 및 전염병 검사 지원</p> <p>의료지원: 백내장 수술 지원</p> <p>사법지원: 이혼 절차 지원</p> <p>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신청 및 이사 지원</p> <p>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LH 지원 사업 신청</p>
 지원결과	<p>백내장 수술을 통한 시력 회복</p> <p>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하여 행위자와 이혼 완료</p> <p>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받아 이사 완료</p> <p>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한 약 240만원 가량의 현금 지원</p>
신고내용	어머니가 지적장애인 자녀를 상대로 무속 행위를 하여 목과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p>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귀신이 빙의되어있다고 믿으며 퇴마식을 한다는 이유로 목과 얼굴에 칼로 상처를 입힘.</p>
 지원내용	<p>피해자 응급조치: 피해장애인쉼터 분리 및 전염병 검사 지원</p> <p>의료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검사 지원</p> <p>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 외부 사업 연계를 통한 후원금 지원</p> <p>상담지원: 부모상담을 통한 정서적지지 및 병원 검사 독려</p> <p>사법지원: 재판 모니터링</p>
 지원결과	<p>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완료</p> <p>행위자 재판 진행중</p>







<p>신고내용</p>	<p>지적·시각장애 남성이 동생으로부터 머리를 폭행당하여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 접수</p>
<p>  조사결과 </p>	<p>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소리 질렀다는 이유로 행위자 A(동생)에게 돌로 머리를 한 번 맞았고, 피가 남. 신고된 학대 사건 외에도 행위자 B(아버지)는 피해자가 방에서 소리 질렀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폭행함. 옹호기관이 지원하던 중 행위자 B는 피해자가 악을 올리는 장난을 친다며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방에 있는 나무 십자가를 이용해 머리를 때려 머리에 큰 자상이 생겼으나 방치함.</p>
<p>  지원내용 </p>	<p>피해자 응급조치: 피해장애인쉼터 분리/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지원 사법지원: 피해자 경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의료지원: 진료의뢰서 발급, 상처 치료 지원 등 심리지원: 심리상담센터 연계 거주지원: 자립홈 연계</p>
<p>  지원결과 </p>	<p>쉼터 퇴소 후 체험홈 입주 심리상담 8회기 진행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지원</p>
<p>신고내용</p>	<p>남성 지적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p>
<p>  조사결과 </p>	<p>피해자가 행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구타함. 폭행 중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나가 뒤져라’ 등의 폭언 등을 함.</p>
<p>  지원내용 </p>	<p>피해자 응급조치: 피해장애인쉼터 분리/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 지원 복지지원: 장애인복지관, 공공신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복지자원 연계 심리지원: 정신건강상담센터 연계 및 심리치료 지원</p>
<p>  지원결과 </p>	<p>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 진행 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지역 사회 내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안전망 설치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위자 등 접근금지명령 신청</p>







2. 정서적 학대

신고내용	지적 장애인 여성이 고시원 관리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 접수
 조사결과	<p>사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학대의심되는 상황 인지함.</p> <p>체험홈 퇴소 후 고시원에서 자립을 하던 중 남성 관리인이 당사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가 있었음.</p> <p>또한, 새벽마다 문자를 하거나 방 앞에 찾아와 당사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낌.</p> <p>당사자의 가족여부 및 수급비에 대해서도 얼마받는 지 물어보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됨.</p>
 지원내용	<p>피해자 응급조치: 피해장애인쉼터 분리 및 전염병 검사 지원</p> <p>주거지원: 체험홈 입주</p> <p>복지지원: 지역자원 연계</p>
 지원결과	<p>체험홈 입주를 통한 자립</p> <p>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활동지원사 매칭 완료</p>
신고내용	청각장애인 여성이 남편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p>피해자는 행위자의 폭행으로 경찰 신고를 반복하고 있음.</p> <p>행위자는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며 피해자 폭행 행위 인정하고 있음.</p> <p>행위자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공포감을 느끼고 신고를 반복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p>
 지원내용	<p>주거지원: 임대주택 안내</p> <p>복지지원: 자녀 장애등록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신청</p>
 지원결과	<p>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주택 물색 중</p> <p>매입임대주택 공고 안내로 2024년 6월 중 신청 예정</p> <p>자녀 장애등록 지원을 위한 상담 진행 중</p> <p>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한 약 65만원 가량의 금전 지원</p>







신고내용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p>피해자가 “하늘이 예쁘다.”라고 말하면 행위자는 “너는 하늘이 예쁘냐?”라며 비꼬듯 이야기했으며 근무시간 동안 잦은 한숨을 쉬어 피해자는 행위자의 눈치를 보게 됨. 피해자가 “한숨을 그만 쉬어 달라”고 부탁하자 “내가 내 입 가지고 한숨도 못 쉬냐, 한숨 안 쉬는 다른 활동지원사를 구해달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임.</p> <p>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나 가워 들었어, 건드리지 마”라고 2차례 협박함.</p> <p>마지막 근로일에는 “왜 자신을 해고했냐”라며 언성을 높여 따지고, 발소리도 크게 내며 공포감을 조성함. 또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10분 넘게 혼자 방치됨.</p>
 지원내용	<p>사법지원: 행위자 고발 조치 및 사법 모니터링 진행</p> <p>심리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예방센터 연계 상담 및 검사 지원</p>
 지원결과	<p>고발 조치 결과: 불송치</p> <p>주 1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진행</p>
신고내용	여성 지적장애인이 식당 주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p>피해자 면담 내용 중,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 확인됨.</p> <p>직장동료에 의하면, 식당 내 주방에서 소리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 확인됨.</p>
 지원내용	<p>피해자 응급조치: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분리 / 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 지원</p> <p>의료지원: 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및 관련 치료 지원</p> <p>심리지원: 정신건강상담센터 연계 심치리료 지원</p> <p>복지지원: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 등록 절차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지원</p> <p>거주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지원</p>
 지원결과	<p>피해자 건강회복</p> <p>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심리 치료 진행</p> <p>피해자 지적장애 등록</p> <p>쉼터 퇴소 후 체험홈 입주</p>







3. 성적 학대

신고내용	지적장애인 여성이 언니의 남자친구에 의한 성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행위자는 피해자 언니와 사실혼관계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없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때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여러 차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함
 지원내용	피해자 응급조치: 피해장애인쉼터 분리 및 전염병 검사 지원 사법지원: 고소 및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거주지원: 체험홈 연계 및 자립지원 물품 제공 복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지원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지역 유관기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행위자 구속 및 사건 검찰 송치
신고내용	지적장애인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성매매를 강요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함께 사용할 생활비와 값아야 할 돈이 있다고 성매매를 강요함. 성매매 장소에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등 약 150회에 걸친 성매매를 함.
 지원내용	피해자 응급조치 : 피해장애인쉼터 분리 및 전염병 검사 지원 사법지원: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및 재판 모니터링 거주지원: 체험홈 연계 및 자립지원 물품 제공 의료지원: 임상심리평가 검사를 통한 공황장애 치료 및 건강검진 복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실시 후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구매
 지원결과	쉼터 퇴소 후 체험홈 입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생계비 지원 행위자 현재 구속 및 재판 진행중







신고내용	여성 지적장애인이 같은 층 이웃 주민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p>행위자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함.</p>
 지원내용	<p>피해자 응급조치: 피해장애인쉼터 분리/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지원 심리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원과 심리상담센터 연계 심리상담 및 심리운동치료 지원 의료지원: 기저질환(천식 등) 치료 지원 사법지원: 피해자 경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거주지원: 체험홈 연계</p>
 지원결과	<p>쉼터 입소 쉼터 퇴소 후 체험홈 입주 체험홈 퇴소 후 LH 임대아파트 입주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p>
신고내용	지적장애인 여성이 이웃 주민들에 의해 성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p>행위자들은 피해자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간함.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수사 과정(관련 증거)에서 피해사실 확인됨.</p>
 지원내용	<p>피해자 응급조치: 해바라기센터 응급키트 동행 및 피해장애인쉼터 분리 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지원 사법지원: 해바라기센터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법정 증인 출석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엄벌탄원서 제출 심리지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심리상담 지원 거주지원: 경기도 내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신청 및 주거지 탐색 의료지원: 산부인과 진료 지원</p>
 지원결과	<p>심리상담 3회기 진행 피해자 건강회복 행위자 중, 1인에 대한 1심 선고 / 징역 7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 5년 정보공개 행위자 5인에 대한 재판 진행 중</p>







4. 경제적 착취

신고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시설장)에 의한 경제적 착취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결과	<p>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 이용인 2명을 종사자로 채용함</p> <p>시설 후원금 관련 통장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지적장애인 종사자 2명의 이름으로 후원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함.</p> <p>시설장은 급여만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후원금 처리를 했다고 진술함.</p>
 지원내용	<p>시설 회계점검, 지도점검 등 요청</p> <p>시설조사 결과보고 발송</p>
 지원결과	<p>퇴사처리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예정</p> <p>조치 결과 회신 대기중</p>
신고내용 지체·지적장애인(A)·지적장애인(B) 형제가 가스라이팅에 의한 경제적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p>행위자는 형제에게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관리해 주겠다고 하며 형제의 급여를 편취함. 형제가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행위자는 폭언과 폭행을 함.</p> <p>형제의 급여 250만원 중 200만은 급여 관리 명목으로, 50만원은 행위자의 담뱃값 등 명목으로 모두 빼앗음.</p> <p>무직인 형제를 회사원으로 둔갑시켜 대출을 받게 하고, 형제 각 1인당 5대씩 대포폰을 개통하게 함.</p>
 지원내용	<p>복지지원: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 등록 절차 지원(피해자 A는 지체장애만 등록되어 있었으나 면담 과정에서 지적장애 의심되어 지적장애 등록 지원)</p> <p>장애인 일자리 연계</p> <p>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담 연계</p> <p>심리지원: 임상평가 등 개인 심리 상태 확인 지원</p> <p>거주지원: 거주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한국주택도시공사 등 자원 연계</p> <p>사법지원: 피해자 경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엄벌탄원서 제출</p>
 지원결과	<p>피해자 A 지적장애 등록 및 장애연금 등 공공복지지원서비스 추가 연계</p> <p>피해자 A, B 심한 우울감 감소를 위한 약제비 지원 (심리상담 거부)</p> <p>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사법 절차 진행 중</p> <p>거주지 환경개선, 심리상담, 장애인일자리 연계 등 거부로 인한 설득 진행 중</p>






<p>신고내용</p>	<p>지적장애인 여성이 펜션에 거주하며 펜션 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수급비 갈취 및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p>
<p> 조사결과</p>	<p>피해자는 펜션 운영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하고 있었으며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받은 적이 없음. 행위자는 통장 관리를 하면서 수급비를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함.</p>
<p> 지원내용</p>	<p>피해자 응급조치 : 피해장애인쉼터 분리 및 전염병 검사 지원 의료지원: 뇌전증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건강검진 거주지원: 매입임대 신청 복지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p>
<p> 지원결과</p>	<p>피해자 매입임대 당첨되어 쉼터 퇴소 후 이사하였고 현재 자립 완료 장애인활동지원사 매칭 완료 행위자로부터 피해 금액에 대한 환수 요청</p>
<p>신고내용</p>	<p>지적장애인의 가족이 오래전부터 지인들에게 정서적 지배를 받으면서 폭행 및 경제적 착취 등의 피해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쉼터 입소 의뢰한다는 내용의 신고</p>
<p> 조사결과</p>	<p>행위자들은 피해자의 가정 내에서 생활영역을 통제하고 감시함. 가족의 생활비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통장, 급여를 갈취하고 대출을 받게 한 사실을 확인함.</p>
<p> 지원내용</p>	<p>피해자 응급조치: 피해장애인쉼터 분리 / 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 지원 사법지원: 피해자 증인 심문 관련 신뢰관계인 동석 엄벌탄원서 제출 복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공적부조 자원 지원 의료지원: 학대 피해로 인한 상흔 등 치료 지원 심리지원: 정신건강상담센터 연계하여 심리 치료 지원 거주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입소 지원</p>
<p> 지원결과</p>	<p>행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 각각 징역 15년, 징역 10년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개인 채무 조정 지원 피해자 상흔 회복 심리상담 10회기 진행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수당 선정 쉼터 퇴소 후 체험홈 입주</p>







5. 유기 · 방임

신고내용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기초수급비를 가져가고 있다고 함. 또한, 피해자의 발가락이 괴사되어 시급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신고접수
 조사결과	<p>현장조사 결과, 당사자는 행위자(친척)가 운영하는 공장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발가락 괴사 상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절단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됨.</p> <p>행위자는 피해자의 내과 진료 등 병원 진료를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출로 인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보지 못하여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확인됨.</p> <p>거주공간 또한 피해자가 기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지속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됨.</p> <p>피해자는 당뇨가 있음에도 하루에 커피를 수십잔 마시고, 담배를 피는 등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병세가 심화됨.</p> <p>발가락 괴사로 절단 수술 등 장기간 입원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피해자는 병원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등 자기방임으로 판단함.</p>
 지원내용	<p>상담지원: 병원 입원 및 치료에 대한 설득</p> <p>의료지원: 병원 입원 및 수술진행, 통원치료 및 보장구 사용을 위한 검사 진료 지원</p> <p>복지지원: 장애인등록절차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p> <p>사법지원: 당사자 피고인 사건 관련 재판 참석 연기 등 절차지원</p>
 지원결과	<p>치료 완료로 건강 회복 및 의족 제작 완료</p> <p>지체장애인 등록 완료</p>
신고내용	시설에서 진행되는 외부 프로그램 진행시 이용인 실종 사건 발생으로 방임 의심 신고 접수
 조사결과	<p>사건 발생이후 보고된 서류에 작성된 참여인원과 조사 진행시 확인된 참여 인원이 상이함</p> <p>자체 프로그램 관련 계획, 지원 구성 등이 제대로 구성 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 또한 부재</p> <p>실종 이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112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초동 조치 미흡</p>
 지원내용	<p>프로그램 진행시 사전 계획에 대한 점검 및 이용인 개별화서비스 지원계획 재수립 등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보고서 발송</p>
 지원결과	행정처분

신고내용	자폐성장애 아동A(10세)와 장애가 의심되는 미등록 아동B(5세)이 부모로부터 방임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p>가정 방문했을 때, 거주 공간에 각종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널려 있었으며,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만 있었음.</p> <p>해당 가정은 이미 관리 미흡 및 양육 무관심 등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음.</p>
 지원내용	<p>피해자 응급조치: 피해장애아동쉼터 분리</p> <p>복지지원: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 등록 절차 지원, 관할 지역사회복지시설, 경찰, 시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의를 통한 필요 자원 연계</p>
 지원결과	<p>피해자 A, B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p> <p>피해자 B 지적장애 등록</p>
신고내용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적장애인 부녀가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방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p>행위자(피해자의 부친)는 지자체의 모든 지원을 거부하며 피해자의 전반적인 생활에도 강한 억압을 함.</p> <p>피해자는 행위자를 전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행위자에게 폭행 피해를 당함.</p> <p>피해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음.</p>
 지원내용	<p>피해자 응급조치: 피해장애인쉼터 분리 / 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 지원</p> <p>의료지원: 피해자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p> <p>거주지원: 자립생활주택 지원 연계</p> <p>복지지원: 장애인복지관 연계</p>
 지원결과	<p>피해자 건강회복</p> <p>자립생활주택 선정</p> <p>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등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 서비스 신청</p>

6. 차별 사례

<p>신고내용</p>	<p>지체장애인 당사자가 상가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건물 관리인이 휠체어는 엘리베이터 사용 거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p>
<p> 조사결과</p>	<p>행위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면 벽 옆면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 출입을 거부했던 상황을 인정하였음.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고 행위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자 하였음.</p>
<p> 지원내용</p>	<p>해당 건물 관리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행위임을 안내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청</p>
<p> 지원결과</p>	<p>중재 및 장애인차별 피해자에게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요청</p>
<p>신고내용</p>	<p>뇌병변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동승자 없이 차량 이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콜택시 탑승거부에 대한 신고 접수</p>
<p> 조사결과</p>	<p>피해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던 중 아무런 사유 없이 “동승자 없이 차량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음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로 확인 결과 동승자 없이 사고가 발생한적이 있어 이후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하도록 제한을 두고 기사에 판단에 따라 동승자 탑승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확인됨</p>
<p> 지원내용</p>	<p>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를 통해 문제 제기</p>
<p> 지원결과</p>	<p>동승자 탑승 불가조치 취소 장애인차별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사과</p>

신고내용	청각장애인 피해자가 음성통화만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여 모바일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B사의 신용대출상품인 '모바일론' 서비스 이용 시 음성통화만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방법을 마련하지 않음.
 지원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로 진정 제기
 지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 인정 B사에 대책(비대면 본인 인증 수단) 마련 권고 B사 자체적 절차 개선
신고내용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려 했으나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 수강 거부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행위자 측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교육을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건설 현장은 사고의 위험이 높아 청각장애인은 건설업 근로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함. 이에 대해 청각장애를 사유로 한 교육원의 교육 거절에 대한 차별 판정함.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지원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지속적인 검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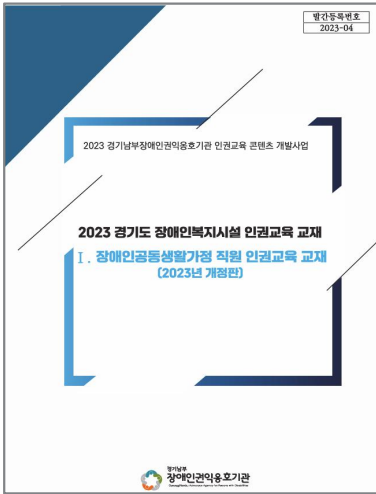


장애인의 인권증진 사업

1.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사업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2023년에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교육 콘텐츠를 4종 개발하였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직원 인권교육 교재 1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인 인권교육 교재 1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이용인 인권교육 교재 2종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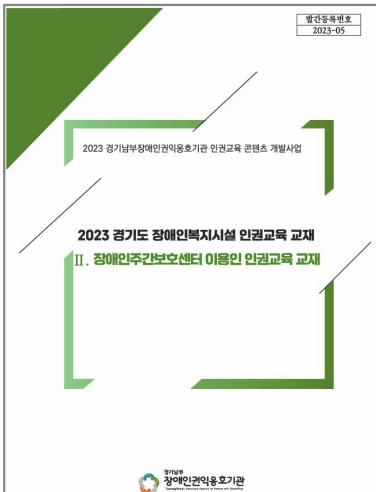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직원 인권교육 교재 (2023년 개정판)

- 대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역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권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2019년 개발한 '2019년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직원 인권교육 교재(책임연구원 강희설)'의 내용을 2023년 최신의 현황을 반영 및 수정하여 교안과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고 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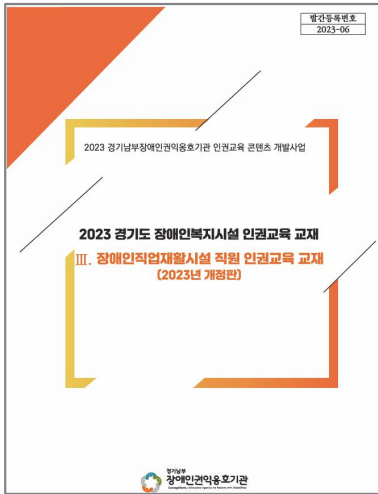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인 인권교육 교재

- 대상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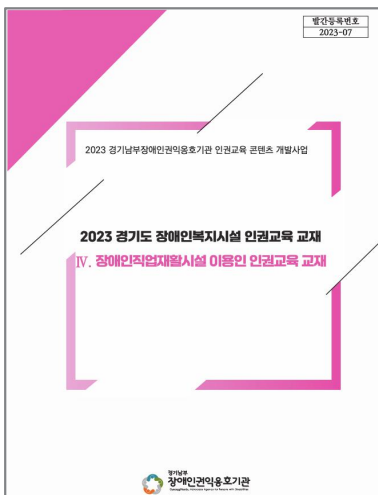
강의식 교재보단,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교안을 제작하여 배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인권교육 교재 (2023년 개정판)

-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황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도 참고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2020년 개발한 '2020년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인권교육' 교재개발(책임연구원 강희설)의 내용 중 최신의 현황을 반영 및 수정하여 교안과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고 배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인권교육 교재

-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인이 직장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2020년 만든 인권교육 교재 “직장인으로 살아가기”와 2021년 만든 “학대라고 생각되면 전화해요”를 한 권으로 엮어서 제작하고 배포함.

2.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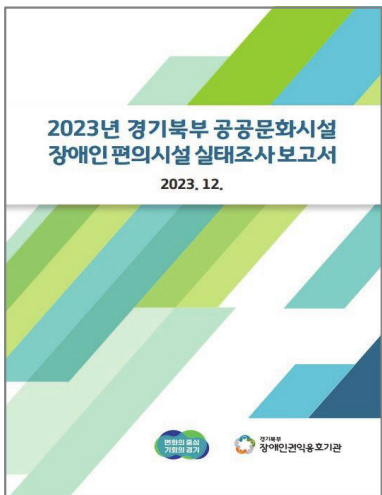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실태조사, 학대예방교육, 인권교육, 인식개선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하여 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장애인, 경기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실태조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 조사도구 개발(2023)

- 대상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장애인 근로자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근로환경과 직장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위한 '인권침해에 관한 지표' 개발



경기북부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2023)

- 대상 : 공공문화시설 50곳
경기북부 10개시·군내 공공문화시설 50곳에 대해 장애인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2) 교육사업



찾아가는 인권교육(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교육 (2023)

- 대상 : 경기도 내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사회복지무원 등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활동지원사,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교 소속 사회복지무원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등 실시



장애인 인권교육(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도민교육 (2023)

- 대상 : 경기도민

기관 소속의 인권강사단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등 교육 수강생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인식개선교육 등 실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인·종사자 인권교육(2023)

-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종사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인·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인 대상 교육 교안 개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학대신고 의무자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 (2023)

- 대상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탑재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 / www.gseek.kr)
 - 수강횟수 : 누적 11,791,128회 (2023.12.31. 기준)
-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과정 개발 및 운영

2023년 청년 권리옹호자 교육

교육 일정: 7.11(화) ~ 8.10(목) [총 10회기]

일차	교육일차	교육주제	교육강사
OT	7.11 (화) 18:30-19:00	오리엔테이션	교육 담당자
1	7.11 (화) 19:00-21:00	인권감수성에 대하여	류은숙 (인권연구소 '알' 인권활동가)
2	7.13 (목) 19:00-21:00	노동문제와 불평등	박철규 (신광산철119 운영활동가)
3	7.18 (화) 19:00-21:00	주거빈곤과 불평등	이동현 (홍익스튜디오 상담활동가)
4	7.20 (목) 19:00-21:00	장애와 장애인권의 사회적 이해	김도현 (에이아이 대표)
5	7.25 (화) 19:00-21:00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	임수연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6	7.27 (목) 19:00-21:00	내 손안의 권리, 장애인권리협약	최한별 (한국장애인차별철폐 사무국장)
7	7.31 (월) 19:00-21:00	탈시설과 인권	김정하 (사회복지법인 트라빌 대표이사, 장애인인권활동가) / 이동현 (홍익스튜디오 상담활동가)
8	8.3 (목) 19:00-21:00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김장민 (장애인지원센터 주선애 사무국장)
9	8.8 (화) 19:00-21:00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박민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0	8.10 (목) 19:00-21:00	과거의 나로부터 떠나는 것	홍은진 (인권기록활동가)

청년 권리옹호자 교육 (2023)

- 대상 : 사회복지관련학과 대학생 (예비사회복지사)
- 대학 사회복지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노동문제와 불평등, 주거빈곤과 불평등,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권리옹호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시각과 고민을 나누는 교육 실시



시민인권학교 (2023)

- 대상 : 경기도민
- 장애학생의 학교 이야기, 장애청년의 취업 이야기 등 세대별로 겪을 수 있는 공감 주제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제공



인권강사단 운영 (2023)

- 대상 :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촉 강사
- 기관 소속의 인권강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 학습 모임 및 강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진행

3. 정책개발사업

경기도 내 장애인 인권 현안을 확인하고, 인권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실시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제안하고 있다.



인권포럼 (2023)

- 대상 : 경기도민

- 주제 :

(남부)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실시

(북부)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경기도형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지원체계'를 논의하고 구축하고자 토론회 실시

- 방법 : 현장 참여 및 온라인 생중계(youtube)



장애인 인권실태 개선 정책 제안_경기도의회 정책 정담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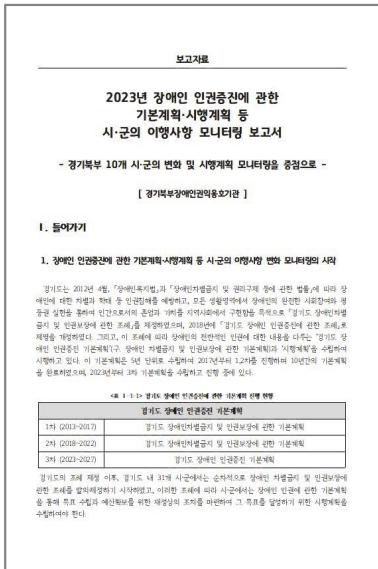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인권증진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학대·지원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 참여기관: 경기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 경기도 장애인권익지원팀
-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여아)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및 기본계획 · 시행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2023)

-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시·군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 ·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와 그 이행사항 정도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실시



4. 협력체계 구축사업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체계 구축사업 (2023)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차별예방과 지원에 기여

- 장애인 인권정책 개선 시·군 간담회
-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 공공 및 민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관·경 등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및 신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상호 협력을 위한 협력기관 현판 제작 및 배포



움부즈맨 사업 (2023)

- 대상: 경기 남부 장애인복지관 소속 시민옹호인
- 내용: 시민옹호인 간담회, 시민옹호인 역량강화교육, 장애인학대예방 캠페인, 활동리플릿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에서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시민옹호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캠페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인권침해의 조기발견 체계형성에 기여



권리충전소 운영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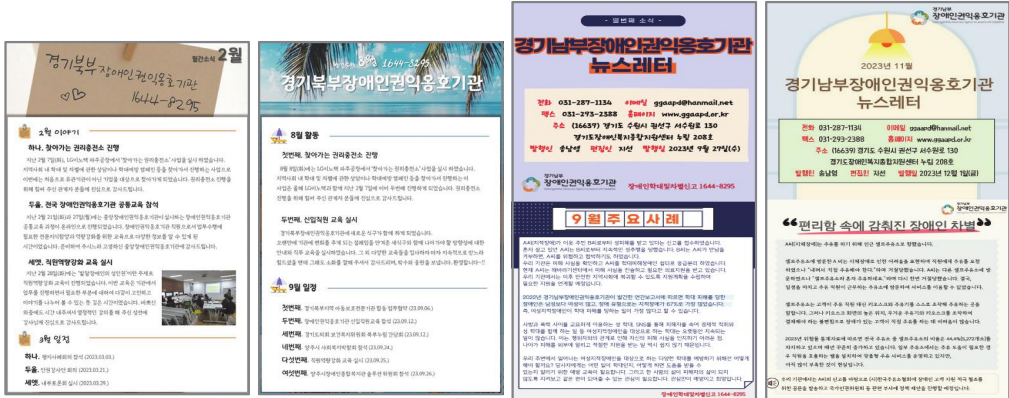
- 대상: 경기 북부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 내용: 찾아가는 장애인차별 및 학대 상담, 기관 및 학대 신고 전화번호 홍보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차별 및 학대 관련 상담과 홍보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

5. 홍보사업

장애인학대 및 차별 등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내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 캠페인, 서포터즈 운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을 진행하였다.

월간소식지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 캠페인



청소년 대상 참여부스 캠페인

지역축제 내 참여부스 캠페인



경기도민 대상 길거리 캠페인



장애인학대·차별 신고 전화 안내 캠페인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 서포터즈 운영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을 위한 SNS콘텐츠(인스타그램) 제작 및 배포 (대학생 서포터즈 3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알고 계신가요?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요 😊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Gyeonggibukb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요’ 카드뉴스’ (공동제작:경기북부경찰청)

홍보 콘텐츠 제작(카드뉴스) 및 배포



'장마철 재난의 불평등' 카드뉴스



'주요 사례로 보는 장애인 학대 2 (성적학대)'
카드뉴스

연간보고서 제작 및 배포



2022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진행한 업무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간보고서 제작



부록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기관명		전화	주소
경기도소비자정보보호센터		1372 031-251-9898 031-888-985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15호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031-8008-451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20층 스포츠인권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4층
경기도인권센터		031-8008-234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031-866-4849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29번길 27(지층) 정산프라자
경기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7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동 1층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1533-591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305호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031-215-11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031-874-3117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경기도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통합지원센터	031-816-137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01호
	응급지원센터	031-816-137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031-364-81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10 단원병원 신관 7층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032-651-137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031-708-13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경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555-1295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49, 113호 (다산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기관명	전화	주소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873-1295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제1신관 250호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932-12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장항동 885) 고양검찰청 414호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2-323-1295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별관 201호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736-12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152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211-129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지방검찰청 207호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405-129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108호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387-129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06호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885-1295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101호
평택·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692-1295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108호
고양시노동권익센터	031-968-765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 6층(화정동, 세은빌딩)
안양시노동인권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7, 6층
여주노동권익센터	031-886-21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79번길 8(401호)
광명시민인권센터	02-2680-6370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032-625-971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64, 203호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031-725-95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수원시인권센터	031-228-2616~ 261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5층 인권센터

2023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인쇄일	2024년 11월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경기도
편집인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송남영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현희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_보듬 원장 채현경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원장 이주묵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여아) 원장 최승호
편집위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한별, 김희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백주현, 이나영, 장송이, 김홍태)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_보듬 (유현아, 송다다)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임고은, 정안)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여아) (구수진)
발행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Tel. 031-8008-4336)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el. 031-287-113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el. 031-851-1007)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_보듬 (미공개)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미공개)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여아) (미공개)
인쇄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Tel. 02-2271-2526)